

정책연구 09-29

기간통신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김희수/김형찬/김남심/오기환

2009. 11

1. 본 연구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출연금으로 수행한 방송통신정책 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2.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서 언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별정/부가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망 이용관계에 이용약관을 적용토록 한 제29조제5항이 폐지되는 안이 포함되어 있어 규제공백 영역이었던 별정/부가-기간 간 망 이용관계를 공정한 협정 관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MVNO 등 재판매 의무제 공의 근거가 역시 사업법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협정 신고/인가 제도의 적용 범위가 재판매 사업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재판매 관련 협정의 신고/인가 심사 업무 처리에 대한 제도 정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기간통신사업자 간 협정 체결 시 대가 등 중요한 이용조건을 별도의 합의를 통해 규정함으로써 불공정 규제심사를 회피해 온 부분을 규제영역으로 끌어들여 공정경쟁을 유도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기간-기간 간, 별정/부가-기간 간 불공정한 망 이용 관련 약관 및 협정 현황을 분석하고, 상호접속 등 국내 협정의 신고/인가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매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기준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본고는 기간통신망 이용 관련 협정 현황을 사업자의 협정서/부속합의서와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하고, 망 이용 계약에서 이슈가 되는 동등성을 심사하기 위한 차별기준 및 상호보조 측정에 대한 해외사례를 검토하였으며, 협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협정제안서(RIO) 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협정 신고/인가제도의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협정 신고/인가 시 가격 및 비가격 조건에 대한 차별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동등성 심사 점검표, 부당한 차별기준, 부당한 상호보조의 측정 방법 등을 연구결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협정 체결 및 협정 신고/인가 신청 기한, 협정 신고/

인가의 주체, 모든 신규·변경 협정의 신고 의무 부과 원칙, 협정 신고/인가 시 제출 서류의 내실화, 협정 신고/인가 심사 절차 차등화 등 협정 신고/인가제도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도출함으로써 관련 정책 추진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간통신망 이용 계약이 재판매 등 서비스기반 사업자로 확대되는 환경에서 현 협정 신고/인가제도의 개선방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됨으로써, 향후 기간통신망 이용 관련 협정의 투명성 확보와 계약 조건의 동등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보고서는 통신정책연구실 김희수 선임연구위원이 연구 책임을 맡아 차별 가이드라인과 동등성 점검표 작성, 제도 개선방향 작성을 총괄하였고, 김형찬 선임연구위원이 별정통신망 이용계약 현황 및 이슈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김남심 책임연구원은 협정 현황 분석, 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제도 개선방향 작성을 담당하고, 오기환 책임연구원은 협정 현황 분석, 기간통신망 이용 관련 규제이슈, RIO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김진성 연구원은 가격차별 규제의 미국 사례인 정리에, 노성민 연구원이 RIO 관련 법제도 및 사업자 사례 정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우리나라 협정 신고/인가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라며, 그 동안 연구를 위해 도움을 주신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 관계자 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9년 1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 장 방 석 호

목 차

서 언	1
요약문	9
제1 장 서 론	15
제2 장 국내 현황	16
제1 절 협정 관련 법제도	16
제2 절 상호접속 등의 협정 현황 및 서비스 유형별 협정의 주요 내용	17
1. 협정현황	17
2. 인터넷망 상호접속	18
3. 설비제공	28
4. 음성서비스	32
제3 절 별정통신사업자의 망 이용 계약 현황	36
1. 별정통신사업자의 망 이용 계약 현황	36
2. 망 이용계약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40
3. 별정 망 이용계약 관련 개선 건의사항	47
제4 절 국내 협정 신고/인가 제도의 문제점	48
1. 자의적 제도 운영	48
2. 투명성 부족	48
제3 장 기간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제 이슈	50
제1 절 기간통신망 이용과 불공정행위 규제	50
1. 기간통신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	50

2. 기간통신사업자의 망 이용과 가격차별 규제의 필요성	57
3. 기간통신사업자의 망 이용과 상호보조 규제의 필요성	62
제 2 절 가격차별 및 상호보조 규제 관련 해외사례	66
1. 가격차별	66
2. 상호보조	89
제 3 절 기간통신망 이용과 표준협정(RIO)	96
1. 통신망 이용 계약의 신고/인가 관련 주요국 법제도 현황	96
2. 표준협정(RIO)의 작성 원칙	101
3. 해외 주요 사업자의 RIO	107
제 4 장 협정 신고/인가제도의 개선방향	134
1. 협정 신고/인가 제도 운영 개선	134
2. 협정 신고/인가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 마련	139
3. 표준협정제안서 작성 · 공개	152
제 5 장 결 론	156
참고문헌	157
〈별첨 1〉 인터넷망 상호접속 협정서의 주요 내용	160
〈별첨 2〉 협정 신고/인가제도 개선 관련 사업자 의견 요약(1차)	164
〈별첨 3〉 협정 신고/인가제도 개선 관련 사업자 의견 요약(2차)	173
〈별첨 4〉 협정신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업자 의견	179
〈별첨 5〉 WTO, FTA 통신 협정문 상 협정 관련 이행사항 비교	180
〈별첨 6〉 제출 서류 양식(안)	185
〈별첨 7〉 별정통신사업자 망 이용 계약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설문지 ..	208

표 목 차

〈표 2-1〉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6	17
〈표 2-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	17
〈표 2-3〉 기간통신사업자 간 협정 신고/인가 현황	18
〈표 2-4〉 인터넷망 상호접속 부속합의서의 개괄적인 내용	19
〈표 2-5〉 인터넷망 상호접속 제공사업자의 협정서 및 부속합의서상 요금표	20
〈표 2-6〉 A사의 부속합의서상 요금표1	21
〈표 2-7〉 A사의 부속합의서상 요금표2	22
〈표 2-8〉 SMS호 유형별 요율	32
〈표 2-9〉 개인번호 서비스 요금(예시)	33
〈표 2-10〉 콜렉트콜 서비스 요금(예시)	34
〈표 2-11〉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요금(예시)	34
〈표 2-12〉 서비스별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 현황	43
〈표 2-13〉 별정통신사업자 건의사항(N=177)	48
〈표 2-14〉 국제 협정 상의 상호접속협정 관련 의무	49
〈표 3-1〉 Palmer(1992)의 상호보조 판단을 위한 총비용 산정 방식	90
〈표 3-2〉 접속약관 인가/신고, 공개제도 등	96
〈표 3-3〉 상호협정서 등의 신고/인가, 협정서 공개 제도 및 담당 또는 관련기관	100
〈표 3-4〉 NTT의 지정(designated) RIO 구성	107
〈표 3-5〉 NTT의 접속 유형 구분 방식	110
〈표 3-6〉 표준협정서의 구성	111
〈표 3-7〉 AT&T 협정서 상 별첨 내용	112
〈표 3-8〉 AT&T 협정서의 일반 조건	113

〈표 3-9〉 AT&T UNE 조건의 주요 내용	116
〈표 3-10〉 BT wholesale의 RIO 구성 예: Partial private circuit(PPC)	118
〈표 3-11〉 BT wholesale의 서비스별 RIO 구성 예	120
〈표 3-12〉 BT와 국내 사업자의 유사 규정 비교: 접속용량설정	121
〈표 3-13〉 BT wholesale의 RIO 구성 예: Wholesale broadband connect	123
〈표 3-14〉 BT wholesale의 RIO 구성 예: IP Steram connect	123
〈표 3-15〉 BT wholesale의 MSA 및 세부서비스 구성항목 비교	123
〈표 3-16〉 BT Openreach의 RIO 사례: LLU	125
〈표 3-17〉 BT Openreach RIO 세부 구성내용: LLU v. WLR3	126
〈표 3-18〉 NTT Docomo의 RIO 구성	127
〈표 3-19〉 인터넷 접속조건의 해외 사례	130
〈표 3-20〉 1계위 3사 인터넷망 접속조건 비교	133
〈표 4-1〉 협정 신고·인가 시 제출서류(안)	137
〈표 4-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138
〈표 4-3〉 BT와 국내 사업자의 유사 규정 비교: 접속용량설정	155

그 립 목 차

[그림 2-1]	인터넷망 접속용량에 따른 접속료 현황(예시)	24
[그림 2-2]	일정 계약 용량(1G)의 접속 대가 추이	25
[그림 2-3]	계약기간/용량에 따른 가격 현황	25
[그림 2-4]	동일 접속용량에서 가격 차이	26
[그림 2-5]	동일/유사 시점(2008년 기준)의 인터넷망 상호접속 대가 분석 ...	27
[그림 2-6]	계위에 따른 인터넷망 백본 접속 가격 차이	27
[그림 2-7]	제공 사업자 간 가격 차이	28
[그림 2-8]	광 중계기용 광코아 요금 비교	29
[그림 2-9]	초고속 IP망 서비스용 회선설비 요금 비교	30
[그림 2-10]	시내 E1 상품 전용회선 요금 비교	30
[그림 2-11]	시내 155M 상품 전용회선 요금 비교	31
[그림 2-12]	시외 E1 상품 전용회선 요금 비교	31
[그림 2-13]	시외 155M 상품 전용회선 요금 비교	32
[그림 2-14]	기간-별정 간 이동발신 국제전화 발착신 망 이용대가 차이 현황 ...	35
[그림 2-15]	별정통신사업자의 국제전화서비스 구성도-유선통신의 경우 ...	37
[그림 2-16]	별정통신사업자의 국제전화서비스 구성도-이동통신의 경우 ...	38
[그림 2-17]	VoIP 망 구성도	39
[그림 2-18]	별정통신사업자의 주력서비스 현황	43
[그림 2-19]	계약요청 거절 경험(N = 177)	44
[그림 2-20]	별정통신사업자의 계약변경 요청 이유(N = 71)	45
[그림 2-21]	기간통신사업자의 계약변경 요청 이유(N = 53)	45
[그림 2-22]	기간통신사업자의 계약해지 통보이유(N = 18)	46

[그림 2-23] 계약 체결시 기간통신사업자의 약관요금 할인 적용 여부(N=177)··	46
[그림 2-24] 담보요구금액 설정기준(N=177)	47
[그림 3-1] BT wholesale의 RIO 구성 예: Telephony	119
[그림 4-1] 신고 심사 절차	143
[그림 4-2] 인가 심사 절차	144
[그림 4-3] 동등성(부당한 차별) 심사 및 경쟁제한성 심사 흐름도	144

요 약 문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최근 별정/부가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망 이용관계에 이용약관을 적용토록 한 사업법 제29조제5항이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규제공백 영역이었던 별정/부가-기간 망 이용관계를 공정한 협정 등으로 이루어진 계약관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재판매 의무제공의 근거가 사업법에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협정 신고·인가의 대상에 도매 제공사업자도 포함하게 되어, 재판매 관련 협정의 신고·인가 심사 업무 처리에 대한 제도의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자 간 협정 체결 시 대가 등 중요한 이용조건을 별도 부속합의 서로 정함으로써 불공정 규제심사를 회피해 온 부분을 규제영역으로 끌어들여 공정 경쟁을 유도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기간-기간 간, 별정/부가-기간 간 불공정한 망 이용 관련 약관 및 협정 현황을 분석하고, 상호접속 등 국내 협정의 신고/인가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매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주요 연구내용

제2장에서는 대가 및 이용조건이 엄격히 규제되는 음성망 상호접속에 비해 차별 조건 등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인터넷망 상호접속, 설비제공 협정을 주

분석대상으로 하여 협정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기간통신사업자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별정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기간-별정 간 망 이용계약의 유형 및 계약 관계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체결된 인터넷망 상호접속 협정은 부속합의서에 요금 등 실질적인 거래조건을 정하고 있으나, 제공사업자, 이용사업자, 거래 시기, 거래 규모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금 측면에서는 일정 접속용량(1G) 제공 대가가 인하되는 추세이고, 접속용량이 증가할수록 요금 증가 정도는 둔화되는 추세 등은 기술발전의 반영, 수량할인(volume discount)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비슷한 시점에 유사한 용량을 구매하더라도 이용사업자에 따라 대가를 달리하는 등 부당한 차별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부당한 가격 차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의 축적, 부당성의 기준이 되는 가격차별 정도 등에 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요금 이외에 비가격 측면에서 계약해지 조건, 해지수수료, 품질 장애 시 손해보상 기준 등도 개별 거래마다 차이를 보였다. 한편, 설비제공 협정은 회선설비제공 협정, 초고속 IP망 제공 협정 등 협정서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망 협정과 달리 합의서에 구체적인 거래수량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 단가에 대한 분석만이 가능하였다. 분석결과, 광 중계기용 광코어는 거래 구간 수에 따라 구간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초고속 IP망 서비스용 회선설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속도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이용사업자 간의 차등은 적고, 전용회선의 경우에는 각 규격별로 이용 사업자 간 상당한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현재 체결된 상호접속 등의 협정의 분석에서 가격, 비가격 차별의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부당한 가격차별 판단 기준, 표준협정서 권고안 마련을 목표로 관련 해외사례를 검토하였다. 미국, EU 등에서 남용방지의 일환으로 부당한 가격 차별을 규제하고 있으나, 정성적인 위법성 판단기준만 제시될 뿐 가격차별과 비용차이 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단일한 기준이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 국가별로 제도상 가격차별의 개념, 주요 적용대상, 위법성 판단기준(예컨대, 경쟁제한

성 판단 및 정당성 항변 인정 정도)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정량적인 적정 가격차별의 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서비스의 비용과 수익을 비교하여 상호보조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관련 해외사례가 참고가 되었다. 본 보고서는 해외사례 및 기존 문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원가자료를 통해 개별 거래에서 미래에 획득 가능한 수익 이상으로 할인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부당한 차별로 식별하는 방안 및 기준을 제시하였다.

한편, 해외 주요사업자는 가격 및 비가격 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표준협정서로 공개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가격차별 등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주요 국제기구 또는 규제기관의 RIO 제도 및 권고사항과 해외 주요 통신사업자의 RIO 현황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RIO가 사업법 상에 제도화되고 있지 않으나, 이미 FTA 등 국제법에 따라 표준협정제안서 공개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제4장에서는 국내 협정 신고/인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협정 신고/인가제도 운영의 개선방안이다. 첫째, 협정 체결 및 협정 신고/인가 신청 기한과 관련하여, 9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과 신고절차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실정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사업법 개정안을 감안하여, 협정 요청 후 90일 이내 협정을 체결하고 체결 후 30일 이내 방통위에 신고 및 인가를 신청하되, 다만, 계약 체결 지연 등의 이유로 사업법 개정안의 취지가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협정 신고/인가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협정체결 당사자 중 협정 체결을 요청받은 사업자(즉, 망 제공사업자)가 신고/인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망을 상호 제공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제출이 용이한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를 인정하며, 다만, 인가대상 사업자와의 협정 체결의 경우에는 인가 대상사업자가 인가 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의 사업법 상의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신설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셋째, 모든 신규·변경 협정의 신고 의무 부과(예외 불인정)에 대해 사업법 상 신고·인가 대상에 대한 예외가 없으

며, 미신고·인가 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해 모든 협정의 신규·변경 등 사유발생 시 신고·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비제공과 관련해서도 의무제공 설비제공 협정 뿐만 아니라 의무제공 설비 외 설비의 제공(일반설비제공)에 대한 협정도 신고의 의무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제출서류의 내실화와 관련하여 협정서에 실질 대가·조건 등 기존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토록 하고, 시행령 상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사업자에 통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협정 체결 사업자 스스로 협정의 원칙 및 고시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 점검표(Self Checklist)를 마련하여 제출서류에 포함하도록 한다. 자가 점검표는 상호접속기준 등 고시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고시 적합성 점검표와 협정의 동등성·투명성·적시성 여부를 판단하는 협정 원칙 이행 점검표로 구성한다. 이러한 서류 요건은 법 시행령 40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협정 신고/인가 심사 절차 차등화와 관련해 신고 협정의 경우 사업자가 자가 점검표를 제출하면, 형식요건(구비서류 충족 등)만을 확인한 후 신고 수리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사후적으로 문제발생시 금지행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인가 협정은 사업자가 제출한 자가 점검표와 동일한 심사기준으로 사업자 제출내용을 검토, 심사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되, 향후 인가 의결을 위원회 서면결의로 가능하도록 인가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본 보고서는 협정서의 신고/인가 절차 및 심사기준(안)을 제시하였다. 협정 심사 가이드라인에서 목적,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심사원칙으로 i) 관련 기준에의 내용 적합성 여부 심사, ii) 관련 기준에의 세부사항별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서류의 사업자 자율 작성 제출 및 필요시 보완 제출, iii) 협정 신고/인가 심사 절차의 차등 원칙을 제시하였다. 협정 신고/인가 심사절차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 사업자는 협정서 사본, 협정의 요약표, 협정 원칙 이행 점검표 및 고시 적합성 점검표, 점검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체 가격 분석 자료, 기타 거래관련 증빙 서류를 협정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되, 단, 기 신고된 협정과 동일

한 상품의 거래가 반복되거나, 단순히 협정의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협정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사업법 제40조 개정을 통해 변동된 사항만을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고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1) 신고 서류의 구비 여부, 2) 동등·투명·적시, 합리성 등 협정 체결 원칙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점검표를 확인 후 신고 협정을 수리하되, 자료 누락 또는 추가적인 보충 분석 필요 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인가대상 사업자에 대한 협정서 심사에서는 신고 심사와 제출 서류 요건 등은 동일하나, 심사 절차에서 동등성 및 경쟁제한성 여부 심사 등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동등성 심사 및 경쟁제한성 심사 절차 흐름도를 제시하고, 동일상품 판단, 가격/비가격 차등 분석, 정당성 사유 판단은 ‘협정 원칙 이행 자가 점검표’의 내용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심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쟁제한성은 당해 협정의 관련 시장 확정, 확정된 동 시장의 경쟁상황평가 결과 분석과 당해 협정 체결·이행으로 인한 경쟁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단, 당해 협정의 거래 규모가 미미한 경우에는 경쟁제한성 심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당한 차별 심사기준과 부당한 상호보조의 측정방법(안)을 제시하였으며, 규제기관은 이를 동등성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준협정제안서 작성 및 공개에 대해서는 국제협상 준수를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상호접속제공지침(RIO)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계류 중인 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법제화 작업이 필요하다. RIO 작성은 ITU RIO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별 RIO에 포함될 필수 항목을 식별하되, 국내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ITU 가이드라인이 유선망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유/무선망간 차별성을 반영할 여지가 있는 지 검토해야 한다. 현행 국내 서비스별 협정의 ‘사업자 간 추후 협의’ 사항 중 사전적으로 식별 가능한 사항은 가능하면 구체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해외 사업자의 RIO 내용을 참고하여 해외 사업자의 RIO와 유사

한 수준의 체계성, 구체성, 명시성이 확보되도록 기술할 것을 권고하였다.

4. 연구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기간통신망 이용 관련 협정 현황을 사업자의 협정서/부속합의서와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하고, 망 이용 계약에서 이슈가 되는 동등성을 심사하기 위한 차별기준 및 상호보조 측정에 대한 해외사례를 검토하였으며, 협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협정제안서(RIO) 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협정 신고/인가제도의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협정 신고/인가 시 가격 및 비가격 조건에 대한 차별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동등성 심사 점검표, 부당한 차별기준, 부당한 상호보조의 측정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협정 체결 및 협정 신고/인가 신청 기한, 협정 신고/인가의 주체, 모든 신규·변경 협정의 신고 의무 부과 원칙, 협정 신고/인가 시 제출 서류의 내실화, 협정 신고/인가 심사 절차 차등화 등 협정 신고/인가제도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도출함으로써 관련 정책 추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현 협정 신고/인가제도의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향후 기간통신망 이용 관련 협정의 투명성 확보와 계약 조건의 동등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1장 서론

최근 별정/부가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망 이용관계에 이용약관을 적용토록 한 사업법 제29조제5항이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규제공백 영역이었던 별정/부가-기간 망 이용관계를 공정한 협정 등으로 이루어진 계약관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재판매 의무제공의 근거가 사업법에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협정 신고·인가의 대상에 도매 제공사업자도 포함하게 되어, 재판매 관련 협정의 신고·인가 심사 업무 처리에 대한 정책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기간사업자 간 협정 체결 시 대가 등 중요한 이용조건을 별도 부속합의서로 정함으로써 불공정 규제심사를 회피해 온 부분을 규제영역으로 끌어들여 공정경쟁을 유도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대가 및 이용 조건이 엄격히 규제되는 ‘음성망 상호접속’에 비해 ‘설비제공’, ‘인터넷망 상호접속’ 부문에서는 차별적 조건 등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음성망 상호접속’의 경우에도 SMS, 착신과금서비스 등 신규 부가서비스 접속에 있어서 망 이용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본 협정서에는 계약 당사자 간 협정 내용이 충실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협정 내용의 해석과 고시에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간-기간 간, 별정/부가-기간 간 불공정한 망 이용 관련 약관 및 협정 현황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외 상호접속 등의 협정 현황, 기간통신망 이용과 관련된 불공정행위, 상호보조(cross-subsidy), 표준협정(RIO) 등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도매 협정과 관련한 불공정성 요소들을 식별하여 이의 사후규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국내 현황

제 1 절 협정 관련 법제도

기간통신망과 관련된 국내의 법제도로는 ‘설비제공’, ‘공동이용’, ‘상호접속’, ‘공동사용’,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6(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를 들 수 있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6의 경우, 상호접속 등 협정의 체결 및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배적 사업자를 상호접속 협정 인가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상호접속 등의 협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는 협정의 변경 및 폐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필수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협정 체결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인가 신청 시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협정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는 협정 신고·인가에 필요한 서류 요건 및 이에 대한 적합성 심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협정을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협정서 사본, 지급금액·정산방법·협정시행방법을 기재한 서류, 상호접속 조건 등 협정의 비용을 명시한 서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제공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협정 변경 시 신규 협정 대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출 받은 서류들이 상호접속등 관련 고시에 적합한 내용인지를 심사해야 한다.

〈표 2-1〉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6

<p>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6(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중략)…협정을 체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3조의7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34조제3항, 제34조의3제3항 및 제3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를 당사자로 하는 협정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은 제33조의5제3항, 제33조의7제3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3제2항 또는 제3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8, 2008. 2. 29></p> <p>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에 대하여 보완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26, 2008. 2. 29></p> <p>⑤ 제34조의3제1항 및 제3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에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다.</p>

〈표 2-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

<p>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0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① 법 제34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의 체결 및 이의 변경·폐지의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협정서의 사본, 2.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정산방법과 협정의 시행방법을 기재한 서류, 3.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조건 및 그밖에 협정의 비용을 명시한 서류, 4.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5. 신·구협정을 대비한 서류</p> <p>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는 그 내용이 법제33조의5제3항·제33조의7제3항·제34조의3제2항 또는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p>

제 2 절 상호접속 등의 협정 현황 및 서비스 유형별 협정의 주요 내용

1. 협정 현황

2003년 1월 이후 2008년 말까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간 망제공 관련 협정 신고/

인가 건수는 총 590여 건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전화계망 및 인터넷망 상호접속이 약 500여 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3〉 기간통신사업자 간 협정 신고/인가 현황

구분	상호접속			설비제공 (자가설비)	공동활용	공동이용 (로밍)
	전화계망	인터넷망	무선 인터넷			
신고	133	292	2	84(6)	—	—
인가	65	9	2	—	3	—
합계	198	301	4	84(6)	3	—

주: 1. 2003년 1월~2008년 말까지를 대상으로 집계

2. 협정 건수는 변경 및 폐지건수 포함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국내 상호접속 등의 협정서 및 부속합의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무선 음성망 상호접속, VoIP접속, 인터넷망 상호접속, 설비제공, 공동사용 등 서비스 유형별로 다양한 협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망 접속 및 의무 제공 대상이 아닌 설비제공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망 이용대가, 거래조건, 절차 등이 규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차등이나 불공정행위의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인터넷망 상호접속 및 의무제공 대상이 아닌 설비제공 협정을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2. 인터넷망 상호접속

가. 개요

(1) 협정서

인터넷망 상호접속 협정서의 내용은 모든 사업자들이 99.9%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본문은 총칙, 접속망 구성원칙, 정보제공, 접속료 산정, 접속료 등의 정산, 책임 및 업무의 한계, 부칙 등 총 6개장 5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 조항의 부칙을 포함하고 있다.¹⁾ 실제로 모든 사업자의 협정서 내

1) <별첨 1>의 주요 내용을 내용 참조하시오.

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협정서에 기반한 차등, 차별 요소는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부속합의서

인터넷 상호접속 부속합의서에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개별 거래 정보가 포함되

〈표 2-4〉 인터넷망 상호접속 부속합의서의 개괄적인 내용

목 적	주요 내용
계약기간 (연장 및 승계 포함)	14년계약, 변경의사 서면 통보 안하면 1~2년 단위로 자동 연장 * 상호변경, 합병, 영업 양수양도 등 발생시 변경사항 서면통보, 통보후 30일 이내 반대의사 없는 경우 계약자동승계
서비스 제공	인터넷 대역폭 서비스제공 신규 회선 및 회선증속에 적극 협조
분계점	
기술기준	기술기준 준용, 필요시 협의
이용신청	양식에 따라 이용 신청, 개통 희망일은 협의 조정
서비스 개통	최초 개통 시기는 이용 사업자 희망일에 맞춰야 함(불가능한 경우 협의해조정) 실사를 통해 정상적인 개통이 확인된 날을 개통일로함
접속용량 및 접속조건	협정서 별표 요금대신 부속합의서 별표1 접속요금 적용 * 설치장소, 개통완료일, 대상회선 등 기록 제3자 IP소통을 제한
이용요금	이용요금은 별표1 참조, 증속시 요금은 별도 협의 트래픽 측정 방식 규정 (요금 계산 방식, 대금 지급방식 등)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이용사업자의 사유로 설비 이전설치가 필요한 경우 제공 사업자 협조 회선용량 등 세부조건 변경시 추가 부속 합의 개정, 보완 필요시 서면합의로 결정
권리, 의무의 양도금지등	서면동의 없이 제3자 양도 또는 담보제공 금지
해지, 위약금, 장애보상	사업자 허가취소, 부도 등의 중대한 사유, 2회 이상 연체, 비밀 유지 위반 등의 경우 일정 기간 시정을 서면통보후, 부속합의서 해지가능 해지요청 사업자가 위약금을 납부 해지위약금=(잔여기간*해지전월 이용요금*50%) * 이용사업자에게만 해지위약금을 부과한 경우도 있음 귀책사유의 서비스장애시 하나포스 이용약관에 따라 손해배상
비밀유지	합의서 목적외 용도로 이용금지, 서면 동의 없이 제3자 공개, 누설 금지
적용범위	협정서 내용과 상충시 부속합의서 우선 적용
분쟁의 해결	분쟁조정 관할법원은 사업자 관할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법등으로 다양
불가항력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한 의무 불이행시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지지 않음
기타	기술지원 사항

어 있고, 제공사업자, 이용사업자, 거래 시기, 거래 규모 등에 따른 거래조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협정서와는 달리 부속합의서에는 일정한 형식이 없으며, 계약기간, 서비스 제공, 계약변경 및 해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인터넷 상호접속 부속합의서의 경우 몇 가지 측면에서 차등, 차별 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제공사업자의 협정서 상 표준 요금표과 부속합의서의 요금표가 다른 경우를 들 수 있다. <표 2-5>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로, 이를 통해 가격차별의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표 2-5> 인터넷망 상호접속 제공사업자의 협정서 및 부속합의서상 요금표

• 협정서 상 표준 직접/중계 접속료					
직접접속료			중계접속료		
접속용량	Tier 2	Tier 3	물리적 포트 규격	접속용량	중계접속료
45Mbps	∞	∞	45Mbps	45M	∞
155Mbps	∞	∞	155Mbps	155M	∞
622Mbps	∞	∞	622Mbps	622M	∞
1Gbps	∞	∞	1Gbps	1G	∞
2.5Gbps	∞	∞	2.5Gbps	2.5G	∞
5Gbps	∞	∞	10Gbps	5G	∞
10Gbps	∞	∞	10Gbps	10G	∞
• 부속합의서 상 요금표					
제공지역	제공속도	접속요금 (천원/월, VAT 별도)	비고		
-	5Gbps	∞	접속회선료+통신료 주회선 및 예비회선 제공 국제트래픽: 3%		
	6Gbps	∞			
	7Gbps	∞			
	8Gbps	∞			
	9Gbps	∞			
	10Gbps	∞			

주: 접속요금 수치는 자료의 보안성을 고려하여 표시하지 않음

또한 제공 사업자들은 이용사업자에 따라 다른 요금표를 통해 1~20%의 차등적인 중계접속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MSO에는 중계접속/직접접속, 통신료/회선료의 구분 없이 용량별로 단일 요금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2-6〉 A사의 부속합의서상 요금표1

IX속도 (트래픽량,G)	₩	₩	₩
1	₩		
2	₩		
3	₩		
4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13	₩		₩
14	₩		
15	₩		₩
16	₩		
17	₩		₩
18	₩		
19	₩		₩
20	₩		
21	₩		₩
22	₩		
23	₩		₩
24	₩		
25	₩		₩
26	₩		
27	₩		₩
28	₩		
29	₩		₩
30	₩		
...	(50G까지 1G단위 요금 제시)		

〈표 2-7〉 A사의 부속합의서상 요금표²⁾

	용량 (G)	부속합의서 상 요금			협정서 상 요금			할인율	중계 접속 비율
		회선수	단가	요금	직접 접속	중계 접속	소계		
이용사업자1	1	2	☞	☞	☞	☞	☞	43%	10%
이용사업자2	1	1	☞	☞	☞	☞	☞	26%	5%
이용사업자3	0.5	1	☞	☞	☞	☞	☞	31%	1%

둘째, 증속기준이 이용사업자 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B사 부속 합의서에는 현재 IX 속도에서 1.5Gbps를 초과하는 횟수가 월 10회 이상인 경우에 증속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에 C사는 월 7일, 월 10일 이상의 이용 대역 상한을 초과한 경우에 증속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셋째,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이용사업자에 따라 다른 계약해지 조건²⁾을 적용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 통상 이용사업자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계약해지 규정이 포함되지만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해지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질(장애)과 관련하여 이용사업자의 해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해지 기준이 사업자별로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D사는 계약해지를 위한 본사의 귀책 사유로 “1개월 내 5분 이상 장애가 3회 이상, 연속 4시간 이상 장애 또는 월 누적 10시간 이상, 연속 2시간 이상 장애시 또는 월 4시간 이상 장애시”를 들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때 이용사업자는 조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이용사업자의 규모가 클수록 해지수수료를 낮게 적용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MSO, Tier2의 경우 x%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소규모 SO에게는 y%까지 해지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2) 계약해지 사유는 사업자허가취소, 부도 등의 중대한사유, 2회이상연체, 비밀유지위반, 제공사업자의 빈번한 장애 등이다.

다섯째, 이용사업자에 따라 피해보상 기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기준이 포함되지 않은 계약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E사의 피해보상기준을 살펴보면, X 계약서에는 E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시 피해보상 요율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Y 협정에서는 상호 협의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F사의 경우, Z사와는 2시간 이내 일할계산, 3시간 이상 a% 감면(초과 1시간당 b% 추가 감면)한다고 계약을 하였으나, W사와 10분 이내 복구 원칙, 초과하는 경우 일할 계산한 금액의 c배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인터넷 전용회선-전화 끼워팔기 혹은 인터넷 전용회선 무료제공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통해 부속합의서가 체결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G사와 H사 간 인터넷망 전용회선 이용계약서에서 H사가 시내전화, 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I사는 인터넷 전용회선 이용 계약시 1~2개월의 안정화 요금(무료사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개별 협정 상의 가격 차등 현황

(1) 분석방법

인터넷망 상호접속 협정 및 부속합의서 상의 대가를 중심으로 개별 협정상의 가격 차등이 발생하는지, 특히 도매서비스 유형별로 개별 제공사업자의 유사한 거래에서 가격 차등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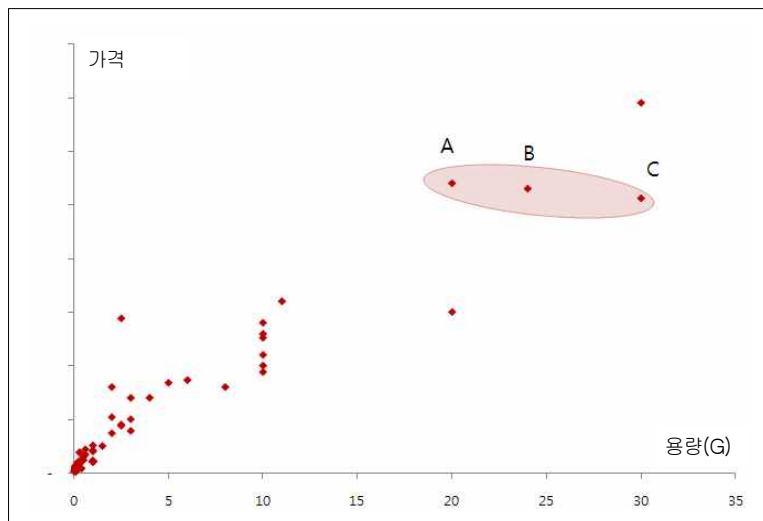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인터넷망 상호접속 부속합의서 중 계약 용량 및 대가가 제시된 협정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유사거래에 대한 제공사업자별 가격 추이, 가격 차등 여부에 초점을 두고, 제공 시기, 거래기간, 수량(e.g. volume discount 수준), 지역(대도시/기타), 이용사업자(기간/별정, 계위) 등의 요소를 고려하였다.

(2) 실제 인터넷망 접속료 현황

실제 인터넷망 접속료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인터넷망 백본 접속 용량이 증가할수록 제공 대가가 증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다량할인(volume discount)의 패턴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계약 용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대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림 2-1]을 보면, 계약 시점이 3개월 이내로 유사하고 적용 계위도 동일한 상황에서 C는 A, B에 비해 용량은 크지만 가격은 낮게 적용되었는데, 이는 경쟁사업자 대응 과정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망 접속의 이용조건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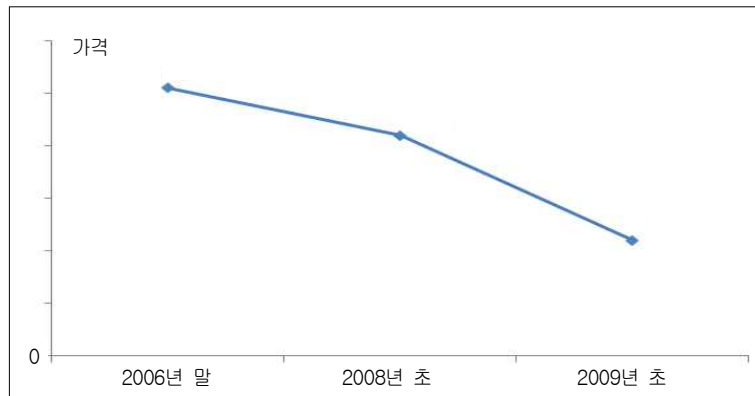
[그림 2-1] 인터넷망 접속용량에 따른 접속료 현황(예시)



- 주: 1. 여러 사업자의 데이터를 함께 분석
2. 세로축(가격)은 자료의 보안성을 고려하여 수치를 나타내지 않음

다음으로, 일정 계약 용량의 계약 시기에 따른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실제로 일정 용량의 접속대가가 인하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계약 관찰치가 제한적이기는 하나, 인터넷 백본 접속 용량의 급증과 함께 인터넷 백본 접속 대가가 점차 인하되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일치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2] 일정 계약 용량(1G)의 접속 대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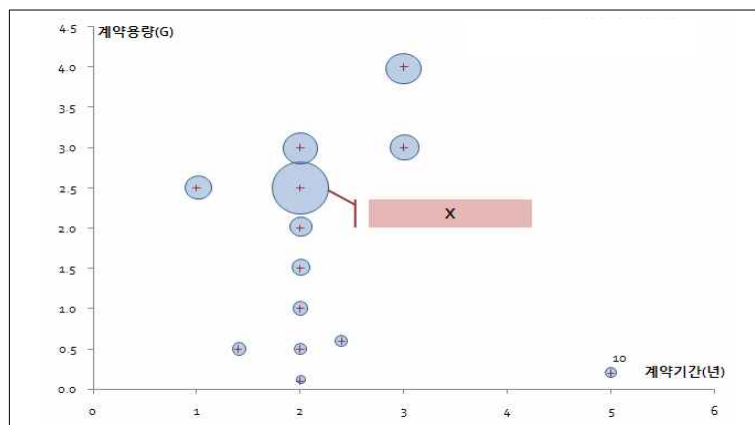


주: 세로축(가격)은 자료의 보안성을 고려하여 수치를 나타내지 않음

(3) 동일 사업자 내 가격 차등 현황

첫째, 동일 사업자 내의 가격 차등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기간은 2년이 다수이며, 대체로 계약 용량이 클수록 높은 가격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X'의 경우, 용량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가격 차등이 부당하지 않다는 사업자의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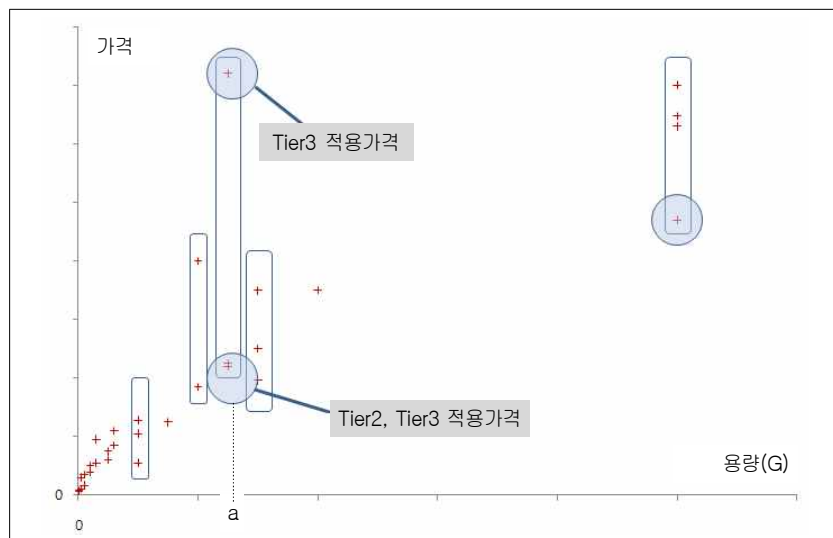
[그림 2-3] 계약기간/용량에 따른 가격 현황



주: 가격은 원의 크기로 나타냄

둘째, 일정 계약 용량에서의 가격 차이는 지역에 의한 격차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나, 동일 사업자 내에서 용량이 동일한 계약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4]를 보면, 1G 이하에서 10G까지 모든 계약 용량에서 가격 차등이 발생하고 있다. aG 계약의 경우에 상당한 가격 편차를 보이는데, 이는 tier2, tier3에 대한 가격 적용 차이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최근(2009년 4월)의 tier3에 대한 대가는 크게 인하되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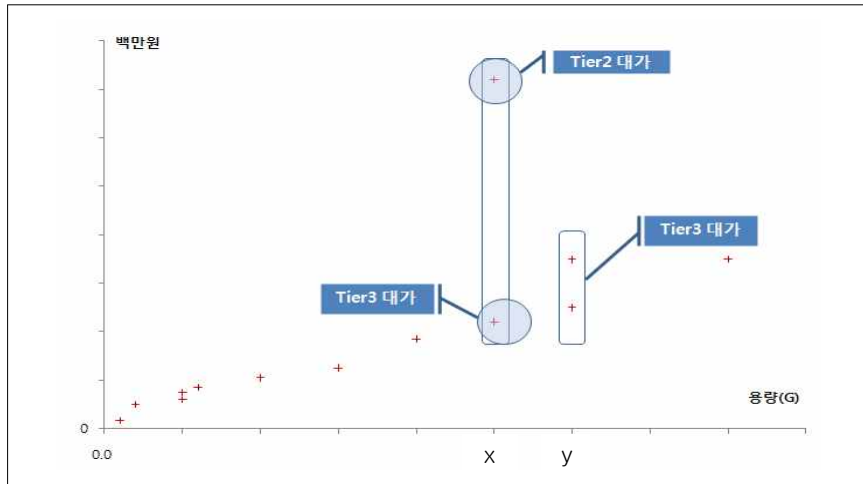
(그림 2-4) 동일 접속용량에서 가격 차이



주: 세로축(가격) 및 가로축(용량)은 자료의 보안성을 고려하여 수치를 나타내지 않음

셋째, 2008년도 1년 간 인터넷망 상호접속 계약 건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동일 접속 용량에 대해 가격 차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5]를 보면, xG 계약은 계위에 따른 대가 차이로 볼 수 있지만, yG 계약에 대해서는 계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수준의 대가를 적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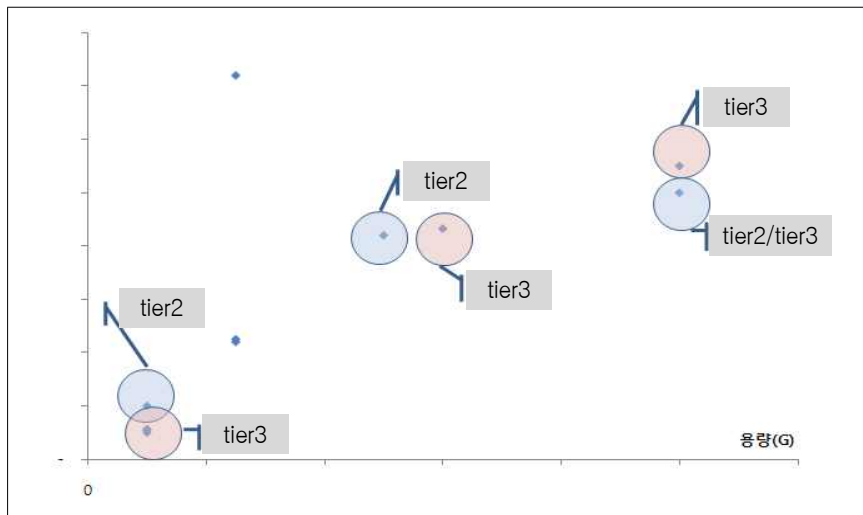
[그림 2-5] 동일/유사 시점(2008년 기준)의 인터넷망 상호접속 대가 분석



주: 세로축(가격)과 가로축(용량)은 자료의 보안성을 고려하여 수치를 나타내지 않음

넷째, 동일 및 유사 용량 용량에 대한 계위 구분에 따른 가격 차이를 분석한 결과,

[그림 2-6] 계위에 따른 인터넷망 백본 접속 가격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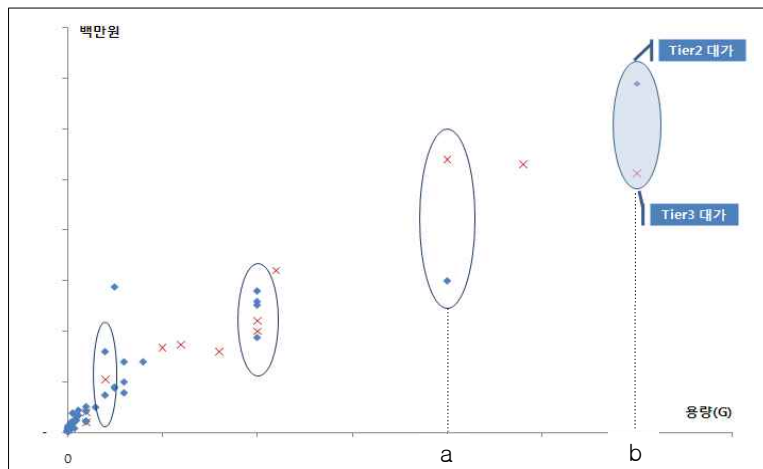
주: 세로축(가격)과 가로축(용량)은 자료의 보안성을 고려하여 수치를 나타내지 않음

가격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위 구분에 따른 요금표는 시장에서 큰 의미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4) 제공 사업자 간 가격 차이

우선, 사업자 간의 가격 차이를 살펴보면, 동일 용량에 대한 사업자 간 적용 대가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b의 경우 계위에 따른 가격 차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계약 시점이 약 1년 정도 차이인 aG의 경우 상당한 가격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림 2-7] 제공 사업자 간 가격 차이



- 주: 1. 세로축(가격)과 가로축(용량)은 자료의 보안성을 고려하여 수치를 삭제하였음
2. 사업자간 구분은 'x', '•'으로 나타냄

3. 설비제공

설비제공의 경우, 설비제공 협정, 회선설비제공 협정, 초고속 IP망 제공 협정 등 협정서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망 협정과 달리 협의서에 구체적인 거래 수량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 단가만 분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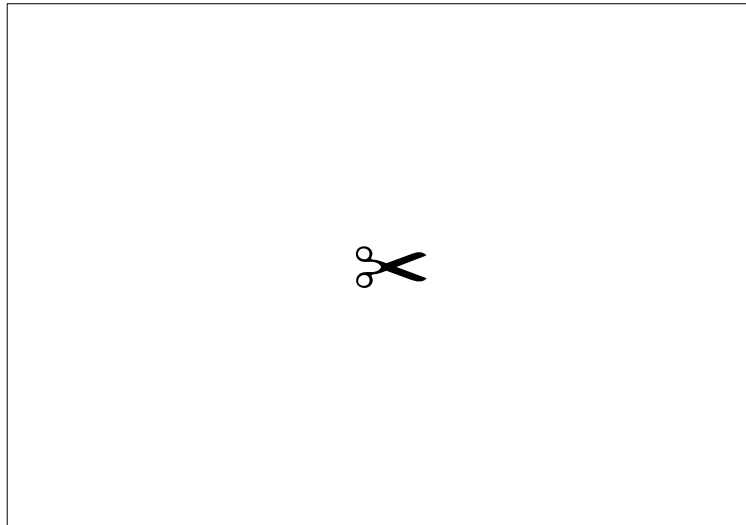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설비제공 협정 중 요금과 관련하여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1) 전용회선, 2) 중계기용 광코아, 3) 초고속 IP망 서비스용 회선설비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

으며, 전용회선의 경우 시내/시외로 구분하여 E1/155M 용량만을 대상으로 하였다.³⁾

(1) 광 중계기용 광코아 요금 비교

광 중계기용 광코아는 거래 구간 수에 따라 구간별로 요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 수가 증가할수록, 최근 거래일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2-8] 광 중계기용 광코아 요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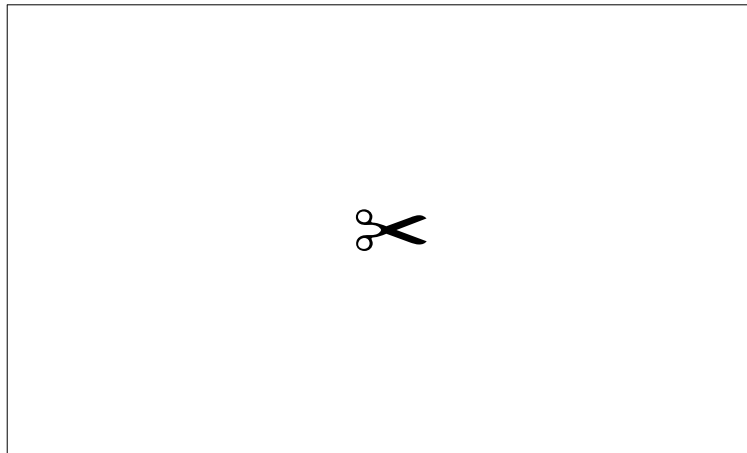
주: 자료의 보안성을 고려하여 그림을 나타내지 않음.

(2) 초고속 IP망 서비스용 회선설비 요금 비교

초고속 IP망 서비스용 회선설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속도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이용사업자 간의 차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 E1은 가장 대중적, 155M는 비교 가능한 거래 건 수가 가장 많은 상품이며, 일반 광코아 상품은 사업자간 요금 차이가 없어 제외함

[그림 2-9] 초고속 IP망 서비스용 회선설비 요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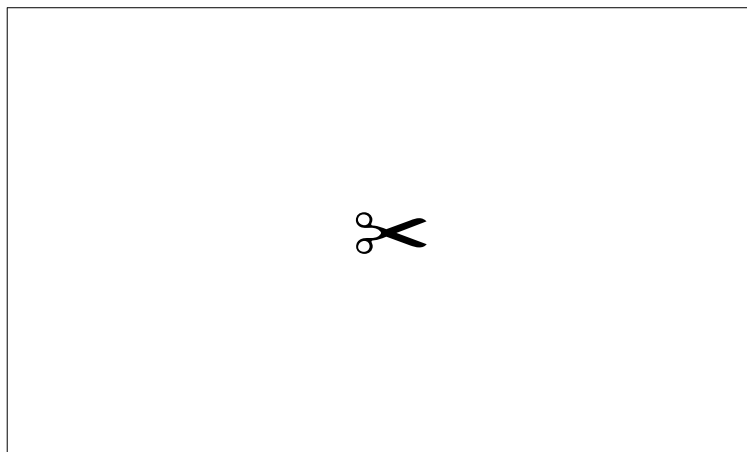


주: 자료의 보안성을 고려하여 그림을 나타내지 않음.

(3) 전용회선 요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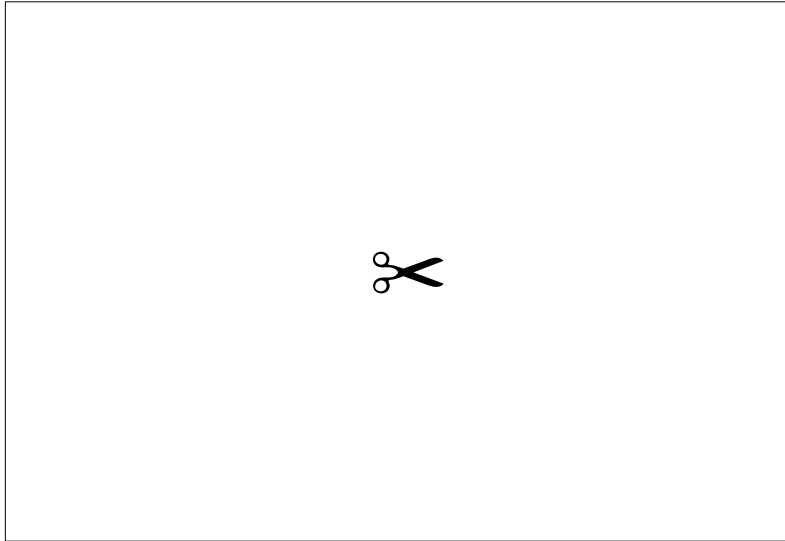
전용회선 제공계약에 관한 합의서/협정서의 요금표 상 요금을 비교한 결과, 각 규격별로 이용 사업자 간 가격 차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10] 시내 E1 상품 전용회선 요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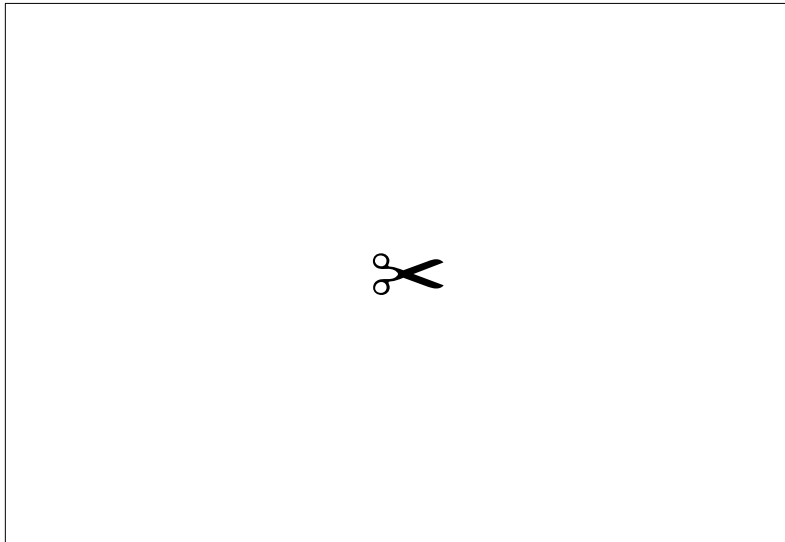
주: 자료의 보안성을 고려하여 그림을 나타내지 않음.

〔그림 2-11〕 시내 155M 상품 전용회선 요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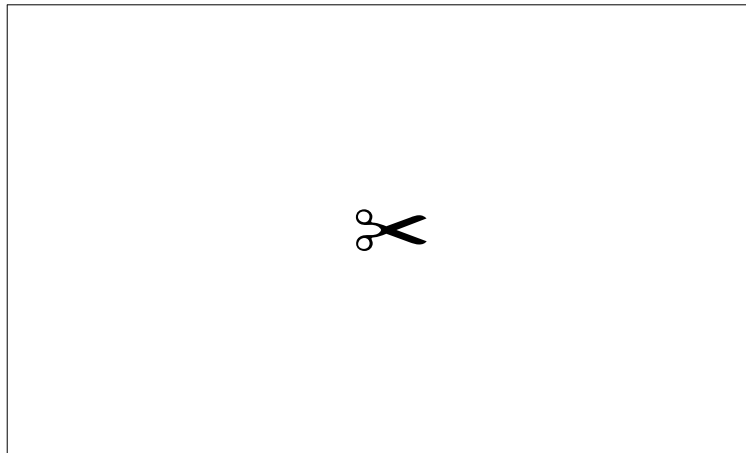
주: 자료의 보안성을 고려하여 그림을 나타내지 않음.

〔그림 2-12〕 시외 E1 상품 전용회선 요금 비교



주: 자료의 보안성을 고려하여 그림을 나타내지 않음.

〔그림 2-13〕 시외 155M 상품 전용회선 요금 비교



주: 자료의 보안성을 고려하여 그림을 나타내지 않음.

4. 음성서비스

가. 음성망 부가서비스

일반적으로 음성망 부가서비스는 크게 SMS, 개인번호, 콜렉트콜, 전국대표번호 서비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SMS의 경우 이동전화 착신, 인터넷전화 착신, 웹 착신으로 유형화해 볼 수 있으며,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간통신사업자 간 SMS호에 대해서는 호 유형별로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표 2-8> SMS호 유형별 요율

서비스 유형		요율
SMS	이동전화 착신	8원/건
	인터넷전화 착신	5원/건
	웹 착신(Phone to Web)	6원/건

둘째, 개인번호 서비스의 경우, 2001년도 계약 당시에는 가입자호 x원/분, 이용자호 y원/분으로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었으나, 2002년도 계약에서는 차등화 경향을 보

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유선망 착신의 경우에 a원과 b원으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동발신 타 이동망 착신 요율의 경우에도 대가 적용방식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2-9〉 개인번호 서비스 요금(예시)

제공 사업자명	이용 사업자명	협정 체결일	접속료(이용대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발신 → B/타유선망 착신: 25원/분 (A가 B에 지급) - A발신 → 타이동망착신: 4원/분 (A가 B에 지급) - B/타유선망발신 → A 착신: 접속료 (B가 A에 지급) - 가입자호(1560): 12원/분(A가 B에 지급)
☒	☒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발신: 이용자호 28원/분, 가입자호 12원/분을 B에 지급 - A착신: 65.7286/분을 A에게 지급
☒	☒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발신/타유선망 착신: 28원/분 (C가 D에 지급) - C발신 → 타이동망착신: 시내교환요율: 당시 5.16원(C가 D에 지급) - D/타유선망발신 → C착신: 접속료 (D가 C에 지급) - 가입자호(1560): 12원/분(C가 D에 지급)
☒	☒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발신: 이용자호 28원/분, 가입자호 12원/분을 F에 지급 - E착신 양사 협정서상 수수료를 E에게 지급
☒	☒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번호: 28원/분 가입자호: 12원/분

셋째, 콜렉트콜 서비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사업자 간 계약에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거나 계약 쌍방 간 상호보상 정산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표 2-10〉 콜렉트콜 서비스 요금(예시)

제공 사업자명	이용 사업자명	협정 체결일	접속료(이용대가)
☒	☒	☒	- A발신→B착신: A가 B에게 과금액의 10% 지불 - B발신→A착신: B가 A에게(유선발신 16원/분, 이동전화 발신 과금액의 10% 지급)
☒	☒	☒	- C발신→D착신: C가 D에게 16원/분 지급 - D발신→C착신: D가 C에게 16원/분 지급
☒	☒	☒	- E발신→F착신: E가 F에게 16원/분 지급 - F발신→E착신: F가 E에게 16원/분 지급

넷째, 전국 대표번호 서비스의 경우에는 접속대가 적용방식이 각 사별로 다소 상이하다고 볼 수 있으나, 요율 수준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A사의 경우 타사와는 달리 K사에게 보다 저렴한 24.1631원/분의 접속대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과금대행 수수료로 5%를 부과하고 있다.

〈표 2-11〉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요금(예시)

제공 사업자명	이용 사업자명	협정체결일	접속료(이용대가)
☒	☒	☒	(가입자선로+가입자중계+시외교환)*70%+(가입자선로+가입자중계+시외교환*2+시외국간)*30%+접속회선+지능망
☒	☒	☒	접속료: 10.1780원/분 서비스이용료: 9원/분, 지능망 개발 대가: 9원/분
☒	☒	☒	28.7177
☒	☒	☒	24.1631 과금대행수수료: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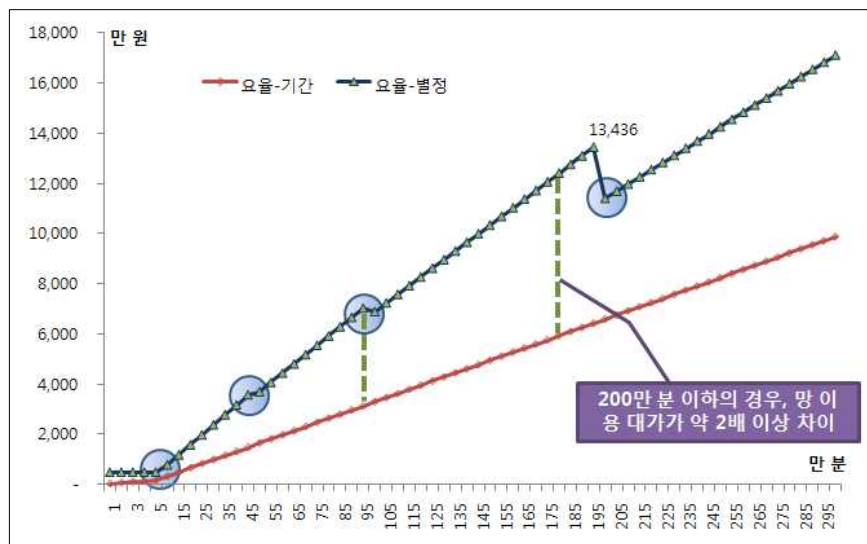
나. 기간-별정 간 망 이용대가 차등 현황

통신시장에서 정부의 상호접속료 규제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간 음성망 이용대가 차등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렵지만, 기간-별정 간 망 이용대가 차등은 존재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 발생 구조에 따른 대가 차등이 아닌 제공 망의 구조가 동일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사업자 지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이동 발신 국제전화 발착신 연동료⁴⁾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그림 2-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정과 기간의 이동 국제전화 발착신 망 이용대가는 200만 분 이하 계약의 경우에는 지불 대가가 약 2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상 별정통신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분수 이하에 대해 최소 지불요금 규정이 있으며, 다량 할인 적용 구간이 50만 분 단위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림 2-14] 기간-별정 간 이동발신 국제전화 발착신 망 이용대가 차이 현황



4) 이러한 요금 차이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이동 국제전화 발착신 망 연동을 위해 유선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망을 경유하여 접속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중계접속 제공사업자들은 기간통신 사업자에 적용되는 상호접속료와 별정통신 사업자에 적용되는 망 연동료 사이의 거래 차익을 누리게 된다.

제3 절 별정통신사업자의 망 이용 계약 현황

1. 별정통신사업자의 망 이용 계약 현황

가. 별정통신사업의 종류

별정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전송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되며, 크게 3가지 사업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설비보유 재판매사업(별정 1호)으로 자체 교환 설비를 보유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전송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요 서비스는 음성 재판매, 인터넷폰(Phone to Phone 등), 국제 전용회선 재판매가 있다. 음성재판매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임차 등을 통해 이용)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인터넷폰은 인터넷망을 통해 음성신호를 전송(교환기 보유)하여 전화역무를 제공하며, 국제 전용회선 재판매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국제 음성·데이터 전용회선(전기통신회선설비)을 임차하여 이를 분할 또는 전체로 재임대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설비 보유에서 교환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을 제어·접속하여 회선 상호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를 의미한다.

두 번째 별정 사업 유형은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별정 2호)로 자체 교환설비 없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전송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요 서비스로는 호집중, 재과금, 무선재판매, 인터넷폰(PC to Phone 등)이 있다. 호집중 사업은 여러 지역에 산재된 고객들을 영업 모집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다량할인을 받아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사업으로 고객에게 직접 요금청구는 하지 않으며, 재과금은 가입자를 모집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다량할인제도를 이용하여 통신사업자로부터 일종의 도매형태로 과금자료를 받아 자신

의 가입자에게 소매형태로 재과금하는데, 고객에게 직접 요금청구를 한다는 점에서 호집중과 대별된다. 무선 재판매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규모의 통화시간 등을 할인가격으로 구입하여 이를 다시 일반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며, 인터넷폰은 별정 1호와 유사하나, 다만 자체 교환설비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 번째 별정통신사업의 유형은 구내통신 사업(별정 3호)으로 빌딩, 아파트 등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역무 및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내교환기 및 LAN 등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구내에서 종합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나. 기간-별정통신사업자 간 망 이용 계약의 유형

기간-별정통신사업자 간 망 이용 계약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국제전화 재판매, 인터넷전화 재판매 사업을 들 수 있다.

(1) 국제전화서비스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의 경우 대체로 교환설비를 보유한 별정1호 사업자이며,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상호 연동 계약 등에서 중계접속을 통한 망 이용대가 절약이 일부 가능하나, 기간통신사업자의 국제전화서비스를 단순재판매하는 호집중, 재과금 사업자의 경우는 통상 기간통신사업자의 별정통신 이용약관에 의한 다량할인 요율이 적용된다.

[그림 2-15] 별정통신사업자의 국제전화서비스 구성도-유선통신의 경우



자료: SBI 인터랙티브

별정-유선 기간통신사업자 간 망 연동에서 계약 관계는 첫째, [그림 2-15]의 2번 구간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외교환기와 별정의 국제교환기를 연동하는 전용

회선을 임차하는 계약이 발생한다. 또한 해외 고객이 국제 통화 시 기간통신사업자의 가입자로 착신될 때 착신 접속료에 대한 계약 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 착신 연동에 대한 상호접속료 보다는 비싼 별정 통신 요금이 적용되며, 기간통신사업자는 자사 가입자의 과금정보 제공 대가도 부과한다. 과금, 청구, 수납은 별정통신사업자가 처리하게 되는데, 국내 로컬 비용(이용자 요금과 동일, 시내 39원/3분, 시외 14.5원/10초당)은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보증보험증권 제공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이상의 계약 관계에서 월 고정 회선비 및 국내로컬 최소연동통화료, 초기 망 연동 시 식별번호 입력비 등이 별정통신사업자와의 계약의 주 내용이 된다.

(그림 2-16) 별정통신사업자의 국제전화서비스 구성도 - 이동통신의 경우



자료: SBI 인터랙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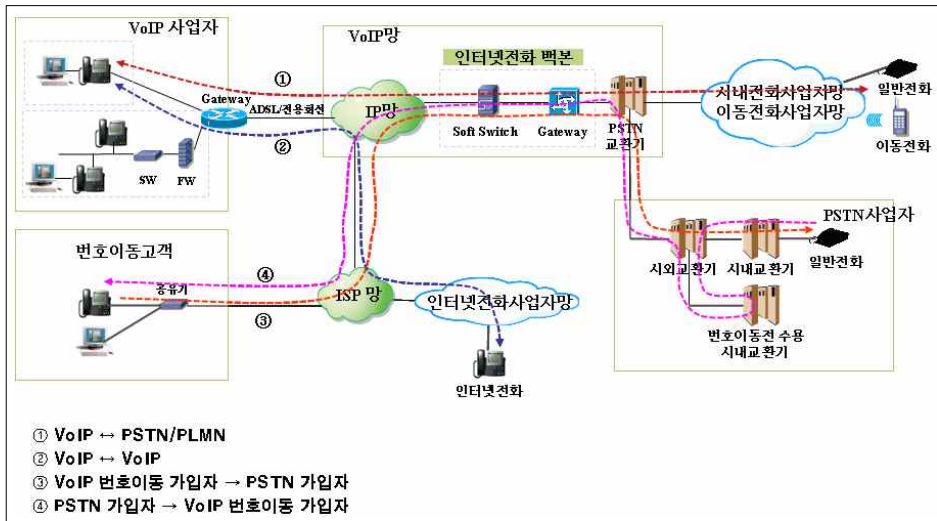
별정-이동통신사업자 간 망 연동에서 계약 관계에서는 유선과 마찬가지로 (그림 2-16)의 2번 구간에서 별정통신사업자의 국제교환기 연동을 위한 전용회선을 임차 계약이 발생하는데 이는 전용회선사업자와의 계약이다. 또한 해외 고객이 국제 통화 시 기간통신사업자의 가입자로 착신될 때 착신 접속료에 대한 계약 관계가 발생한다. 국내 이동통신 고객에게 발생된 모바일 로컬 요금에 대해서는 별정통신사업자가 부담하며, 이동통신사업자는 과금, 청구, 수납을 대행하고 과금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2) 인터넷전화서비스

인터넷전화 식별번호를 정부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사업자의 경우와 기간통신사업자의 인터넷전화 번호를 재부여 받아 사업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기간 및

별정통신사업자의 인터넷전화서비스망 구성은 동일하나 망 이용대가에 있어 차등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VoIP-PSTN 간 접속 시, 기간-별정 간 시외교환기에서 G/W 접속이 이뤄지며, PSTN 착신 시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외교환 단 이하의 접속료 적용,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접속료보다 비싼 이용약관 요금 적용된다.

(그림 2-17) VoIP 망 구성도



자료: 삼성네트웍스

2. 망 이용계약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가. 설문조사의 필요성

본 과제의 수행을 위해서는 국내 기간통신 망 이용 관련 계약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나, 다수의 기간-별정 간 계약에서 나타나는 망 이용 계약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문제점에 대한 실제적인 시장 조사 데이터는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간 망 이용 관련 협정은 2003년~2008년까지 총 590여 건에 이르고 있으나, 기간-별정통신사업자 간, 별정통신사업자 간 계약은 사업자

수가 많음에 따라 건 수 파악 자체가 어렵다.

기간-별정통신사업자 간 망 이용 계약에 있어서도 재판매 유형에 따라 계약 종류, 계약 규모 등 다양한 계약 형태가 존재하며, 사업법 제29조 제5항의 존재 하에 별정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지위로서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을 할 뿐만 아니라 개별 계약 관계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 간 계약 관계는 기존의 협정 신고/인가 제도 운영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며,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협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다수의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신뢰할만한 개별 계약 관계 자료를 입수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의 전문성 또한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다수의 별정통신사업자의 망 이용 계약 현황에 대해 파악·분석하고자 하였다.

나. 설문조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1) 설문조사의 목적

본 설문조사는 국내 기간-별정/부가통신사업자 간 망 이용 계약 관계 현황 파악 및 관련 불공정행위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2)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⁵⁾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첫째, 기간-별정/부가통신사업자 간 망 이용 계약 관계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즉, 기간-별정/부가통신사업자 간 망 이용 계약 관계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용약관에 따른 계약과 개별 협정에 따른 계약 현황에 대해 조사하며, 망 이용 계약 유형별 대가 및 계약 체결 절차 등 대가 이외의 계약 조건을 조사한다.

둘째, 기간-별정 간 망 이용 계약에서의 불공정성 요소 및 계약 관련 불공정행위의 실태를 조사한다. 기간-별정/부가통신사업자 간 망 이용 계약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을 파악하고, 담보제공 요구, 요금수준, 망 이용 계약 절차 등 계약의 불공정성

5) 설문지는 별첨 참조

요소가 되는 부분을 식별하고, 각 요소별 행위 유형(부당한 부대조건의 부과, 일방적 협정내용 변경,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정 체결 거부 등)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하며, 전반적인 기간망 이용 계약에서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집한다.

(3) 설문지 내용 구성

제공 서비스 일반 현황에 대한 문항을 통해, 망 이용 계약의 주요 유형을 식별하고, 망 이용 계약 관계에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현황을 파악하였다. 여기서는 계약 체결 시 서비스별 개별 계약 또는 서비스를 묶어 번들 계약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하여 계약 형태에 대한 개괄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별정통신사업자의 주요 제공 서비스를 기준으로 망 이용계약 체결 이전 절차, 망 이용계약 체결 요청 거절, 망 이용계약 체결/이행/변경 및 해지 관련 절차, 망 이용계약조건에 대한 현황을 질문하였다. 망 이용계약 체결 이전 절차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의 수에 대한 정보에서 시장에서 망 제공 경쟁이 충분히 존재하는 지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계약 요청방법, 기간통신사업자의 응대속도, 거래조건에 대한 설명, 계약 체결 시까지 소요 시간 등을 파악하며, 별정통신사업자의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기준(e.g. 요금할인, 상품 품질 우수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 또한 망 이용 계약 체결 요청 거절 행위와 관련해서는 동 사실의 경험에 있는 지 여부에 따라 계약 거절 방법, 거절 사유 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구성하였다.

망 이용계약 변경 및 해지와 관련 불공정행위가 존재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변경 경험, 계약 변경 요청 주체, 변경 시 제한 조건, 계약 변경 및 해지의 사유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망 이용 계약 조건과 관련해서는 대가 및 대가 이외의 조건(특히 담보요구조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별정통신사업자 망 이용계약 관련 정책방안 수립 시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다. 설문조사 방법

(1) 조사 설계

조사업체인 한국 갤럽조사연구소(주)는 전국 별정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180여 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직접 면접을 통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별정통신사업 등록현황을 통한 리스트 전수를 이용해 지역별 비례추출하는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설문지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계약 담당 또는 업체 대표 등 책임자가 작성하도록 하였다.

구 분	세 부 내 용
1) 조사 대상	별정통신사업자의 계약/ 영업 담당 또는 업체 대표 등 책임자
2) 조사 지역	전국
3) 표본 수	200명
4) 표본추출 방법	리스트 전수를 이용한 지역별 비례 추출
5) 자료수집 방법	면접원의 기업체 방문을 통한 방문조사
6) 비 고	조사 대상 업체의 강력한 요청이 있을 경우, FAX나 이메일 조사를 병행

(2) 조사 대상 업체 분포 및 표본 구성(안)

구 분	업체분포(개)	업체비율(%)	표본구성(개)
서울	560	82.4%	125~165
부산	38	5.6%	8~11
대구	42	6.2%	9~12
광주	11	1.6%	2~3
대전	19	2.8%	4~6
강릉	6	0.9%	1~2
전주	4	0.6%	1
합계	680	100.0%	150~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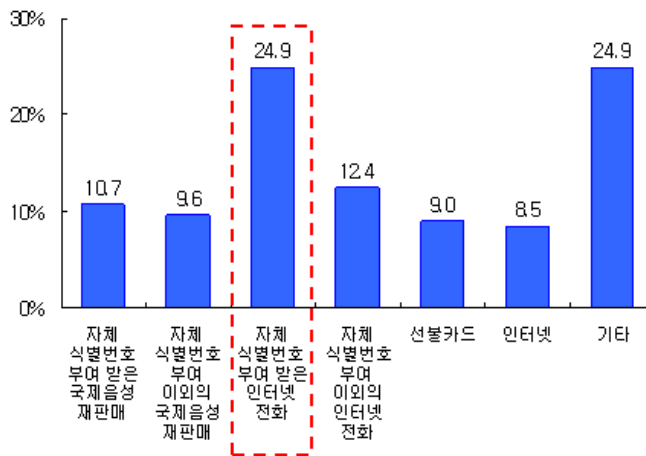
라.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별정통신사업자 일반현황

177개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설문결과 나타난 별정통신사업자의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주력 서비스는 자체 식별번호를 부여 받은 인터넷 전화가 2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전화 및 국제음성 채판매의 비율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별번호 부여에 있어서 자체 식별번호를 부여 받아 서비스하는 사업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8〕 별정통신사업자의 주력서비스 현황



별정통신사업자들이 계약을 맺는 기간통신사업자로는 주로 SK, KT, LG 등 큰 규모의 기간통신사업자와의 계약이 많은데,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인터넷전화의 경우

〈표 2-12〉 서비스별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 현황
전체(N=17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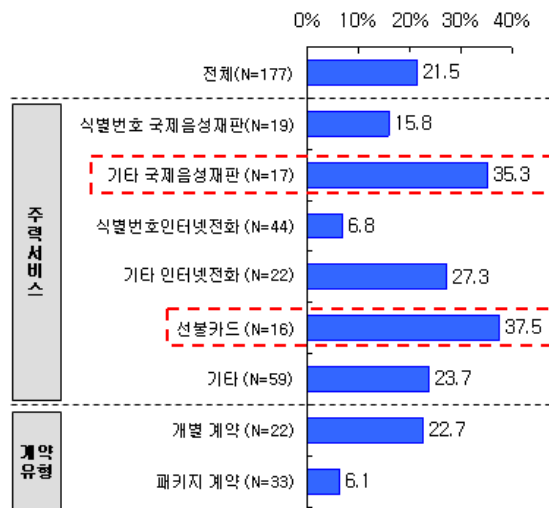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SK계열	KT	LG계열	KCT
전체		177	20.3	20.9	21.5	26.0
주력 서비스	식별번호 국제음성재판매	19	47.4	26.3	15.8	0.0
	기타 국제음성재판매	17	11.8	11.8	35.3	11.8
	식별번호인터넷전화	44	13.6	15.9	20.5	93.2
	기타 인터넷전화	22	36.4	31.8	13.6	4.5
	선불카드	16	18.8	25.0	25.0	0.0
	기타	59	13.6	20.3	22.0	3.4
계약 유형	개별계약	22	27.3	45.5	31.8	18.2
	패키지계약	33	21.2	15.2	30.3	93.9

에 인터넷전화 전문업체인 KCT의 비율이 매우 높음에 따라 KCT의 비중이 사업자 그룹별로는 가장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하나의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닌 중복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도 21.5%로 나타났다.

(2) 계약 요청 및 변경 관련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망 이용계약 요청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별정사업자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21.5%로, 기타 국제음성재판매와 선불카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계약요청 거절의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별정통신사업자를 경쟁자로 인식해서(36.8%)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계약에서의 거절 경험이 22.7%인데 반하여 패키지 계약에서는 6.1%로 나타나,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망 제공 도매시장에서 일종의 결합판매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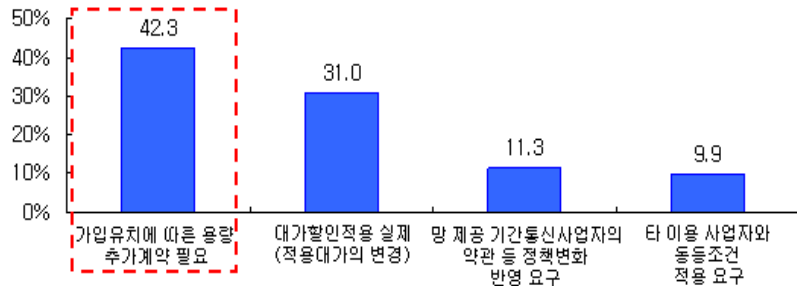
[그림 2-19] 계약요청 거절 경험(N =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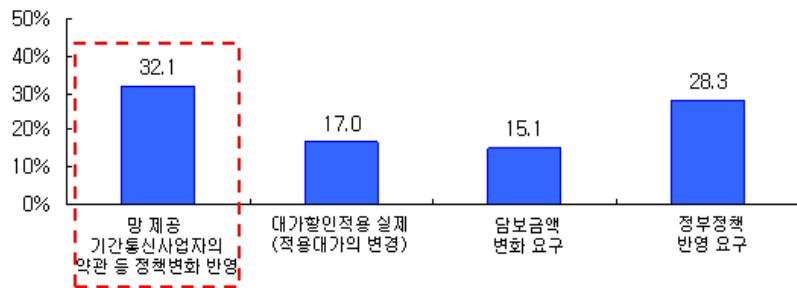
한편 계약변경 요청 사유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 상이한데, 별정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입유치에 따른 용량 추가 계약 필요가, 기간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의 약관 등 정책변화 반영이 가장 높

게 나타나고 있다. 계약변경 요청부터 계약변경 완료까지 소요기간은 한 달 이내(52.7%), 3개월 이내(32.7%), 일주일 이내(14.5%) 순으로 조사되어,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0] 별정통신사업자의 계약변경 요청 이유(N = 71)



[그림 2-21] 기간통신사업자의 계약변경 요청 이유(N =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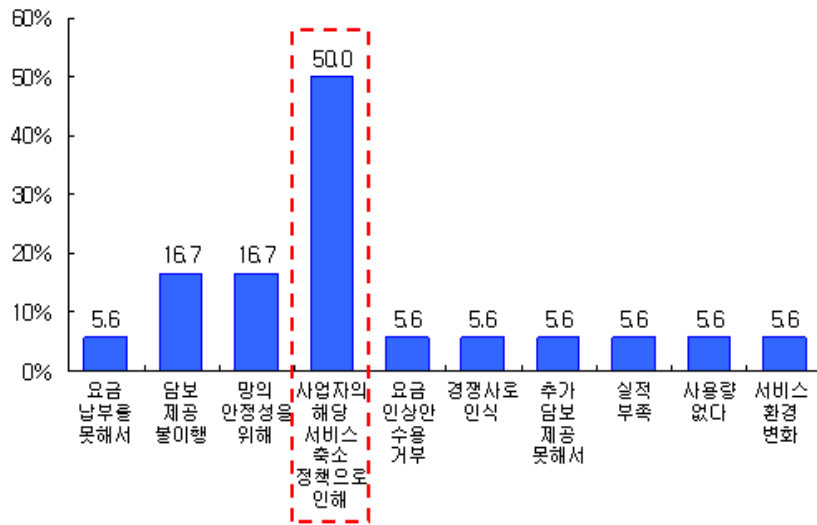


한편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 변경은 32.8%인 58개 업체가 경험이 있고, 변경 이유는 요금이 43.1%로 가장 높으며, 통화품질(12.1%), 서비스 불만(6.9%)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의 변경 및 계약 해지 시 제한 조건은 21.5%가 경험하였는데, 이때 구체적인 제한조건은 위약금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별정통신사업자의 6.2%는 망 제공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선출시로 인한 비즈니스 방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계약 해지 및 조건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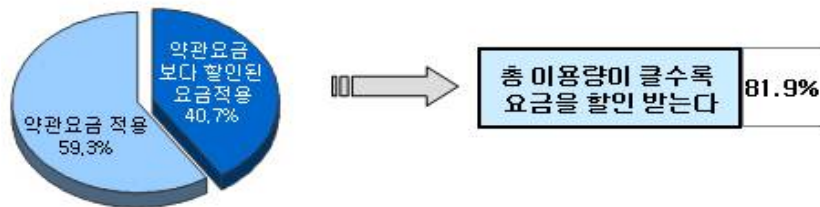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비율은 10.2%로 나타났으며, 이때 통보하는 이유로는 ‘사업자의 해당 서비스 축소 정책으로 인해’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22] 기간통신사업자의 계약해지 통보이유(N =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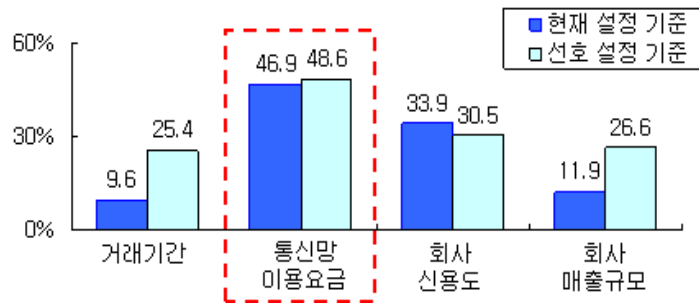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40.7%는 약관요금보다 할인된 요금을 적용

[그림 2-23] 계약 체결시 기간통신사업자의 약관요금 할인 적용 여부(N=177)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용량이 클수록 요금할인을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었다. 또한,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망 이용요금을 담보 요구금액 설정의 주요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별정통신사업자의 응답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2-24) 담보요구금액 설정기준(N=177)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 간 요금할인 경쟁 수준에 대해서는 36.3%가 요금경쟁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주력 서비스별로 식별기호 인터넷 전화(59.1%)에서, 계약 유형별로 패키지 계약(57.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망 제공 시장에서도 결합상품을 통한 요금할인과 같은 양상을 볼 수 있다. 한편 타 사업자 대비 현재 망 이용요금 수준은 33.3%가 높다고 생각하며, 39.0%는 소요원가 대비해서도 높다고 응답하였다.

3. 별정 망 이용계약 관련 개선 건의사항

별정통신사업자 입장에서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저렴한 요금제도 적용, 담보금액 축소, 망 이용 금액 수준 현실화, 접속료 산정 기준을 재조정, 번호자원 070을 별정통신사업자로 할당요망, 요금 할인 과열 방지, 별정통신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고유 사업영역 보장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2-13〉 별정통신사업자 건의사항(N=177)

내 용	사례수	%
• 저렴한 요금제도 적용	7	4.0
• 담보금액 축소	7	4.0
• 망 이용 금액 수준 현실화	6	3.4
• 접속료 산정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4	2.3
• 번호자원 070을 별정통신사업자로 할당했으면	3	1.7
• 요금 할인 과열 방지	3	1.7
• 별정사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고유사업영역 보장	3	1.7
• 지원 필요	2	1.1
• 기간사업자의 우월한 지위 이용	2	1.1
• 기간사업자와 동등한 080 요금 정책	2	1.1
• 통화 불완료에 대한 080 비과금 정책	2	1.1
• 번호이동 관련 업무 요청	2	1.1
• 별정사에 대한 인식 제고	2	1.1
• 지나치게 일방적인 요구 사항	2	1.1
• 기간통신사업자에서 별정통신사업자로 망 제공 계약	1	0.6
• 번호 이동을 별정통신사업자도 가능하도록 했으면	1	0.6
• 규제 심하다	1	0.6

주: 주요 사례만 제시함

제 4 절 국내 협정 신고/인가 제도의 문제점

1. 자의적 제도 운영

사업법 상 90일 이내 협정을 체결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자의 판단 하에 임의로 협정서를 제출하는 실정이다. 또한 실질 대가·조건 등이 기재된 부속합의서는 제출하지 않고 형식적인 협정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시행령 상의 제출서류 요건에 부적합한 측면이 있고,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협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의 기준과 절차도 또한 미흡한 상황이다.

2. 투명성 부족

이용사업자가 제공사업자에 협정체결을 요청할 때 제공사업자의 구체적인 절

차·기준·대가 등 제공지침이 부재하여 이용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즉, 이용사업자에 따라 협정서, 약관과 다른 요금표 및 계약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제공사업자가 절차를 마련하거나 양사 간 합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협정서에 법령을 단순 복기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WTO 다자협정('98. 2월), 한-칠레 FTA('04. 1월) 등 국가간 협정에 따라 국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호접속제공지침(RIO, Reference of Interconnection Offer)의 목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표 2-14〉 국제 협정 상의 상호접속협정 관련 의무⁶⁾

협정명	주요내용	발효여부
WTO Reference Paper	○ 지배적사업자는 상호접속 협정 또는 상호접속 제공지침(RIO)의 공개	'98. 2월 발효
한-칠레 FTA 협정	○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접속 및 사용에 관한 조치 공개(요금 및 사용조건, 기술적 접속관련 세부사항)	'04. 4. 1 발효
한-싱가폴 FTA 협정	○ 지배적사업자가 상호접속 협정 또는 상호접속제공지침(RIO)을 공개하도록 보장 ○ 지배적 사업자가 그 밖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체결한 상호접속 협정 열람 보장	'06. 3. 2 발효
한·EFTA 협정	○ 지배적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 협정 또는 상호접속제공지침(RIO)을 공개하도록 보장	'06. 9. 1 발효
한·미 FTA 협정	○ 지배적사업자는 상호접속 기회를 제공 가. 새로운 상호접속의 협상과 나. 다음 선택권 중 하나 1) 지배적사업자의 표준상호접속제안(요금 및 조건 포함) 2) 발효중인 상호접속협정의 조건 ○ 지배적사업자가 표준상호접속제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제안을 공개 ○ 지배적사업자와 다른 공중통신서비스 공급자간에 발효중인 상호접속협정을 공개	'07. 6. 30 서명
한·인도 CEPA 협정	○ 지배적사업자와 맺은 상호접속협정에 포함된 상업적 비밀정보를 보호를 조건으로, 상호접속을 하려는 공중통신 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상호접속협정을 이용가능토록 보장	'09. 8. 7 서명

6) 자세한 내용은 〈별첨 5〉를 참조하시오.

제 3 장 기간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제 이슈

제 1 절 기간통신망 이용과 불공정행위 규제

본 절에서는 기간통신망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유형과 규제 사례를 살펴보고, 다양한 불공정행위 중에서도 기간통신망 이용관계에서 특히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격차별과 상호보조의 규제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

1. 기간통신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

기간통신망 이용관계에서는 접속거절, 차별, 부당한 가격설정 등과 같이 전기통신 사업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뿐만 아니라 배타적 거래,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 방해, 거래상 지위남용, 담합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EU 및 일본의 접속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통신사업자간 망이용 관계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공정행위 이슈를 식별한다.⁷⁾

가. 접속거절

접속거절은 이용사업자의 정당한 제공요청에 대해 망요소의 제공을 거절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접속 거절뿐만 아니라 높은 대가 설정, 거래 지연, 접속에 필요한 정보의 불충분한 제공 등 실질적으로 접속을 거절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 제1항제1호도 상호접속 등에 관하여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7) EEC(1998), “Notice on the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rules to access agreements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framework, relevant markets and principles”, EEC 98/C265/02. 및 일본 총무성·공정추진위원회(2008), 「전기 통신 사업 분야의 경쟁 촉진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였다.

접속거절이 발생하는 상황은 다시 i)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모든 사업자의 접근을 거절하는 경우, ii) 특정 사업자만 차별적(선별적)으로 접속을 거절하는 경우, iii) 제공 중인 접속 거래를 철회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ies)에 대한 접속 거절은 신규 서비스시장의 형성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지배적 사업자가 당해 설비 이용을 요청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접속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유형의 접속거절이 발생하면 이용사업자가 희망하는 설비의 필수성 여부를 판단하여 강제적인 접속 의무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령 EC는 해당설비에 대한 접속거부가 서비스 제공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여 신규 시장 및 신규 재화의 개발을 제약(82조(b) 위반)하거나 기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지배력 남용으로 규제하고, 당해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에 대한 접근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통신기술의 발전추세를 고려할 때 기존사업자가 제공하지 않는 하류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출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망을 보유한 사업자가 접속을 거부한다면 신규 서비스 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차별(discrimination)적 접속 거절은 설비를 보유하고 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규사업자에게만 접속서비스 제공을 거절하는 등 차별행위를 하여 해당 하류시장(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행위는 특히 망사업자가 접속이용사업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접속거절이 해당 서비스시장의 경쟁을 제약하는 경우에 지배력 남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차별적 접속거절이 접속이용사업자의 신용위험 등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있다.

셋째 접속제공 철회(withdrawal of supply)는 하류시장의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던 접속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로, 이러한 일방적 접속제공의 철회는 실질적으로 접속제공의 거절과 동일한 효과를 유발하므로 지배력 남용행위에 해당된다. 유럽의 경우 EU법원은 Commercial Solvent 판례에서 “원료시장에서 지배력을 갖거나, 자회사(derivatives)를 통해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를 보관하고 있는 지배적 사업

자가 자사의 자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소비자(즉, 경쟁사업자)에게 원료공급을 거절하고, 이로 인해 시장경쟁을 제약하는 것은 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접속제공의 철회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정당화 될 수 있으며, 정당성의 근거는 접속철회가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비례해야 한다.

이상의 세가지 유형 외에도 이하에서 살펴볼 접속지연, 차별적 기술조건 부과, 부당한 요금부과 등은 그 자체로도 지배력 남용행위에 해당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접속거부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가령 일본 공정거래지침은 ‘관계사만 접속 협정을 체결하는 등 특별히 우대하는 경우, 접속 요청에 대해 여유설비 부족, 경제/기술적 증설어려움, 기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접속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접속거절의 예로 들고 있다.

나. 차별

접속의 차별적 제공은 자회사—경쟁사 간 차별, 기간사와 별정/부가사업자 간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로 접속거절과 마찬가지로 국내법령에서도 금지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접속의 차별적 제공은 접속 제공 지연을 포함한 절차상 차별, 기술적 조건 차별, 거래 대가 차별 등을 포함한다.

첫째 접속제공 시기 지연 등을 이용한 절차상 차별은 다른 사업자에 비해 접속제공 시기, 방법을 달리하여 경쟁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이와 관련하여 EC는 지배적 기존사업자가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접속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부당한 접속서비스의 지연을 남용행위로 규제한다. EC는 접속지연을 평가할 때 i) 지배적 기존사업자가 자사의 하류서비스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시간과 조건을 적용하는지, ii) 다른 국가에서 제공되고 있는 설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하는지, iii) 접속지연에 대한 해명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일본의 ‘전기통신 사업분야의 공정 경쟁 지침’도 지배적 사업자가 접속, 공동이용, 설비제공시 부당하게 접속절차를 지연하여 실질적으로 접속을 거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배력 남용행위(거래거절)로 규제한다. 일본 공정거래지침에서도 ‘접속관련 공사를 하는 경우 관계사에 비

해 경쟁사 공사를 지연하거나, 조건 등에서 자기 또는 관계사에 비해 경쟁사업자를 차별하는 경우(공사비용 추정치의 늦장 제시, 차별적으로 엄격한 안전기준 부과 등)를 불공정한 접속지연의 유형으로 판단하고 있다.

둘째 기술적 조건(technical configuration)을 이용한 차별은 라우팅(routing), 번호, 필요이상으로 과도한 망이용 제한 등 객관적인 근거없이 지배력을 보유한 망사업자가 이용사업자의 망접속을 어렵게 하는 망구조를 요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가령 전체 네트워크 구성(hierarchy)에서 접속서비스가 제공되는 교환기의 수준을 제한하거나, 해당 교환기의 기술적 성능을 제한하는 것과 같이 ‘접속서비스의 기술적 성능(degree of sophistication)을 제한’하는 경우, 접속이용사업자에게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도록 접속점(connection point)의 수 및 위치를 정하는 경우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원칙적으로 경쟁원칙에 따라 접속제공사업자가 기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접속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원하는 접속점에서 접속을 허용하도록 하고 부당한 기술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지배력 남용행위로 규제한다. 다만 그러한 망구조가 전반적인 망효율성을 향상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 공정거래지침에서도 ‘법에서 정한 합리적인 이유없이 적용이 어렵거나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기술적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접속 기술조건인 설정 및 변경, 새로운 기술지원이 유연하지 못한 경우’ 등을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꼽고 있다.

셋째 거래대가의 차별은 동일한 유형의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사업자에 따라 다른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행위로 사업자간 망이용 계약관계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차별유형이다. 제공사업자의 가격설정 발생하는 차별행위는 인가/신고한 약관에서 정한 기술기준, 요금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는데, 이하 부당한 가격설정 항목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다. 부당한 요금설정

접속제공사업자의 가격이 비용에 비해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차별적인 경우, 가격압착이 있는 경우 등이 부당한 가격설정에 해당된다.

첫째, 과도한 요금설정(excessive pricing)은 비용에 비해 부당하게 높은 요금을 설정하는 행위이다. 유럽에서는 대체수단이 없는 경우 지배적 망사업자가 접속서비스에 과도하게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EU법원(Court of Justice)은 과도한 요금설정을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에 비해 과도한 요금”으로 정의하고,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원가와 제품판매가를 비교하여 과도한 요금설정 여부를 판단”한다.

둘째, 약탈적 요금설정(predatory pricing)은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총이윤을 확대하기 위해 지배적 사업자가 진입 저지, 경쟁사업자의 퇴출 등을 의도하여 상당기간 동안 요금을 원가이하로 유지하는 행위이다. EC는 일반적으로 지배적 사업자가 평균가변비용(average variable cost) 또는 평균총비용(average total cost) 이하로 요금을 설정하는 경우 지배력 남용 및 반경쟁적 행위로 판단한다. 따라서 지배적 사업자가 총 가변비용보다 낮은 요금을 설정하는 경우에 이에 합당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이러한 요금설정행위를 통해 지배적 사업자가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경쟁사업자가 약화되는 방법뿐이므로 지배력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EC는 AKZO 사례에서 제시된 태법원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의 추가적인 공급에서 발생하는 총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의 요금’, 구체적으로 장기평균증분비용(Long-run Average Incremental Cost: LRIC)을, 기준으로 남용여부를 판단한다.

셋째 가격압착(price squeeze)은 지배적 망사업자가 하류시장의 경쟁사업자에게 부과한 요금을 자사의 하류 서비스에 적용할 때 수익이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C는 지배적 망사업자의 가격압착 행위를 남용행위 규제대상으로 하며, 지배적 망사업자가 하류서비스에서 발생한 비용을 상류의 망접속 서비스로 배분하거나, 내부적으로 자사서비스에 대해서만 이전가격(transfer price)을 적용하는 경우 식별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역무별 회계분리 의무를 부과하고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평가하여 지배력 남용여부를 판단한다.

넷째,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은 지배적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접속서비

스 협정을 체결한 상대에 따라 실제적, 잠재적으로 경쟁을 제약하는 가격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EC는 접속료 및 접속조건의 차별로 인해 동일한 범주에 속한 거래가 경쟁을 제한하는가를 사안별로 평가하여 EC조약 82조를 적용한다. 다만 요금을 포함한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차별행위는 원가나 기술적 요인 등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

다섯째, 접속 제공사업자가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배력을 보유한 서비스의 요금은 높게 설정하여 경쟁이 심한 서비스의 요금을 낮게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호보조(cross-subsidization)도 불공정한 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한시장에서 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시키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저해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불공정한 경쟁수단이 된다. EU의 접근지침(Access Directive)은 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가 부당한 상호보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회계분리, 구조 분리 등의 규제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접속제공 지침도 접속제공사업자의 부당한 가격설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례를 들고 있다.

- 산출 방법이 명확하게 진술되지 않은 요금을 적용하는 경우
- 이용정지, 계약해지, 손해배상, 요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거나 이용사업자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 연체이자 등을 부당하게 고액의 비율로 설정하는 경우
- 특정 고객 또는 자회사 만을 대상으로 한 요금할인
- 경쟁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비용의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요금, 할인 또는 기타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 독점 부문이 경쟁적인 부문을 상호 보조하여 부당한 경쟁을 유발하는 요금을 설정하는 경우
- 두 개 이상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서 비용 등을 구분하지 않고 설정하는 경우

라. 기타 불공정 행위

이상에서 언급한 접속거절, 차별, 부당한 가격설정 외에도 기간통신망 이용관계에

서는 일반 경쟁법의 범주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거래방해, 거래상 지위남용, 끼워팔기 및 구속조건부 거래,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접속 과정에서 획득한 경쟁사 고객 정보를 자사 또는 관계사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신규 진입 저지 또는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거래방해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이용자의 주소 등을 접속 이용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지원서비스 이용자에게 요청하거나, 접속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목적외로 자사 타 서비스 부문 또는 관계사에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규제대상이 된다.

둘째, 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접속을 제공한다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일본 공정경쟁 지침에서는 ‘코로케이션에 필요한 장비의 설치/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불이익을 유발함으로써 신규진입제한 및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셋째 지배적 망보유사업자가 지배력을 보유한 시장의 재화와 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시장의 재화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끼워팔기(tying)도 불공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 EU에서는 특히 수직적으로 통합된 지배적 망보유 사업자가 접속이용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자사의 경쟁시장 재화를 함께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EC 조약 82조의 지배력 남용행위로 규제한다. EU 법원에서는 “결합되어 판매되는 두 재화가 상관행상(commercial usage) 또는 특성상 관련(natural link)된 경우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하는 경우 지배력남용행위가 된다”고 판결하는 등 끼워팔기에 대해 엄격한 원칙을 적용한다.

넷째, 접속제공에서 구속조건부 거래 및 배타조건부 거래도 발생할 수 있다. 배타조건부 거래는 자기 또는 관계사에서만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부당하게 전기통신 역무의 요금 인하 등을 적용 받는 행위이며, 구속조건부 거래는 경쟁사업자와의 접속협정, 도매제공 등의 협정을 체결하고 해당 경쟁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전기 통신 역무의 요금, 내용, 조건(제공시기, 지역, 대상 업체 등) 설정

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이다. 경쟁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격할인을 제공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이용정지, 계약해지, 연체이자 등)에 따라 관계사의 서비스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와 같이 부당하게 구속적인 조건을 제시하거나 배타거래를 조건으로 하는 거래는 거래의사의 자율적인 결정을 제한하는 행위들로 규제된다.

다섯째 상호접속 등의 협정을 이용해 가격을 담합하거나 시장을 분할하는 행위 등도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통신서비스는 총원가에서 접속료가 50% 내외를 차지하고 대부분 지배적인 망사업자와의 접속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접속협정이 불공정한 가격조정(price coordination)의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상호접속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이용자 및 통화량 정보를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망사업자간의 네트워크 경쟁을 제한하거나 사업자간에 시장을 분할(market sharing)하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기 쉽다.

2. 기간통신사업자의 망 이용과 가격차별 규제의 필요성⁸⁾

가. 가격차별의 개념

경제학적 관점에서 가격차별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다. 가격차별을 1차·2차·3차 가격차별로 구분한 Pigou(1920)의 개념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1차 가격차별이란 각 재화마다 그 재화에 대한 최대지불용의가격을 책정하는 것이고, 2차 가격차별이란 재화의 구매량에 따라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것으로 모든 소비자는 동일한 가격표(price schedule)를 접하지만 구매량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을 적용받는 것이다. 3차 가격차별이란 서로 다른 구매자(또는 구매자집단)가 서로 다른 가격을 지불하지만 구매자(또는 구매자집단)의 단위당 구매가격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이다. 구매량에 따른 할인제(quantity discount)는 2차 가격차별의 대표적

8) 통신서비스 시장의 가격차별에 관한 논의는 이상규 외(2005)를 참조하기 바란다.

예이며, 학생할인은 3차 가격차별의 대표적인 예이다.

Robinson(1969)은 가격차별을 “단일한 관리(control) 하에서 생산된 동일한 재화를 서로 다른 구매자에게 서로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Robinson의 정의는 “동일한 재화”에 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나치게 협의적이거나, 반면 모든 가격차이(variation)를 차별로 간주한다는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광의적(Milgrom, 1989)인 측면이 있다. 경쟁가격도 시간과 장소, 품질보증(warranty) 정도, 부가적 서비스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Phlips(1983)는 가격차별을 “두 재화가 서로 다른 순가격(net price)에 서로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순가격이란 상품차별(product differentiation)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따라서 Phlips의 정의에 따르면 상품차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차이를 제외하고도 다른 가격에 판매된다면 이는 가격차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책을 양장본(hardcover)과 보급판(paperback)으로 제본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차이를 초과하도록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하면 가격차별에 해당한다.

Stigler(1987)는 “둘 이상의 유사한 재화가 한계비용에 대한 가격비율이 서로 다르게 판매되는 경우 가격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비례적 정의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한계비용에 대해 동일한 초과비율(예를 들어 10%)을 적용하여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가격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외에 Carlton and Perloff(1999)는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가격책정을 동일하게(nonuniform) 하지 않는 것을 가격차별이라고 하였으며, Hovenkamp(1999)는 기업이 재화를 서로 다른 수익률에 판매할 때 가격차별이라는 정의를 제시하였다.

규제기관으로는 영국의 Ofcom(2005)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소비자의 상황(circumstance) 사이의 ‘타당성 있는’(relevant) 차이들’⁹⁾ 거래조건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9) 소비자의 특성이 해당소비자에 대한 제공비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소비자의 특성이 ‘타당’하다고 정의한다. 이상규(2005), p.17

경쟁을 저해할 경우 부당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Ofcom은 차별에 의해 수요가 진작되거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지 않는다면 이용자 간의 특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차별은 하부시장에서의 경쟁자의 경쟁력을 제한하거나 경쟁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기때문에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간주하였다. 따라서 수요 진작이나 새로운 시장의 창출은 거래조건의 차별에 대한 객관적인 정당화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나. 가격차별의 경제적 효과

(1) 가격차별과 사회후생

후생측면에서 1차 가격차별에 의한 배분은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여 생산, 거래 및 소비에서 발생하는 잉여가 극대화될 수 있으나 그 잉여의 대부분이 독점기업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있다.

2차 가격차별은, 1차 가격차별에 비하면 불완전한 형태의 가격차별이지만 보다 더 현실성이 있으며, 배분의 효율성 등의 효과가 1차 가격차별에 근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차 가격차별은 효율성 측면에서 1차 가격차별보다 열등하지만 그에 어느 정도 근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가격차별이 없는 경우보다는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Kwoka(1985)는 이론적으로 2차 가격차별에 의한 생산/소비량과 경제적 잉여가 단일가격의 경우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가능함을 보였고, Varian(1996)은 단일가격의 경우 생산자가 일부 낮은 수요의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공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그러한 경우 2차 가격차별의 도입은 낮은 수요의 소비자들에 대한 공급을 가능케 함으로써 생산/소비량과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보다 실증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2차 가격차별에 따른 배분의 효율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3차 가격차별이 독점에 의한 배분보다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려면 총생산량이 독점시의 생산량보다 반드시 많아야 한다(Schmalensee(1981), Varian(1985)). 그러나, 이론적인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 수요의 형태에 따라 3차 가격차별에 의한

생산량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어 효율성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

(2) 경쟁에 미치는 효과

가격차별은 이윤압착, 필수설비에 대한 거래거절, 끼워팔기와 결합판매, 담합, 인수합병 등 다양한 경쟁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가격차별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는 크게 1선가격차별과 2선가격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1선 가격차별(primary-line discrimination)은 가격차별의 효과가 행위자와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경쟁능력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미국 셔먼법(Sherman Act)이 금지하는 약탈가격(predatory pricing)과 매우 유사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한편 2선 가격차별(secondary-line discrimination)은 상품의 구매주체가 경쟁하는 사업자들인 상황에서 동일한 상품이 특정 사업 자에게 상대적으로 낮거나 높은 가격에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가격차별이 신규진입을 저해할 수 있다. 1선 또는 2선 가격차별을 이용해 따라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가 기존의 기업이라면, 불리한 입장에서 기존 사업자와 경쟁해야 하는 잠재적 신규사업자는 진입을 기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잠재적 신규사업자가 가격차별에 따른 우위를 이용해 시장에 진출하여 기존 사업자의 고객 및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자 시도하는 상황이라면, 가격차별은 신규진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가격차별을 금지하고 처벌한다면 결과적으로 담합을 공고히 하는 부차적 효과를 발생시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제품이 동질적이면 담합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 하지만 전반적 가격인하는 담합으로부터의 이탈(deviation)을 쉽게 노출시켜 담합에 가담한 타 기업으로부터 보복을 받을 가능성을 높인다. 이때 사용 가능한 전략의 하나는 이용자에 대한 가격차별로, 이는 전반적 가격인하를 초래하지 않고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가격인하를 하기 때문에 노출의 우려가 적으며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다.

다. 통신서비스의 특수성과 가격차별 규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격차별은 경제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용자 간의 상호보조를 초래함으로써 공정성, 형평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반경쟁법이나 산업별 규제를 통해 부당한 또는 과도한 가격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Hovenkamp(1999)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에 가격차별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i) 가격차별로 편익이 이용자로부터 생산자로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는 상황에서 부의 재분배를 정책목표로 삼는 경우, ii) 가격차별로 완전경쟁시장의 균형 산출량보다 적은 양이 생산되어 단일가격의 경우보다 후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iii) 경쟁자들에게 손해를 입혀 경쟁을 저해하는 수단이 되거나 신규진입을 억제하는 배타적 행위로서 사회적 비용 유발하는 경우, iv) 가격차별을 위한 소비자 수요 파악과 유통망의 구축, 재판매 방지 등에 드는 사업자의 추가비용이 크고, 가격인상 및 효율성 저해로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경우. 다만 Hovenkamp는 가격차별 규제가 담합의 수단을 제공하는 등 원활한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가격차별 규제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 자체를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차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당연위법(per se illegal)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며, 상황마다 합리성 원칙(rule of reason)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규제근거는 통신서비스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고, 주요국의 통신법은 부당한 이용자차별(특히, 가격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특히 통신서비스 산업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수직결합된 소수의 사업자가 경쟁하는 시장 구조적 특성 때문에 가격차별이 비교적 용이하므로¹⁰⁾ 가격차별의 경제적 효과 및 후생효과를 고

10) 이상규·김정현 외(2005)는 가격차별이 어느 정도의 시장지배력(가격통제력)이 전제되는데 주요 분야의 통신시장은 기존사업자에 의한 오랜 기간의 독점, 필수 설비의 존재, 망외부성 등에 의한 쏠림현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기 쉬운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차별이 나타날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공익산업적 성격을 반영하여 지역별로 서비스 제공원가가 다르지만 동일한 요금에 부과되는 형태의 가격차별(eg.보편적 서비스제도)

려하여 부당한 차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국내 사업자간 상호접속, 공동사용, 정보제공, 설비제공,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등 다양한 망이용 계약에서도 거래대상, 시기, 수량 등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전기통신 관련법상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유선 및 이동 음성전화 상호접속료, 필수설비를 보유하거나 사업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설비제공,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등은 원가에 기반하여 요금을 산정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가격차별이 발생하기 어렵다. 그러나 부가서비스 관련 상호접속, 인터넷망 간 상호접속, 의무제공 설비 이외의 설비의 제공 등에 관한 대가 등은 사업자 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이용 거래행태를 분석한 제2장에서도 사업자 간 협상에 의한 요금이 거래대상, 시기, 지역, 수량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불공정 경쟁행위와 연계될 수 있는 가격차별의 특성, 가격차별의 빈번한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망이용 계약 협정의 신고 또는 인가 심사 과정에서 가격차별 유무, 차별의 정당성 유무, 차별의 경쟁제한성 등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기간통신사업자의 망 이용과 상호보조 규제의 필요성

가. 상호보조의 개념

상호보조란 ‘하나의 시장에서 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가 요금을 원가보다 높게 인상 또는 유지하고 다른 경쟁시장에서는 원가 이하의 요금을 설정하여 사업자의 전체 원가 중에서 과도하게 높은 비율만큼 지배력을 보유한 시장에서 회수하는 것’으로, 경쟁수준이 다른 두 서비스 간, 동일한 서비스 시장에서 지역 및 이용자 그룹 간에 나타날 수 있다.(ITU 2000)¹¹⁾

이 발생한다고 분석하였다. 이상규·김정현 외(2005), pp.55~57.

11) InfoDev(2000),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s Handbook, p.208

Faulhaber(1975)는 최초로 상호보조의 개념을 경제학적으로 정의하였다. Faulhaber(1975)는 ‘정상이윤(zero profit)을 얻는 다품종생산(multiproduct) 기업이 특정 상품의 매출이 당해 상품 생산의 단독원가(stand alone cost)보다 높아지도록 당해 상품의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¹²⁾를 상호보조로 정의하였다. 기업 전체에서 정상이윤 만을 얻는 기업이 특정 상품의 매출에서 수익을 얻는다면 다른 상품의 매출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상품은 수익을 달성하고 다른 상품은 상품 생산에 수반된 증분원가(incremental cost)를 충당하지 못해 손실을 기록하도록 가격을 설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제 상호보조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독원가(stand-alone cost) 또는 증분원가(incremental cost)를 측정해야 하지만 실제 관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상호보조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Palmer(1989, 1991)는 상호보조를 판단하는 충분조건을 구체화하였다. Palmer는 상호보조를 판단하는 조건을 X재 매출이 X재의 단독원가의 상한(upper bound)보다 커야 한다는 단독원가 조건(sufficient stand-alone cost condition)과 Y재 매출은 Y재의 증분원가 하한(lower bound) 보다 작아야 한다는 증분원가 조건(sufficient incremental cost condition)으로 구분하였다. 아래 박스의 식 (1)은 단독원가 조건, 식 (2)는 증분원가 조건을 보여준다. 이러한 개념 구분에 따라 Faulhaber가 가정한 것과 같이 정상이윤만을 얻는다는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원가 조건’이 성립하면 상호보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있고, 초과이윤(non-zero profit)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독원가 조건’과 ‘증분원가 조건’이 동시에 성립해야 상호보조의 충분조건이 됨을 보였다.

12) Eric Ralph(1992): 이윤이 0인 상황(zero profit)을 전제하는 경우에는 특정 이용자의 추가적인 부담 증가분은 다른 이용자의 부담감소와 일치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 이용자의 추가적인 부담 증가분이 당해 사업자를 보조할 수도 있고, 사업자가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용자를 보조할 수도 있다.

$$P_x X - \left\{ C(X, Y_0) - Y_0 \frac{\partial C(X, Y_0)}{\partial Y} \right\} > 0 \quad (1)$$

$$P_y Y - \left\{ C(X, Y) - \left[C(X, Y_0) - Y_0 \frac{\partial C(X, Y_0)}{\partial Y} \right] \right\} < 0, \quad (2)$$

* Y_0 : 관측가능한 y 재 최저 수준

* $\left\{ C(X, Y_0) - Y_0 \frac{\partial C(X, Y_0)}{\partial Y} \right\}$: X재의 단독원가 상한(upper bound of stand-alone cost of X)

* $\left\{ C(X, Y) - \left[C(X, Y_0) - Y_0 \frac{\partial C(X, Y_0)}{\partial Y} \right] \right\}$: Y재 증분원가 하한(lower bound of incremental cost of Y)

Burton et al.(2004)은 통신산업에서는 공통비 과대계상이 상호보조의 필요조건임을 주장하였다. 통신산업은 공통비용 및 고정비용이 커서 특정 재화에 한정된 한계비용을 공통비용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에 상호보조가 쉽게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해 규제산업의 높은 공통비 및 고정비 규모가 규모 및 범위의 경제 효과를 낳고 이로 인해 자연독점 가능성이 인정되어 요금규제가 정당화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 인과관계는 규제기관이 상호보조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상호보조가 가능하도록 공통비를 오분류(mis-allocation)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독점화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상호보조의 경쟁효과

상호보조는 지배력을 보유하고 상호보조를 하는 시장에서 신규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가 상호보조를 받아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지배적사업자의 경쟁부문과 경쟁하기 어려워 경쟁부문에서 퇴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에 직접 진입하기 어려운 신규사업자는 상호보조가 없는 상황에서는 경쟁부문에서 충분한 성과를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까지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상호보조로 인해 경쟁부문에서도 경쟁하기 어려워 퇴출된다면 상호보조를 제공하는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까지 진입하여 경쟁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진다. 이 때문에 한 시장에서 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가 경쟁이

활발한 다른 시장에 상호보조를 제공하는 것은 경쟁이 활발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배력을 보유한 시장의 경쟁도 제한할 수 있다.

다. 통신서비스의 특수성과 상호보조 규제

수직결합 정도가 크고 오랜 기간 동안 독점시장 구조를 유지해온 통신서비스 시장에서는 상호보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부당한 상호보조는 통신법과 규제제도를 통해 규제되어 왔다. WTO Regulation Reference Paper에서는 주요 사업자가 반경쟁적인 행위에 개입하거나 지속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반경쟁 행위의 유형에 경쟁을 저해하는 상호보조(anti-competitive crosssubsidization)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로 통신법, 규제 가이드라인, 규칙, 허가조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보조를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U의 경우 사전규제 대상 시장에서 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회원국 규제기관이 회계분리, 구조분리 등의 규제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통신서비스시장에서는 시내전화-시외전화 요금간 상호보조와 같이 사회적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개별 서비스 간의 상호보조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시내전화의 보편적 이용을 목적으로 가정용 및 농어촌 지역의 시내전화 요금은 낮게 책정하고, 시내전화 부문의 손실을 시외 및 국제전화, 기업용 전화 부문에서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회수하는 암묵적 상호보조가 인정되었다. 다만 이러한 암묵적 상호보조는 요금 재조정을 거쳐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조성하여 명시적으로 상호보조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이용 계약에서도 상호접속, 공동사용, 정보제공, 설비제공,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등 다양한 상품을 거래하고 있어 망설비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도매서비스 이용사업자 간, 또는 도매서비스 간에 상호보조를 유발하는 요금을 책정할 수 있다. 이미 가격차별 항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법령상 요금을 사업자간에 협상하여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부가서비스 관련 상호접속, 인터넷망 간 상호접속, 의무제공 설비 이외의 설비의 제공 등은 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가 상호보조가 가능한 요금을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망이용 계약 협정의 신고 또는 인가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상호보조의 유무 및 경쟁제한성 등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상호보조를 식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현행 법령상 상호보조를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별로 회계분리 의무가 주어지고 영업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가격차별보다 상호보조의 가능성은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

제 2 절 가격차별 및 상호보조 규제 관련 해외사례

본 절에서는 기간통신망 이용 관계에서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격차별 및 상호보조에 관하여 해외의 규제사례를 통해 가격차별과 상호보조의 규제기준, 측정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1. 가격차별

가. EU¹³⁾

(1) 개요

EC조약 제82조(c)는 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의 가격차별에 의한 2선 경쟁제한행위(secondary line injury)를 대상으로 금지한다. EC조약이 가격차별을 지배력 남용행위의 한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가격차별이 지배력을 전제하는가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¹⁴⁾ 또한 충성도에 따른 할인(loyalty discounts), 이윤압착(margin squeeze), 필수설비 규제 및 거래거절(essential facility & refusal to deal), 끼워

13) 본 절은 O'doghue & Padilla(2006), The law and economics of article 82 EC, Hart Publishing, pp.552~602(ch. 11. Abusive discrimination)을 정리한 것이다. 본문의 판례는 원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14) O'doghue & Padilla(2006) p.557. Levine(2002)은 공통비가 있는 경우 가격차별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배력과 필연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한 반면, Baker(2003)는 필연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사실상 가격차별과 지배력 간의 연관성(connection)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팔기 및 결합판매(tying & bundling), 합병이나 담합 사건에서도 거래 상대방에 따라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가 개입될 수 있으나, 이들 사안에서는 가격차별로 인해 당해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 즉 1선 경쟁제한행위(primary line injury)를 주 규제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¹⁵⁾

실제 유럽에서 EC조약 제82조(c)가 적용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구매자의 국적, 거주지를 이유로 차별한 경우나, 1선 차별 행위 이외에 부수적으로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loyalty rebate와 같이) 하류시장 경쟁왜곡효과가 있는 경우로 적용범위가 한정된다. 이는 판매자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구매자를 차별할 유인이 없으므로, 차별이 발생했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경쟁당국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¹⁶⁾ 이러한 시각은 i) 경제학적으로 가격 차별의 후생효과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고, ii) 현실에서 가격차별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 엄격한 비차별 기준을 정하기 어려우며, iii) 단일한(uniform) 가격 및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며, iv) 엄격한 비차별 기준을 적용한 (미국의 Robinson-Patman 법과 같이) 외국의 법집행에서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다.

(2) 법적 판단기준¹⁷⁾

EC조약 제82조(c)는 동등한 거래에 상이한 조건을 부과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경쟁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금지된다. 따라서 법을 적용하려면 동등한 거래, 상이한

15)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중에서 82조(c)의 차별은 EC 조약 82조에서 제한적인 의미만을 가진다. p.601.

16) 주로 가격차별 문제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 즉 primary-line injury, 문제가 되고 있으며, 2선 가격차별은 주로 1선 가격차별 이외에 부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다루어진다. 참고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primary-line injury 사안인 경우, 차별문제가 개입되었더라도, Robinson-Patman 법이 아니라 셔먼법 2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p.553)

17) 판례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82조(c) 적용기준이 제한적임: 1) 82조(c)사안이 fact-specific 하기 때문, 2) 다른 남용행위가 중복 개입된 경우가 많음(secondary line injury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하지 않는 경향)

조건, 경쟁상 불이익에 관한 정의가 필요하며, 판례를 통해 법 적용의 판단기준이 구체화 되어 왔다.

(가) 동등한 거래(equivalent transaction)

우선 거래의 ‘동등성’ 판단은 재화의 물리적/화학적 구성, 기능 및 작동상 특성, 물리적 특성, 대체가능성(fungibility) 등을 이용가능한 모든 근거들에 기반해 판단해야 하지만, EC조약 제82조(c)는 재화나 서비스의 특성을 비교¹⁸⁾하여 ‘거래(transactions)’의 동등성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거래의 동등성은 비교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유사성(similarity), 비교되는 거래의 상업적 측면의 유사성, 거래시기의 인접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첫째 재화 및 서비스의 유사성은 물리적, 기능적 특성상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모든 측면에서 동일할(identical) 필요는 없고 본질적인 특성이 유사하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¹⁹⁾ 또한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두개의 재화가 대체가능한 경우 동일 거래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²⁰⁾ 예를 들어 British Airways(2005) 사례는 허브(hub) 공항을 경유하

18) 경쟁사업자들과 체결되어 있고, 유사한 재화가 거래되며, 관련 거래상 특성(commercial features)이 심각하게 다르지 않은 경우 당해 거래들은 비교가능한 것으로 본다.

19) United Brand(1978)에서는 지배적 사업자가 공급하는 바나나가 원산지가 같고, 거의 동일한 품질이며, 상품의 다양성도 유사하여 동일 상품으로 인정되었고, Aeroports de Paris 사례에서는 EC가 groundhandling 서비스(화물, 우편 탑재, 기내 청소, 급식 등) 부문에서 공항운영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허가받은 외부사업자(eg. 항공사 자체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본질적인 측면에서 동일하므로 동일서비스라고 인정된 바 있다.

20) Deutch Bahn(1994) 사건에서 독일 항만의 화물하역 요금이 독일 항구에서 선적된 경우 벨기에, 네덜란드 항구에서 선적된 경우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한 사안으로, EC는 (운송거리가 동일한 경우)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의 화물 선적 서비스는 상호 대체가능한 서비스라고 판단하였다. Clearstream(2004) 사건은 주식시장에서 secondary clear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중계기관(CSD, ICSD)에게 primary clear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Clearstream이 두 중계기관을 차별한 것이 문제된 사건으로, Clearstream은 양자가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으나 EC는 독일법상 주식거래의 secondary clearing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비교가능하다고

는 티켓을 구매하여 티켓순서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할인을 제공하되 순서대로 티켓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탑승을 제한한 사건²¹⁾에 대해 부당한 가격차별을 주장한 사건인데, EC는 밀라노-런던-Dar es Salaam 항공권과 런던-Dar es Salaam 항공권은 다른 시장이므로, 즉 대체성이 없으므로, 동일 거래에 가격차별을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비교되는 거래의 상업적 측면의 유사성과 관련하여 EC조약 제82(c)는 비교되는 재화의 유사한 등급 및 품질('like grade and quality')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거래'가 '동등'한가만을 문제 삼는다. 이는 EC의 경쟁법이 미국 Robinson-Patman 법과 다른점이다.

거래의 상업적 동등성 개념에 관한 명확한 해석이 내려지지는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차별적 거래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첫째 제품측면에서 동등하지만, 상업적 거래측면에서 동등하지 않은 의도적인 제품차별화인 경우다. 예를 들어, 동일 상품이라도 광고비 등을 지불하여 브랜드를 구축하고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상이한 제품으로 본다. 둘째 첫 번째 거래가 이후의 거래 계약에서 거래상 편익 제공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들 거래는 동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에서 동일 지역에서 이미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된 후, 다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 이들 계약은 동등한 거래가 아니다.

셋째 거래 시기상 인접성(proximity in time)은 최초 거래와 이후 거래 간에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 시기상 동등성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i) 지배적 사업자가 표준화된 재화를 일정기간 동일 요금에 판매하는 경우 차별 아님, ii) 일정한 가격수준을 유지하다가 가격을 인하하고 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경우 차별 아님, iii) 공급자가 부담하는 요금이 인상되어 자신이 부과하는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는 합법, iv) 장기계약

판단한 바 있다.

21) 밀라노-런던-Dar es Salaam 티켓을 구매하고, 밀라노-런던 티켓을 이용하지 않은 채 런던-Dar es Salaam 티켓을 이용하는 경우 탑승을 거부한 것이다.

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기간 중 요금이 인하된 경우 인하된 요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인정된다.

(나) 상이한 조건(dissimilar condition)

상이한 조건은 개념상 동등한 거래(equivalent transaction)에 ‘상이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거래조건이 상이한가는 부과되는 거래조건을 비교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통상 수익률(rate of return)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유럽법원의 판례에서는 상이한 조건의 개념이 상이한 거래에 ‘동일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까지 확대되었다. 차별의 요체가 동일한 거래에서 획득하는 수익률이 다른가에 있으므로 동일 비용에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용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비용차이가 있는데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EC에서 가격차별을 판단할 때는 ‘차별 사실에 대한 지배적 사업자의 인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지배적 사업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차별행위까지 처벌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가령 지리적으로 격리된 두 구매자가 상이한 거래조건을 부여 받고 있었으나, 한 구매자가 다른 구매자 근방에서 판매활동을 개시하여 차별이 성립되었지만 판매자인 지배적 사업자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격차별로 처벌될 수 있다. EC와 달리 캐나다 경쟁법은 지배적 사업자의 차별사실 인지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다) 경쟁상 불이익(competitive disadvantage)

가격차별의 세 번째 요건은 경쟁상 불이익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전까지 적용된 사례에서는 경쟁상 불이익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차별 정도, 차별발생만으로 경쟁상 불이익이 추정되는 경우 등에 관하여 상반된 심판례가 존재해 왔다. 통상 경쟁상 불이익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다음 세 가지 접근법이 공존하고 있다. i) 실제 불이익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개연성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입장, ii) 모든 환경요인을 고려할 때 경쟁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적 추론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 iii) 단순 차별만으로 경쟁상 불이익을 추정 가능하다는 입장.

다수설인 첫 번째 입장은 경우 실제 불이익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개연성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경쟁상 불이익을 인정한다. 즉, 차별적 조건이 적용된 사실, 이로 인해 다른 경쟁사에 비해 경쟁상 불이익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²²⁾ 특히 경쟁상 불이익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쟁사와 반드시 동일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British Airway v. Virgin(2003)* 판례에서 i) 지배적 사업자의 다른 구매자와 동일시장에서 경쟁관계 형성, ii) 다른 구매자에 비해 우호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경쟁을 왜곡할 개연성의 입증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정량적 손실(damage) 또는 실제적, 수량적으로 경쟁상 지위가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것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둘째 모든 환경요인을 고려할 때 경쟁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면 경쟁상 불이익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은 남용행위가 발생한 시장상황의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일부 판례에서 인용되었다. 예를 들어 *United Brands* 사건에서 Chiquita 바나나를 국가별로 30~50% 가격차이를 두고 공급하고 재판매 금지를 거래조건으로 하여 가격을 차별하였는데, 동 재판매 금지조항이 없었다면 일부 구매자들이 재판매를 통해 가격차별을 해소할 수 있었으므로 일부 구매자가 경쟁상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보아 가격차별을 인정하였다.

셋째 단순 차별만으로 경쟁상 불이익을 추정할 수 있다는 입장은 차별적 취급사실만으로 경쟁상 불이익이 충분히 입증된다는 입장이다. *Corsica Ferries I (1994)*, *Irish Sugar(1999)*,²³⁾ *British Airway/Virgin(2003)* 등의 사례에서 이러한 입장이 적용된 바 있다.

22) R Joliet(1970) “거래상 차별 다른 경쟁사에 비해 경쟁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만 불법”, J Temple Lang(2004) “상당한(significant) 경쟁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82조(c) 위반”

23) 영국 또는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설탕 수입이 가능한 북아일랜드 지역의 소비자에게 선별적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으로, 유럽법원은 동일한 수량의 설탕 구매에 다른 가격을 부과하므로 가격차별이라고 판결하였으나, 리베이트 규모와 경쟁상 불이익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다.

O'doghue & Padilla(2006)는 (차별의 실제, 개연적, 논리적 효과에 대한 분석없이) 차별행위 만으로 경쟁상 불이익을 추론할 근거가 없으므로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당성 항변 절차를 두는 방안으로 이러한 오류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이 있는 지배적 사업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차별적 취급과 경쟁상 불이익 간에 논리적인 연관성(connection)이 필요한데, 동일한 거래 단계에 있고, 비용상 상당한 차이를 유발하거나 여타의 기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차별행위가 있어야 의미있는 경쟁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의미있는 경쟁상 불이익의 입증은 사안별로(case by case) 차이를 인정하되, 최소한 실제 손상(harm)이 발생하거나 또는 관련 상황을 고려할 때 논리적으로 위해가능성이 추론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정당성 항변(objective justification)

EC조약 제82(c)는 경쟁사업자의 손상과 (82조가 보호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손상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차별의 후생효과가 모호하거나 경쟁촉진적인 측면이 있으며, 다른 국가의 법 집행 경험상 엄격한 법집행이 오히려 반경쟁적 효과 초래한 바 있어 EC조약 82조(c) 적용에 있어 정당성 항변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그간의 판례에서 EC나 EU 법원(ECJ)이 정당성 항변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일부 사례에서 정당성 인정 사유를 식별하고 있다. 가격차별이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만큼 친경쟁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다양하며, 다음 사항들이 대표적이다.

(가) 비용감소 및 수량 할인(cost reduction and volume discounts)

운송비, 세금 등 재화 및 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비용 차이에 기반한 요금 차이는 인정되고, 예측 가능한 비용절감, 규모의 경제 효과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경우 차별행위로 규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EC의 Brussels National Airports 심결(1995)에서 공항 착륙비용을 차별한데 대해 규모의 효과로 인해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인정하였고, British Airways/Virgin(2000), Clearstream(2004) 등의 심결에서 EC는 비용절감 등 효율성 개선에 기초한 가격차별은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다량 판매시 비용절감효과, 다량 구매고객이 더 나은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현실을 반영한 다량구매할인(volume discounts)도 인정된다. 가령 유럽법원의 Hoffman-La Roche (1979), Irish Sugar(1999) 판결에서 다량구매 할인을 제공했다면 용인될 수 있으나, 전자는 배타적인 거래조건 부과(fidelity rebate), 후자는 지역적 가격차별을 적용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EC가 구매량 증가가 비용절감 간에 직접적으로 식별가능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다량구매 할인을 인정하는가는 불분명하다. 실제 법원 판결에서도 다량구매 할인과 비용절감 간의 연관성 입증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O'Donoghue & Padilla (2006)은 다량구매 할인이 일반적이고, 친경쟁적인 효과가 크며, 판매자 입장에서 다량구매 고객은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 중요하므로 비용절감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나) 제공되는 서비스에 상응하는 가격인하(price reductions in return for services rendered)

구매자가 판매와 관련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가격차별이 정당화된 다. 유럽법원 Irish Sugar(1999) 판결은 피고가 제공한 리베이트가 구매자가 지불한 운송비나 마케팅활동에 근거하거나, 판매촉진활동, 저장활동, 기타 서비스 제공 등에 연관된 경우라면 인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외에 Michelin I (1981), Coca-Cola Export Corp. v. Filiale Italiana(2005) 등에서도 EC는 구매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상응하는 가격인하를 인정한 바 있다.

다만 구매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상응하여 가격할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첫째 제공되는 서비스와 가격할인 간의 연관성을 식별 가능하도록 별도 계약으로 체결하고, 둘째 가능한 모든 구매자에게 적용가능한 객관적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다) 신제품 및 신규 시장(new products and new markets)

EC조약 제82조(c)는 신제품 또는 신규 진입을 위한 가격인하를 인정한다. 이는 이러한 가격차별이 경쟁자 배제, 구매자 차별 등의 목적이 아니라 단기간에 수요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배적 사업자가 동일 시장 내의 신규 고객에게 가격인하를 제공하는 것은 친경쟁적인 측면이 있으나, 동일시장내 경

쟁사업자에게 경쟁상 불이익 야기하므로 위법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별도의 신규 상품 및 지리적 시장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구매자 간 경쟁왜곡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보아 인정하고 있다

(라) 고정비용 회수(fixed cost recovery)

고정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지불의도에 따라 가격을 차별하는 것도 인정된다. 높은 고정비용과 낮은 한계비용을 가진 판매자인 경우, 통상 비용회수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가격구조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마) 사용강도, 이용특성에 따른 요금부과(charges according to intensity of use or value in use)

소비자 잉여를 더 많이 끌어내기 위해 사용강도, 이용특성²⁴⁾을 고려하여 비선형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EC 차원에서 동 유형의 82조 관련 사례는 없었으며, 독일의 경마협회가 경마 생중계권료를 책정하면서 2부요금제(two-part royalty scheme)를 적용한데 대해 독일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다.

(바) 경쟁항변 및 비차별(meeting competition and non-discrimination)

일반적으로 EC조약 제82조(b)에 적용되는 수준의 경쟁항변을 제82조(c)에 적용할 수 있다. 지배적 사업자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쟁사업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의 가격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EC조약 제82조 (b) 약탈적 가격설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쟁항변을 인정한다.

-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이 평균가변비용(AVC) 이상~평균총비용(ATC)이하인 경우 평균가변비용 이하인 경우 보다 경쟁항변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짐
-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이 평균 총비용 이상인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단, 다른 남용행위와 함께 선별적인 배제적 가격설정(exclusionary pricing)이 개입된 경우 제외)

24) 사전 예약없이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비싼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가격차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경쟁항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가격경쟁이 감소하는 반경쟁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82조(b)와 제82조(c) 간의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구매자를 상대로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와 장기계약 체결협상을 벌일 때,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undercut)하는 것은 (다른 모든 구매자에게도 동일한 가격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 이를 예상한 경쟁사는 적극적으로 가격경쟁을 하여 지배적 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할 유인이 없으므로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이 price umbrella가 될 수 있다.

한편 경쟁사가 2개 이상이고 각각 요금이 다른 상황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사 요금 중 낮은 요금 수준으로 요금을 정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적법/위법이 달라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구매자가 낮은 요금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택하려고 했다면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은 경쟁항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높은 요금을 선택하려 했다면 가격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EC는 점차 소비자 후생의 관점에서 EC조약 제82조(c)를 적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하기 위해 경쟁사 요금을 인하하도록 허용하면 단기적으로 (다른 구매자에게) 경쟁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후의 다른 거래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전체 요금이 인하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한 구매자에게 할인을 적용하면 모든 구매자에게도 동일한 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면 지배적 사업자가 최초 할인을 제공할 유인이 감소할 수 있다.

(사) 기타

이외에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할인이 구매자의 경쟁대항, 신규시장 진입, 기타 친경쟁적인 이유로 필요함을 입증하는 경우, 다른 구매자가 지배적 사업자의 인프라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지배적 사업자에게 전혀 편익을 제공하지 못함을 입증하는 경우, 거래의 상품 내역(specification)이 독특(unique)하거나 구매자가 판매자 상표로 재판매하려는 경우 등에는 가격차별이 허용된다.

나. 미국의 Robinson-Patman법²⁵⁾

(1) 개요

미국 반독점법에서 가격차별을 규제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Robinson-Patman법은, 유사한 품질과 등급의 제품에 대해, 소비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가격차별이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독점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1936년 클레이튼법 제2조를 수정하여 이 법이 제정될 당시 의회는 법제정의 주된 목적을 가격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후생손실 방지보다도 가격경쟁력을 지닌 대규모 체인점들에 의해 시장점유율을 잃어가고 있던 소매업자들을 보호하는 것에 두었다. Robinson-Patman 법은 엄밀한 의미에서 가격차별이 아닌 (시장지배력을 지닌 대기업의) 저가정책을 금지함으로써 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소비자후생의 극대화를 증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법 제정목적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소비자 가격 상승의 결과가 초래된다. Robinson-Patman법은 i) 이 법이 소매상들이 연합하여 저가에 도매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금지함으로써 대형상점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가로막는 등 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자체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과 ii)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에 대해 적대적임에도 반독점법에 포함되어 있어 여타의 반독점법들과 충돌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판매자가 시장지배력을 지닐 경우에만 지속적인 가격차별이 가능하지만, Robinson-Patman법은 피고가 되는 기업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지 않고, ‘비용항변’이 매우 제한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법이 과잉 적용될 소지가 크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²⁶⁾

또한 Robinson-Patman법은 ‘경쟁’을 보호하기보다는 ‘경쟁자’를 보호하는 방향으

25) Herbert Hovenkamp(1999). pp.565~581(Ch. 14. Price discrimination and the Robinson-Patman Act)를 참고하였다.

26) Robinson-Patman법에 의해 처벌받은 기업들은 대부분 독점기업이 아니었으며, 과점시장에서 “cheating”을 통해 가격을 인하한 기업인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Robinson-Patman Act는 사실상 과점을 효과적으로 유지 및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판매성과가 높은 딜러에게 제조업자가 도매 가격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경쟁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보호의 대상이 아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쟁자(딜러)’로 보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Robinson-Patman법의 친경쟁 효과는 매우 드물었고 대부분 반경쟁적 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1977년 이후 DoJ(Department of Justice)는 이 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FTC 역시 법 적용을 대폭 줄여왔다.

(2) 법의 주요 내용

(가) Robinson-Patman법에서 가격 “차별”의 의미

Robinson-Patman법은 각 거래의 ‘한계비용 대비 가격’ 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 가격차별로 규정한다.²⁷⁾ 단발성(sporadic)의 가격차별은 완전경쟁시장 하에서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며, 시장평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인(persistent) 가격차별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판매자가 체계적으로 소비자들을 분류하여 서로 다른 한계비용 대비 가격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금지한다. 그러나 실제 가격차별의 판단은 한계비용 대비 가격의 비율이 아닌 절대적인 가격 차이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가격차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한 비용항변을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매우 좁게 해석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항변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없다.

(3) 판단기준

셔먼법(Sherman Act)이 통상(trade)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과 달리, Robinson-Patman 법은 주간(州間) 통상(interstate commerce) 거래에서 가격차별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Robinson-Patman법은 상품의 판매(sales)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실제 가격차별이 서비스(service) 시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임대차 거래(lease)에서도 가격차별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7) 즉, $\frac{MC_i}{MC_j} = \frac{P_i}{P_j}$ 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가격차별이 성립한다.

Robinson-Patman법의 가격차별은 “서로 다른 상품을 서로 다른 구매자에게 다른 가격(two different sales to two different purchasers at two different prices)에 제공”할 때 적용된다. 서로 다른 구매자와 관련하여 모회사와 자회사를 서로 다른 두 구매자로 볼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기업과 모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y)가 각각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했다라도 두 회사를 사실상 하나의 판매자로 보고 Robinson-Patman 법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지분을 100% 확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Robinson-Patman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유사한 등급과 품질(like grade and quality)’의 상품이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되어야 한다. EC에서 브랜드 구축 노력을 인정하는 것과 달리 미국 법원은 상품의 포장이 다른지의 여부와 광고를 했는지의 여부가 화학적으로 동일한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²⁸⁾

Robinson-Patman법 제2조(a)항은 본 법이 직접적인 가격차별 외에 “간접적인” 가격차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간접적 가격차별이란 판매자가 특정 구매자에게 더 나은 조건의 신용조건, 인도, 보관, 광고, 중개수수료 허용치, 반품, 그 외 구매자의 우월적인 시장지위를 가능케 하는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모든 구매자가 특혜를 향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functionally available), 일부 구매자들이 선택적으로 이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 법원은 판매자의 입장이 아닌 구매자의 입장에서 간접적 차별을 판단한다.

Robinson-Patman법 제2조(c)는 ‘거래나 거래과정에 관여하는 자가 물품, 제조품 혹은 상품의 판매나 구매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services)을 제외하고, 수수료, 중개료 혹은 기타 보상금에 상당하는 유가물, 혹은 그것에 갈음하는 수당이나 가격할

28) 화학적으로 동일한 상품을 제조한 기업이, 광고를 하지 않는 저가의 “house brand” 외에 광고를 통해 고가의 “name brand”로 판매하는 전략을 취했다면 “name brand”의 경우 상당한 광고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두 판매방식에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취급된다.

인을 지급, 제공하거나 수납(accept), 수령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보상이나 대가가 그 생산품 또는 상품의 분배에 있어 경쟁하는 다른 모든 고객에게 비례적으로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동조 (d)항은 구입한 상품을 재판매하는 구매자에게 구입한 상품의 제조공정, 처리, 재판매 등을 위한 시설이나 용역(services)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되, 경쟁하는 다른 모든 구매자에게 비례적으로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구매자가 판매자가 수행하는 유통기능을 자신의 이해를 위해 수행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판매자가 (다른 소매업자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지만) 이들에게만 가격 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가격 할인이 유통기능을 수행할 의사가 있는 다른 모든 구매자에게 비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Texaco, Inc. v. Hasbrouck* 판결에서 소매 가솔린 딜러들이 Texaco가 가솔린을 자신들보다 도매업자들에게 더 싼 값에 판매했다고 제소한 것에 대해, Texaco는 가격 차이가 도매업자들이 주유소로 가솔린을 유통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며 (비록 소매업자들에게는 아니지만) 다른 도매업자들도 이러한 가격 할인을 누릴 수 있었기(availability requirement)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도매가가 유통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더 싸게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매상들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는 소매상들보다 똑같은 가솔린을 더 싸게 판매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은 가격 할인 폭이 유통비용 이상으로 클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Robinson-Patman법 제2조(f)는 구매자가 동 법에서 금지되는 가격차별을 의식적으로 유인하거나 수납하는 것은 불법으로 정하여 구매자들에 의한 위반(Violations by Buyers)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오랫동안 규모가 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소규모 구매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부당한 가격할인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²⁹⁾ 그러나 *Great Atlantic & Pacific Tea Co. v. FTC(A&P판례)* 사

29) 이 경우 구매자가 범위반자이고 판매자는 대체로 무고한 희생자로 본다. Robinson-Patman

례에서 대법원은 판매자가 제2조(f)를 위반하지 않는 한 구매자가 Section 2(f)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³⁰⁾

(4) 정당성 항변(Affirmative Defenses)

Robinson-Patman법은 비용항변과 경쟁항변의 두 가지 정당성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가격이나 용역, 제공된 시설 상의 차별이 있었음이 증명된 경우, 그렇게 차별로 증명된 사안(prima-facie case)에 대하여 정당화 사유를 입증함으로써 반증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우선 피고는 적극적으로 낮은 가격이 낮은 비용으로 인한 것이라는 비용항변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비용항변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실제로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

경쟁항변은 판매자가 구매자들에 대한 낮은 가격이나 용역/시설의 제공이 경쟁자의 낮은 가격이나 용역/시설의 제공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의로 행하여 졌음을 입증함으로써, 차별로 증명된 사안(prima-facie case)을 반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선의에 의한 경쟁항변과 관련하여 FTC v. A.E. Staley Mfg. Co. 판례에서 대법원은 경쟁항변이 경쟁자의 (자사보다) 낮은 가격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고 있었던 자에 의해서만 제기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고,³¹⁾ United States v. United States Gypsum Co. Gypsum 사례³²⁾에서 피고가 Robinson-Patman법의 비용항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경쟁자

법은 대형 체인점들의 구매행위에서 나타나는 가격차별 압력에 대해 주요 관심을 두고 있었다.

30) 만약 판매자가 선의로 “경쟁항변(meeting competition)”인 상황으로 믿고 있었다면, 판매자는 정당성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판매자가 경쟁항변인 상황으로 잘못 믿었다 하더라도 구매자를 제2조(f)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31) Staley는 자신들의 저가 판매 정책이 판매원과 중개인, 구매자들로부터 얻은 (경쟁자들의 저가 판매에 대한) 구두 정보에 입각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경쟁항변을 인정하기에 해당 정보가 충분치 못하며 경쟁사의 저가 판매에 대한 대응으로 저가 정책을 펼쳤다고 볼만한 합당하고 분명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32) 피고인은 재판매가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이유로 피소된 데에 대해, 시장에 떠

가 특정 고객에게 저가 입찰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법원은 Robinson-Patman법이 여타 반독점법들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므로, 실제 지식(actual knowledge)을 갖고 있었는지가 아닌 ‘선의(good faith)’가 경쟁항변의 요건이 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³³⁾ Falls City Industries, Inc v. Vanco Beverage, Inc. 판례에서 대법원은 판매자가 고객에 따라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것에 대해 의회가 경쟁항변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할만한 이유가 없다면 경쟁 환경이 다른 지역에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에 대해 경쟁항변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판매자가 다른 경쟁 환경에서 다른 전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쟁항변의 목적에 부합하며 경제적으로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Hovenkamp(1999)는 비용항변을 폭넓게 적용함으로써 Robinson-Patman법의 실효성을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 캐나다

(1) 개요

캐나다 경쟁법 제50조(1)(a)의 가격차별 규정은 (품질 또는 수량 측면에서) 동일한 거래에서 다른 구매자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가격상 특혜 제공 행위에 적용된다. 이러한 가격상 특혜(price concession)에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rebate), 가격상 이득 또는 기타 편익³⁴⁾ 등이 포함된다. 가격차별 조항 위반시 형법이 적용되나, 지침 제정 이전에 단 3건의 유죄판결이 있었고 모두 벌금형이 적용되어 형벌의 의미는 약하다.

도는 경쟁자들의 저가 입찰에 대한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경쟁자들에게 사실을 물어보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 33) 이 사례에 따르면, 판매자는 고객이 “나는 당신의 경쟁자로부터 더 값싸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경우 그 고객의 말을 특별히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다. 만약 이후에 그 고객의 말이 거짓으로 판명난다고 해도 판매자가 선의에 의해 행동했다면 위법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34) 가격과 관련된 이득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장비의 사용, 기술지원 등의 이득 제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법규정

section 50(1)(a)

(1) Every one engages in a business who...

(a) is a party or privy to, or assist in, any sale that discriminate to his knowledge, directly or indirectly, against competitors of a purchaser of articles from him in that any discount, rebate, allowance, price concession or other advantage is granted to the purchaser over and above any discount, rebate, allowance, price concession or other advantage that, at the time the articles are sold to the purchaser, is available to the competitors in respect of a sale of articles of like quality and quantity,
 ...is guilty of an indictable offence and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wo years.

(2) It is not an offence under paragraph(1)(a) to be a party or privy to, or assist in, any sale mentioned therein unless the discount, rebate, allowance, price concession or other advantage was granted as part of a practice of discriminating as described in that paragraph.

(3) Paragraph(1)(a) shall not be construed to prohibit a cooperative association, credit union, caisse populaire or cooperative credit society from returning to its members, supplies or customers the whole or any part of the net surplus made in its operation in proportion to the acquisition or supply of articles from or to its members, supplies or customers

(2) 가격차별 규제의 대상 및 판단 기준

(가) 가격차별 규제의 대상

캐나다의 가격차별 규제는 미국의 Robinson-Patman법과 같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sale)에 적용되며, 임차(leasing), 라이선싱(licencing), 위탁(consignment) 등에 적용되지 않고, 서비스 판매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경쟁법은 상품(articles+service)에 적용되나, (경쟁법의 다른 조항과 달리) 제50조(1)(a)는 물품(article)³⁵⁾에만 적용된다. 구매된 물품이 재판매, 다른 생산물의 투입재, 또는 단순 소비재로 이용되는 가

35) 경쟁법 제2조에서 물품의 범위에 일부 서비스(현금, 에너지, 입장권 등)가 포함되어 있음

는 법적용시 중요하지 않고, 서비스와 물품이 동시에 거래되는 경우, 예를 들어 유 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되는 부품, 우편서비스 제공시 이용하는 우표 등의 물품이 관련 서비스 판매를 위해 부수적으로(incidentally) 이용된 경우에도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쟁법 제50조(1)(a) 관련 사안(complaints)에는 경쟁효과분석(competitive-effect tests)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법문에서 ‘부당하게(unduly)’, ‘심각하게(substantially)’ 또는 ‘상당히(significantly)’ 등의 판단기준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형법상 ‘합리적인 의심(a reasonable doubt)’ 요건에 위배되는가를 판단하게 된다.

캐나다는 가격차별 기준의 여러 조항 중 하나만 충족되지 않아도 위법한 가격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법적용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핵심조항은 문제가 되는 거래가 성립될 당시 다른 구매자들에게도 해당 가격이 이용가능 했는가(available)이다.

가격차별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캐나다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 또는 기업(everyone engaged in business in Canada)을 포함한다. 특히 법문에서는 대리인 등의 행위(‘a party or privy to, or assist in, any sale’)에도 동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격차별 규정은 통상 구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구매자의 구매력이 매우 커서 판매자로 하여금 불법적인 가격차별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동 행위가 가격차별 유도(counselling of a price discrimination)을 구성하는지 검토될 수 있고, 경쟁법의 다른 규정을 이용해서도 구매자의 시장력으로 인한 경쟁저해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용가능한 모든 판매’(‘any sale’, ‘is available’)는 전체 거래의 일부에 해당하는 거래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동 조 위반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매자가 경쟁구매자에 비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실제 구매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가격차별 적용할 수 있다. 제50조(1)(a)는 다른 경쟁법 조항과 마찬가지로 관계사(affiliates) 예외 조항이 없으므로, 관계사간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다.

(나) 차별의 판단 기준

캐나다에서는 i) 동일 시기에 발생하고, ii) 유사한 품질 및 수량이 거래된 판매에서 iii) 다른 거래조건이 부과된 경우에 가격차별이 인정된다.

우선 가격 차별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Relevant “Time”)과 관련하여 “상품이 판매된 시점”에 가격 특혜 상의 차별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단일 거래(single-transaction)에서는 거래 시기의 이슈가 복잡하지 않으나, 다중 계약이 존재하여 계약 연장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등의 경우(예컨대, 공식에 의해 계약 적용 조건이 변화)에는 복잡해 질 수 있다.³⁶⁾ 거래 시점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해당 상품의 주문, 수락, 인도, 지불 등의 과정이 완결된 시점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거래 당사자들 간에 거래와 관련된 가격을 확정된 시점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 한 가지 룰을 공식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격차별은 유사한 품질과 수량(Like Quality and Quantity)이 거래된 경우에 적용된다. 여기서 유사함(like)의 의미는 ‘절대적으로 동일한 (identical)’의 의미가 아닌, ‘유사한(similar)’ 혹은 ‘다르지 않은(not dissimilar)’의 상대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유사한 품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상품의 물리적/화학적 구성과 기능적 특성, 그리고 외관 등과 관련된다. 또한 ‘대체가능성(fungibility)’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비교대상이 되는 두 상품의 소매가가 동일한 시점에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판별될 수 있다. ‘유사한 수량’과 관련하여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법칙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한 판매자가 특정한 구매자들에게는 판매자가 보유한 모든 혹은 대부분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 한편,

36) 예를 들어, 1년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2년째에는 최소 볼륨을 1년 짜 가격에 제공하는 옵션을 체결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당 계약이 2년째 되는 해에 판매자가 일반적으로 가격을 인상한다면, 위 계약에 대해서는 애초의 계약에 따라 1년째 가격을 적용해야 하므로 2년차에 신규를 구매하려는 이용사업자는 인상된 가격을 차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2년 차 가격(경쟁사업자에 의해 지불된)을 비교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시점이 해당 판매 계약이 시작된 1년째인지 아니면 2년차 계약 갱신 시점인지가 불분명하다.

또 다른 구매자들에게는 하나 혹은 일부의 상품만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하나 혹은 일부의 상품만을 구매한 구매자가 판매자의 다른 모든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선택에 의해 하나 혹은 일부만을 구매한 경우라면, 전체 상품을 구매한 구매자들이 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다.

앞에서 정한 일정 시점의 유사 또는 동일 거래에 거래조건상 할인, 리베이트, 수당, 요금상 혜택 또는 기타 편익 등에서 다른 경쟁자 또는 구매자가 이용가능한(available) 것보다 높은(over and above) 혜택이나 이득(concession or advantage)을 제공한 경우 ‘다른 거래조건’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가격차별 수단은 직접적인 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가격차별까지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판매자와 두 구매자(X와 Y) 사이에서 독립적인 한 기업이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X와 Y에게 판매할 때 가격 특혜상의 차별을 가했다더라도 판매자는 간접적으로 가격차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EU와 달리 캐나다는 가격차별에 대해 판매자가 인지(Knowledge)하였는가가 중용하다. 가격차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판매 시점에 판매자가 가격 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판매자가 ‘인지’하였는지의 여부는 직접적인 증거에 의해 판단하거나 정황상 추론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 계획적 무지(willful blindness), 즉 판매자가 고의로 정보를 무시한 상황이라도 법 위반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³⁷⁾ 따라서 판매자는 구매자의 정보에 대해 업데이트하고, 가격차별의 정당성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할 의무가 있다.

37) 계획적 무지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해당 사실을 알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임의로 구매자들을 일정한 그룹으로 분류하여 (실제 구매량을 바탕으로 한 조정 없이) 각 그룹별로 예상 구매량에 기초하여 리베이트를 준 경우에 판매자는 가격차별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주장이 계획적 무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경우 판매자가 이것이 이러한 행위가 경쟁법 제50(1)(a)의 가격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 수 있었다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

(다) 거래조건의 차별 유형

거래조건의 차별은 ‘할인, 리베이트, 수당, 요금상 특혜’ 등 구매자가 지불하는 실제가격(effective price)을 명목가격 이하로 낮추는 금전적인 협정을 의미한다. 기타 편익(other advantage)은 이상에서 언급한 행위 이외에 물품의 단위당 순판매 가격을 낮추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신용거래(credit arrangement) 제공은 (지불조건에 따라) 실질적으로 할인의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편익에 포함되어 금지되나, 판매자가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구매자에게 일률적으로 할인 또는 다른 신용거래상 이득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장비사용, 기술지원, 경기 또는 공연 티켓 제공 등은 기타 편익제공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격을 높게(‘over and above’) 설정한다는 것은 다른 구매자에 비해 더 나은(superior to), 더 많은(greater than) 또는 더 가치 있는(more valuable than)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가격차별 조항 위반은 (동일 시점의 유사 거래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구매자가 이용가능한(available)한 것 보다 특정 구매자에게 가격상의 혜택 또는 기타 편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즉, 구매자들의 최종 지불 가격이 동일한가의 여부 보다 구매자들이 동일한 거래 조건을 이용가능 했는가가 위법성 판단의 핵심 이슈가 된다. 거래조건의 이용가능성은 구매자가, 실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접근(accessible) 또는 획득(obtainable) 가능한 가격상의 혜택인 경우에는 ‘이용가능한(available)’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가격차별 금지조항(경쟁법50조(1)(a))에 해당되지 않는다.

캐나다의 가격차별 규정은 거래조건의 차별과 관련하여 두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가격상의 혜택은 일방적(unilaterally)으로 또는 협상과정에서 제공될 수 있는데,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상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일 거래조건의 공개(disclosure) 의무가 부과된다. 판매자는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가격상의 혜택 공개하고 유사 거래에도 적용하는 경우 경쟁법 제50조(1)(a)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구매자가 유사한 거래에서 이전의 구매자와 유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데에는 응해야할 의무가 있다. 즉,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우호적인 조건을 다른 구매자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상 혜택을 취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협

상과정에서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가격상의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공개 할 의무가 없다.

둘째 판매 목표 달성, 판매자를 위한 특정 서비스 제공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건부 할인(conditional discounts)을 제공할 수 있고, 유사거래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경우 50조(1)(a)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할인 제공 조건이 i) 특정 구매자에게 비합리적으로 우호/비우호적인 방식이어서는 아니되며, ii) 동 할인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을 식별가능해야한다. 이러한 할인방식에는 거래량 조건부 할인(volume-based discounts), 기능상 할인(functional discounts), 배타적 거래 조건부 할인(exclusive dealing discounts) 등이 있다. 거래량 조건부 할인(volume-based discounts)은 거래량에 따라 공표된 단일한 선택가격제(single price option)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할인 적용 대상 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절한 조정을 통해 가격할인이 제공되어야 하며 거래량이 이전 거래보다 증가한데 따른 혜택도 사전에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공표된 것(available)이라면 50조(1)(a)에 위반되지 않는다. 기능상 할인(functional discounts)은 판매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행할 서비스를 구매자가 대신하는데 따른 할인(제품의 운송, 상품저장공간 제공 등)으로, 별도의 서비스 제공계약을 통해 거래 초기부터 제공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는다. 거래 중에 기능상 할인을 적용하더라도 유사 거래의 다른 구매자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가장 효율적으로 당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려되기까지 한다. 배타적 거래 조건부 할인(exclusive dealing discounts)은 유사 거래의 다른 구매자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판단하여 이득이 되는 경우 동 조건의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3) 구매자(Purchaser)와 구매자의 경쟁자(Competitors of a Purchaser)

가격차별의 대상이 ‘구매자’란 판매되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참여(commitment)를 한 기업으로서 물품을 주문하고 인수하여 판매자에게 대금을 인도하는 측’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구매자가 확정정이지 않은 상황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구매자와 관련하여 구매량을 기반(volume-based)으로 가격상 혜택을 받는 측이 어떤 경우일 때 적법한 구매자로 인정되는가의 이슈가 발생한다. 첫째

집단(buying group)이 구매하는 전체 구매량에 대해 리베이트가 인정되는가 아니면 구매집단의 구성원 개별에 대해 인정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구매집단이 구매 상품에 대한 지불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개별 구성원들이 상품을 인도하더라도 ‘구매자’는 개별 구성원이 아닌 집단이 된다. 둘째 가격상의 혜택이 프랜차이저(franchiser)의 구매량에 대해 인정되는가 아니면 프랜차이지(franchisee)들의 구매량에 대해 인정되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 경우도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지들이 상품을 주문하고 이에 대한 지불 책임을 지는 경우라도 프랜차이저가 판매자와 상품 구매에 대한 협상을 통해 프랜차이지들에게 상품을 공급하도록 했다면, ‘구매자’는 프랜차이저가 된다. 이 경우 동일한 판매액에 대해 판매자가 독립적인 개별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할인액보다 많은 할인 혜택을 프랜차이저에게 제공하는 것도 인정된다. 셋째 다국적 기업 집단의 전체 해외 구매를 기준으로 가격상의 혜택이 인정되는가 아니면 해당 다국적 기업 집단의 자회사에 대해 인정되는가의 문제가 있다. 캐나다 경쟁법은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가 상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판매자와 모기업 사이에 구매와 관련된 협상을 통해 할인에 대한 내용을 정했다면 ‘구매자’는 다국적 기업의 모기업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경쟁법 제50조(1)(a)는 ‘동일한 시장(same market)’에서 경쟁하는 구매자와 그 경쟁자들이 (유사한 품질과 수량 측면에서) 가격 혜택 상의 차별을 받는 것만을 금지하므로 경쟁관계에 있는 구매자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가격차별의 대상이 되는 구매자들이 같은 지역 및 같은 상품 시장에서 경쟁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판매자가 특정한 고객들이 경쟁관계에 있는지를 알 수 없어 구매자들을 동등하게 대하지 못했다면(“knowledge” requirement of the section), 법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구매한 상품의 재판매나 가공 등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 고객들도 법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교육기관이나 자선단체와 같은 비영리 기구들에 대한 판매 역시 법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상호보조

상호보조를 실제 판단하는 것은 가격차별을 판단하는 것 보다 쉽지 않고 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호보조를 적용한 규제사례도 많지 않다. 이하에서는 미국, 호주 사례를 통해 상호보조 판단기준과 적용방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가. 미국 시내전화의 상호보조(Palmer(1992))

전술한 바와 같이 Palmer(1989, 1991)는 상호보조를 판단하는 충분조건을 단독원가 조건(sufficient stand-alone cost condition; 박스의 식 (1))과 증분원가 조건(sufficient incremental cost condition; 박스의 식 (2))으로 구체화하고, 초과이익(non-zero profit)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독원가 조건'과 증분원가 조건이 동시에 성립해야 상호보조의 충분조건이 됨을 보였다.

Palmer(1992)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미국 시내전화사업자인 New England Telephone (NET)사의 시내전화 서비스 중 기업용-가정용 간 상호보조 여부를 측정하였다. Palmer의 상호보조 개념은 위의 박스에 있는 바와 같이 실제 발생한 단독원가(actual stand-alone cost) 대신 단독원가의 상한(upper bound stand-alone cost) 개념을 기준으로 상호보조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i) 기업용/주거용 서비스 각각의 매출, ii) 기업용/주거용 원가를 합한 총비용, iii) 기업용/주거용 각각의 한계비용

$P_x X - \left\{ C(X, Y_0) - Y_0 \frac{\partial C(X, Y_0)}{\partial Y} \right\} > 0 \quad (1)$
$P_y Y - \left\{ C(X, Y) - \left[C(X, Y_0) - Y_0 \frac{\partial C(X, Y_0)}{\partial Y} \right] \right\} < 0, \quad (2)$
<p>* Y_0: 관측가능한 y재 최저 수준</p>
<p>* $\left\{ C(X, Y_0) - Y_0 \frac{\partial C(X, Y_0)}{\partial Y} \right\}$: X재의 단독원가 상한(upper bound of stand-alone cost of X)</p>
<p>* $\left\{ C(X, Y) - \left[C(X, Y_0) - Y_0 \frac{\partial C(X, Y_0)}{\partial Y} \right] \right\}$: Y재 증분원가 하한(lower bound of incremental cost of Y)</p>

추정치가 필요하다. Palmer(1992)는 전화국(central office) 단위로 이들 자료를 추정해 65%의 교외 지역에서 기업용 부분이 가정용 부분을 상호보조 하고 있고, 전체 서비스 지역에서 가정용은 기업용 시내전화 서비스 부문을 보조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1) 총 비용의 산정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비용(total cost)은 액세스 비용(access cost), 교환비용(switching cost), 전송비용(transport cost) 및 관리비용(admin. cost)의 합으로 계산된다. 교환비용은 액세스 회선~교환기, 교환기~트렁크 회선 등 교환국사(central office)가 교환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본, 노동, 기타 투입물 비용으로, 총비용의 33%를 차지한다. Palmer(1992)는 교환과 관련된 비용을 자본비용과 노동비용, 기타비용(물리적 회선비용, 소모품(miscellaneous parts), 국사 장비 및 도구, 기타 용역 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가용한 자료를 국사 단위 비용으로 전환하여 산출하였다. 총 비용의 30%를 차지하는 액세스 비용은 공학적모형(bottom-up 모형)에서 제시된 비용을 그대로 준용하고, 국사간 연동회선 구성 및 유지보수에 수반되는 전송비용은 평균원가, 거리 및 통화량의 곱으로 산정하였다. 광고비, 일반관리 및 기타

〈표 3-1〉 Palmer(1992)의 상호보조 판단을 위한 총비용 산정 방식

비용요소	세부비용	측정방식
switching cost-central office 교환기능에 수반되는 자본, 노동, 기타 투입물 비용 (총원가의 33%) • access line ↔ switch • switch calls • switch ↔ trunk lines	노동비용 - 노동시간 - 임금률	- 자료: 월별 district(group of COs) 단위 노동비용 관련 회계자료 - 월별 district(group of COs) 단위 노동비용을 CO단위로 배분 • district별 교환관련 노동시간에 차이를 설명하는 regression 식 도출 → CO단위 월별 노동시간 산출 → 반기 단위 총 CO 노동시간 산출 - CO단위 총 노동비용(반기) = district 별 임금× 노동시간

비용요소	세부비용	측정방식
switching cost- central office 교환기능에 수반되는 자본, 노동, 기타 투입물 비용 (총원가의 33%) • access line ↔ switch • switch calls • switch ↔ trunk lines	자본비용 - 자본이용에 따른 이자 및 감가상각 비용 • aggregate net real capital stock • aggregate rental price of capital	- 자료: 32개 CO별로 교환관련 8개 설비유형+1개 plat 유형 자료, 주별로 설비유형별 historical investment/ depreciation profile/invest 자료((1986~1988, 연간) - 이상의 gross capital stock 자료를 이용해 CO단위로 net real capital stock, rental price of capital 산정(반기) - T기의 k-th CO, i-th 설비의 net real capital stock(ass. 동일 state에서는 설비별 vintage mix가 동일) $nrk_{ikT} = \frac{NRK_{iT}}{GBK_{iT}} (gbk_{ikT})$ - rental price(Jorgenson, Gollop & Fraumeni, 1987) $rp_{iT} = \frac{1}{1 - etr_t} [(es_T dr_T + ds_T mcdebt_T (1 - etr_T)) + depr_{iT} - cg_{iT}]$ es: equity share, etr: effective corporate income tax mcdebt: interest rate on latest issue debt, cg: rate of change in capital prices for equipment - CO, 설비별 자본비용을 CO 단위 총비용으로 aggregation 1) CO별 가중치(CO별로 intial cross-sectional index 개발) 2) 32개 CO의 Torquist index 산출 3) 1)과 2)를 곱해 single index 산출 4) 3)의 index를 가격과 곱하고 합산해 총 비용 산출
	기타비용 - wire - miscellaneous parts - station apparatus and small tools - purchased services	- 자료: district(group of COs) 단위 기타비용 자료 - district 단위 비용을 CO단위로 배분: 자본 비용 산 정 방법 이용 가능 - 기타비용이 전체 교환비용의 5%를 차지하고, 자본 량에 비례하는 특성이 있음 → net real capital stock 의 일정비율이라고 가정해 추정치 산출
Access cost - 가입자 ↔ 국사 - 전체 비용의 30%		- NET 공학적 가입자회선 원가모델 이용해 CO단위 로 산정 • 가정용/기업용 원가모델 별도 산정 - CO 규모별로 구분된 NET 원가모델을 개별 CO에 적용해 산정
Transport cost - 국사간 연동회 선 및 유지보 수 비용 - 전체 비용의 2%		- 분당, 1mile 평균 발신측 국간전송 원가×총 전송 트 래픽(분)×평균거리 • 분당, 1mile 평균 발신측 국간전송 원가: NET의 회계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이용
Administrative cost - 광고비, 일반관 리운영, 기타지 원비용(보험 등) - 전체 비용의 35%		- 관리비용은 전사적(corporate-wide) 성격의 비용으 로 기업용/가정용 차이 - CO 단위 관리비용 = [회선당 기업용 평균 관리비 용 × CO 기업용 회선수] + [회선당 가정용 평균 관 리비용 × CO 가정용 회선수]

지원비용을 포함하는 관리비용도 가정용, 기업용 회선에 따라 비용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해 비용을 산정하였다. 아래 표는 Palmer(1992)에서 적용한 세부 비용별 산정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2) 한계비용의 산정

Palmer(1992)는 위에서 언급한 비용요소(교환, 전송, 액세스, 관리비용) 별로 총 비용산정 방식과 유사한 맥락에서 한계비용을 산정하였다. 교환비용은 비용함수를 추정해 한계비용 산정하고, 가입자선로 및 전송 비용은 공학모형의 증분원가 이용하였으며, 일반관리 비용은 회계자료를 이용해 추정하였다.

교환비용(exchange cost) 함수 추정과 관련하여 Palmer(1992)는 교환비용의 한계비용을 가입자 회선 수, 최번시(peak-time) 트래픽 용량, 국간 트렁크(trunk) 회선 수의 함수로 식별하여 tanslog model을 적용하고 MLE(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여기서 가입자 회선은 일반 가입자 회선/특별 가입자회선(centrex 서비스 회선 등)으로 세분하고, 국사에 따라 최번시 시간대가 상이한 점 등을 반영하였으며, 32개 국사의 3개 시점 반기자료로 구성된 패널데이터(panel data)를 추정에 이용하였다. 아래 식들은 Palmer(1992)에서 이용한 교환비용 추정식을 보여주고 있다.

$$\begin{aligned} \ln SWC = & \alpha + \sum_{i \in (l,k,m)} \alpha_i (\ln w_i) + \sum_{k \in (O,S,TR)} \beta_k (\ln L_k) + \theta \ln BHMPL + \phi T \\ & + \frac{1}{2} \sum_i \sum_j \alpha_{ij} [(\ln w_i)(\ln w_j)] + \frac{1}{2} \sum_k \sum_j \beta_{kj} [(\ln L_k)(\ln L_j)] \\ & + \frac{1}{2} \theta_2 (\ln BHMPL)^2 + \frac{1}{2} \sum_i \sum_k \alpha_{ik} [(\ln w_i)(\ln L_k)] + \sum_i \alpha_{i\theta} [(\ln w_i)(\ln BHMPL)] \\ & + \frac{1}{2} \phi_2 T^2 + \sum_i \alpha_{i\theta} [(\ln w_i)(T)] + \sum_j \beta_{j\theta} [(\ln L_j)(\ln BHMPL)] \\ & + \sum_j \beta_{j\theta} [(\ln L_j)(T)] + \theta_\theta [(\ln BHMPL)(T)] + u, \quad (8) \end{aligned}$$

Lo: 일반 회선수, Ls: 특별 회선수, Ltr: trunk 회선수, w: 가격

BHMPL: busy-hour minute per line

BHM: minutes of use during the busy hour

T: 시간 dummy(기술변화 반영)

가입자선로 비용은 국사(CO) 단위로 가입자/기업용 회선수, 관련 설비, 가입자선로의 평균 길이의 함수로 파악하고 NET가 자체적으로 가입자선로의 증분원가(기업용/가정용 구분) 산정한 추정치를 이용하였다. NET의 공학적 모형은 향후 30년간 회선 투자비 증분, 관련 관리비용 증가분을 산정해 1986년 가격으로 할인된 증분비용을 수요 증분으로 나누어 단위 증분비용을 산출한 것이다.

전송 비용은 국간 전송 트래픽 및 전송거리의 함수인데, NET의 가입자선로 비용 산정방식과 유사하게 전송비용을 산출하였다. 즉, 추가 용량 증설 및 유지보수 비용, 추가 수요 등을 반영하여 분당 전송비용을 산출하였다. 일반관리 한계비용 중 국사 일반관리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수에 비례한다고 가정하고 가정용/기업용 관리비용의 한계비용은 각각 평균 관리비용의 1/2씩이라고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매출은 국사 별로 가정용/기업용 가입자 수량에 가격을 곱해 각각 산출하였다. 매출 추정과 관련하여 장거리 전화가 시내전화망에 액세스할 때 발생하는 매출과 추가 교환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관건인데, 장거리 사업자의 기여분을 반영하기 위해 상호보조의 충분조건식 (1), (2)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P_x X + IXCON_x X - \left\{ C(X, Y_0) - Y_0 \frac{\partial C(X, Y_0)}{\partial Y} \right\} > 0 \quad (11)$$

$$P_y Y + IXCON_y Y - \left\{ C(X, Y) - \left\{ C(X, Y_0) - \frac{Y_0 \partial C(X, Y_0)}{\partial Y} \right\} \right\} < 0, \quad (12)$$

IXCONx: interexchange service provider's contribution per line for lines of type X

나. ACCC의 우편서비스 상호보조 측정

(1) 개요

호주 ACCC(2008)는 Faulhauber(1975) 정의에 따라 우편서비스의 비경쟁부분(reserved service)과 경쟁부분(non-reserved service) 간 상호보조 여부를 회계자료를 이용해 평가하였다. Faulhauber(1975)는 i) 보조하는 재화의 매출이 단독원가(stand-alone cost) 보다 크고, ii) 보조받는 재화의 매출이 증분원가 보다 작은 경우 상호보조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³⁸⁾ ACCC는 '06~'07년 회계자료(Australia Post's Accounting data)를 이

용해 연간, 서비스 그룹간 단독원가(stand-alone cost)와 증분원가(incremental cost)를 측정하였는데, 직접 단독원가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Palmer(1992)와 같이 단독원가의 상한을 산정하였다.

측정결과 호주 우편서비스는 부분적으로 경쟁부분에서 비경쟁 부문으로 상호보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경쟁부문(reserved service) 전체 매출이 관련 단독원가의 대응치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비경쟁/경쟁 부문간 상호보조가 없다. 경쟁부문의 매출은 경쟁부분 비용의 상/하한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둘째 서비스별로 구분하면, 경쟁부문의 택배(logistics) 서비스 매출이 증분원가 보다 작아 증분원가 기준을 충족하나, 전체 경쟁부문의 매출이 비용의 상/하한 보다 크기 때문에 택배 서비스는 비경쟁부문이 아닌 경쟁부분의 다른 서비스로부터 보조 받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쟁부분중 국내 착신 우편(international inward letters)/기타 서비스 등 두 부문도 보조 받은 서비스로 분류된다.

(2) 측정방법

호주 우정사업은 19개 서비스 그룹으로 회계분리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매년 검증하며, 서비스별 회계보고는 직접계정(direct accounts item), 공통계정 중에서 서비스별 인과관계 식별이 가능한 계정(attributable account item), 공통계정 중에서 서비스별 인과관계 식별이 불가능(unattributable account item)한 계정³⁹⁾으로 구분하

38) 다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multi-product firm)인 경우 공통비용이 존재하므로 개별상품 간의 보조 뿐만아니라 상품 그룹 간 테스트도 해야한다. Faulhaber(1975)는 단독원가 테스트/증분원가 테스트를 각각 2단계로 정의하였다. 상호보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분원가 테스트에서 i) 각 서비스의 매출이 증분비용 보다 크고, ii) 당해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조합별 매출이 동 서비스 조합을 제공하는 증분비용보다 커야한다. 단독원가 테스트에서는 i) 각 서비스의 매출이 단독원가 보다 작고, ii) 당해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조합별 매출이 동 서비스 조합을 제공하는 단독원가 보다 작아야 한다. 호주 우정사업의 경우 zero-profit constraints(또는 break-even constraint)가 없으므로, 양 테스트를 모두 충족해야 상호보조가 없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39) 임직원 급여, 회사 행사비 등을 포함하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서비스별로 배분된다.

여 처리한다. 우편서비스 비용은 대부분 attributable 계정에 속하며 직접계정 비중은 매우 낮다.

증분비용은 직접비용(direct cost)과 인과관계 식별이 가능한 비용(attributable cost)의 합으로 정하고, 단독원가는 완전배부원가(FDC)와 FDC와 인과관계 식별이 불가능한 비용의 합(즉, FDC+ unattributable cost)을 각각 하한과 상한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서비스별 완전배부원가(FDC)는 다시 직접비용, 인과관계 식별이 가능한 비용(attributable cost), 배분된 인과관계 식별이 불가능한 비용(unattributable cost)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정의하였다. 호주 우정사업의 경우 서비스별 FDC가 공통비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FDC를 상호보조 기준가격으로 이용하기 어렵고, 실제 단독원가보다는 크지만⁴⁰⁾ 단독원가 상한을 대응변수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단독원가 상한은 직접비용, 인과관계 식별이 가능한 비용(attributable cost), 배분된 인과관계 식별이 불가능한 비용(unattributable cost)을 모두 합한 금액(= direct cost+ attributable cost + unattributable cost 전체 = 전체 도매비용- [다른 모든 서비스의 direct cost+ attributable cost])으로 정하였다.

상호보조 판단은 서비스의 매출이 단독원가보다 큰 경우 잠재적으로 상호보조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고, 다른 서비스의 매출이 직접비용 또는 직접비용+인과관계 식별이 가능한 비용보다 작은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가 보조를 받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 분	상 황	판 단
증분비용 테스트 (incremental cost test)	Rev. ≤ direct costs	상호보조 받음
	Rev. ≤ direct cost + attributable costs	상호보조 받음(단, attributable cost 가 증분비용 성격인지 확인)
단독원가 테스트 (stand-alone cost test)	Rev. ≥ direct cost + attributable costs+ unattributable cost 전체	잠재적 상호보조 서비스 다른 서비스 매출 ≤ 증분원가 인 경우 실제 상호보조로 판단
완전배부원가 테스트 (FDC test)	Rev. ≥ FDC(=SAT 하한) Rev ≤ FDC(=증분비용+공통비용)	

40) 서비스 그룹단위 보조를 판단하는 경우, 포함되는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비용을 과대계상하는 문제는 감소한다.

제 3 절 기간통신망 이용과 표준협정(RIO)

해외에서는 가격차별, 상호보조 등을 포함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 간에 협정을 체결할 때 표준협정(Reference Interconnection Offer: RIO)을 체결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사업자들은 도매서비스 유형별로 표준협정을 공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간통신망 이용시 사업자 간에 체결하는 협정의 신고/인가에 관한 법제도 및 표준협정에 관한 주요국 규제동향을 살펴본다.

1. 통신망 이용 계약의 신고/인가 관련 주요국 법제도 현황

가. 호주

사업자는 협정 체결 후 ACCC에 동 협정의 등록(Register)을 요청하고, ACCC는 심의(공공의 이익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를 통해 이를 등록하거나 등록 거부할 수 있다.(TPA Part XIC) 협정의 등록은 일반적으로 전자적인 수단(Electronic means)으로 이루어지며, 일정 수수료(Fee)를 지불하고 그 등록된 협정을 열람, 복사할 수 있다.

나. 일본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기타 사업자에 비대칭적인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표 3-2〉 접속약관 인가/신고, 공개제도 등

구분	대상 서비스 및 사업자		사업법상의 관련 조항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상호접속 약관	인가*	신고	제34조 2항 제33조 3항

구분	대상 서비스 및 사업자		사업법상의 관련 조항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공개제도	접속약관 및 회계정리** 공표 (영업소와 그 외 사업소, 인터넷 공표)	접속약관 공표 (영업소와 그 외 사업소, 인터넷 공표)	제33조 11항 제34조 5항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8, 제23조의9의4)
담당기관	총무성		—

*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 중 이용자의 편리 향상 및 전기통신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은 접속약관 신고
 **접속회계보고서는 사본을 영업소에 비치 및 간행물의 발행 등의 적절한 방법에 의해 공표
 (제1종전기통신설비접속회계규칙 제10조)

다. 영국

상호접속 제공과 관련하여 SMP 사업자에게는 상호접속 제공 조건 및 대가 산정에 대한 Ofcom의 규제가 부과된다.(Communications Act 2003 87, 88조) 또한 협정 내용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유선사업자에 대해서는 접속약관(reference offer)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접속료 변경 시 변경일 90일 이전에 접속료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요금 고지의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무선사업자에 대해서는 변경일 28일 이전에 접속료 변경을 공지하여야 하는 접속료 고지의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라. 프랑스

시장지배력이 있는 공중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의 기술 및 요금 조건을 명시한 상호접속약관을 작성하여 사전에 ARCEP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Communications Act of 1996 제34조 8항) 이 때, 상호접속요금은 원가기반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란 특정 시장의 매출액 점유율이 25% 이상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Communications Act of 1996 제36조 7항) 나머지 공중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 협정서 사본을 ARCEP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Communications Act of 1996 제34조 8항)

마. 미국

미국은 통신법 제251조(Interconnection), 제252조(Procedures for negotiation, arbitration,

and approval of agreements)와 FCC 규칙(CFR Part 51 Interconnection)에서 협정의 신고/인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통신법 제251조의 (c)항에서 ILEC의 추가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ILEC은 법 제251조(상호접속)의 (b)항— 재판매, 번호 이동성, 다이얼링 동등성, rights-of-way에 대한 액세스, 상호보상 의무— 및 기타 조항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계약조건을 법 제252조에 따라 성실히 협상해야 하며, 상호접속 협상 요청 사업자도 계약조건을 성실히 협상할 의무가 있다. 자발적인 상호접속 협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ILEC은 상호접속 협정 요청에 응해야 하며, 자율적 협상에 의해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협정에 포함될 내용은 상호접속 서비스 및 네트워크 요소 항목별 요금 명세 등이며, 상호접속 협정은 법 제252조 (e)항에 따라 주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주위원회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ILEC이 상호접속 협정 체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35일 이후 1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협상의 양방은 모든 협정 관련 사안에 대해 주 위원회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신청 시, 신청인은 i) 미해결 사안, ii) 사안에 대한 양 당사자의 입장, iii) 당사자들의 논의로 해결된 관련 사안 들에 대한 모든 관련 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중재 신청 기업의 해당 사안에 대해 상대방 기업은 신청 접수 후 25일 이내에 답변을 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주 위원회는 중재 신청 사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협상 대상자인 두 기업에 요구할 수 있으며,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미해결 사안을 종료해야 한다. 주 위원회의 중재의 기준은 법 제251조(상호접속) 및 관련 FCC의 규칙이 되며, 법 제252조 (d)항에 따라 상호접속 요금을 설정하고 협정 당사자가 주 위원회가 제시하는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상호접속 협정의 승인과 관련하여, 상호접속 협정(자발적 협상에 의하든, 주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체결된 협정이든)은 주 위원회(State Commission)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 위원회는 승인을 하거나 흠결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지적하여 승인 거절을 할 수 있다. 주 위원회의 승인 거절 사유는 자발적 협상에 의한 협정이 1) 협

정(또는 협정의 일부)이 당사자 이외의 사업자에 대해 차별하는 경우, 2) 협정의 이행이 공익(public interest), 편의성(convenience), 필수성(necessity)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이다. 한편, 자발적 협상에 의한 협정서 제출 후 90일 이내, 중재에 의한 협정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동 협정을 승인 또는 거절하는 조치를 주 위원회가 취하지 않는 경우 협정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주 위원회가 이 조에 의한 어떠한 절차나 사안에서 이 조에 의한 책임을 이행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FCC는 부작위 통보 또는 인지 후 90일 이내에 당해 절차나 사안에 대한 주 위원회의 관할권을 선취하는(preempting) 명령을 내려야 하며, 당해 절차나 사안에 대한 주 위원회 책임을 인수하여 주 위원회 대신 조치해야 한다.

다음으로 표준 접속제공 조건(Reference Offer)의 신고와 관련하여 RBOC은 법 제 251조, 제251조 및 접속관련 규칙에 의한 적용 기준과 요건에 따른 자사의 표준 접속제공 조건 문서를 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주 위원회는 표준 접속제공 조건의 통신법 및 규칙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승인해야 하며, 심사기간은 reference offer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제출 사업자의 심사기간 연장 동의가 없다면) 심사를 종료해야 한다. reference offer를 제출하였다고 해서 상호접속 협정 체결 및 신고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바. 독일

독일에서는 통신법 제16조(Interconnection Agreements), 제20조(Transparency Obligation), 제22조(Access Agreements), 제23조(Reference Offer)에서 협정의 신고/인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상호접속 협정 체결 의무와 관련하여 공공 통신망 운영 사업자(public telecommunication operator)들은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이용 및 서비스 호환성 확보를 위한 상호접속 요청이 있을 시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 때, SMP 보유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며, 규제기관은 SMP 사업자에 대해 회계정보, 기술 명세, 네트워크 특성, 가격을 포함한 제공 조건 등 설비 및 서비스 접속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규제기관은 SMP 사업자의

정보 공개 수준 및 정보 공개 방식에 대해 규정할 수 있다.

접속 협정 체결 및 신고 의무에 관해서는 액세스 의무가 있는 SMP 사업자는 접속 요청 후 3개월 이내에 접속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SMP사업자와의 접속 협정은 문서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 SMP를 보유한 공중 통신망 사업자는 접속 협정 체결 후 부당한 지연 없이 규제기관에 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표 3-3〉 상호협정서 등의 신고/인가, 협정서 공개 제도 및 담당 또는 관련기관

구분	협정서 신고, 인가 및 공개 / 담당기관
한국	- 상호접속요청에 대해 90일 이내에 협정 체결하고 통신위에 신고 - 협정당사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일 경우 통신위 인가필요 / 통신위원회
호주	- 협정 체결후 ACCC에 동 협정의 등록을 요청하고 ACCC는 이름 심의 / ACCC
일본	-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인가(접속약관 및 회계정리 공표) - 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신고(접속약관 만 공표) / 총무성
영국	- 유선사업자: 접속약관(reference offer)의 공개를 의무화 - 무선사업자: 접속료 고지의 의무 / Ofcom
프랑스	-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 상호접속약관을 작성하여 사전에 ARCEP 인가를 받아야 함 - 나머지 사업자: 상호접속 협정서 사본을 ARCEP에 제출 / ARCEP
미국	- ILEC는협정내용을 사업을 수행할 주 관할기관(States Commission)에 제출(신고) - 신고된 협정서는 States Commission이 복사본을 공공감시용으로 보관하며 공개 가능 / States Commission

표준 접속제공조건(Reference Offer) 공개와 관련해서는 액세스 의무가 있는 SMP 사업자는 일반적 수요가 존재하는 액세스 서비스 및 네트워크에 대한 표준 접속제공 조건을 3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하며, SMP사업자가 접속제공 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규제기관은 일반적인 수요가 존재하는 접속서비스를 식별해야 하며, 수요 조사를 위해 실제적 및 잠재적 수요자와 SMP사업자에 대해 의견 표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규제기관은 SMP사업자가 표준 접속제공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 접

속서비스를 확정하고, 사업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요금을 포함한 접속제공 조건을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표준 접속제공조건 작성 시 공정성, 합리성, 적시성 등 원칙이 포함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표준 접속제공 조건은 모든 접속요청 사업자들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포괄적이어야 한다.

RIO 수정 요청 권한과 변경 절차에 관해 규제기관은 RIO를 검증하고 RIO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최소한의 기간(minimum duration)을 설정하여 해당 RIO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MP는 규제기관이 설정한 최소 기한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RIO의 중단 또는 변경 사항에 대해 통지해야 하며, 사업자는 RIO의 내용을 협정 조건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표준협정(RIO)의 작성 원칙

가. WTO의 Reference Paper

1998년 기본 통신서비스에 대한 WTO 협약의 “Regulation Reference Paper”에서 상호접속의 일반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WTO 협약에 상호접속 일반 규칙에는 상호접속 협상 절차의 공개, 상호접속 협정 및 RIO 공개, 분쟁 조정을 위한 규제기관의 개입 등이 포함된다.

(1) 주요 내용

Reference Paper에 따르면, 주요 공급자(major suppliers)와의 상호접속은 i) 네트워크의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점에서 상호접속의 제공, ii) 적절한 방식(in a timely fashion)으로 제공, iii) 품질, 가격 등을 포함하여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상호접속 조건 적용, iv) 불필요한 요소에 대한 지불이 없도록 충분히 세분화된 요소에 대해 접속을 허용, v) 접속요청 사업자가 지불하는 조건으로 기존과는 다른 접속점에서의 접속도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호접속 협상 절차에 있어서는 주요 사업자는 접속제공 절차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상호접속 협정의 투명성과 관련해 주요 사업자의 상호접속 협정 또는 표준 상호접속 제공조건(RIO)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호접속 분쟁이 발생

할 경우 주요 사업자와 상호접속을 요청하는 서비스 사업자는 언제나(at any time) 또는 합리적인 기간동안 협정논의를 진행한 후에(after a reasonable period of time) 규제기관에 요금을 포함한 적절한 접속조건에 관한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ITU의 RIO 가이드라인

ITU-InfoDev(2000)의 통신규제 핸드북(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Handbook)은 표준 접속제공조건(RIO)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제별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상호접속의 범위(Scope of Interconnection)

다른 종류의 접속 계약, 예컨대, 2개의 시내 전화망 접속, 시내 전화와 장거리전화/국제전화 접속, 유선과 무선의 접속, 무선 간 접속, 시내 ISP와 ISP 백본의 접속 등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갖게 된다. 접속 계약의 목적으로는 i) 착신(termination)서비스 또는 전송(transit)서비스의 제공, ii) 언번들된 설비 제공 등이 포함된다.

(2) 접속점(Point of Interconnection) 및 접속 설비

접속점(POI)의 위치는 보통 부속서류에 기입하되 수정이 가능할 수 있다. 대체로 교환 타입(exchange type)과 주소(street address)를 포함하며, 특정한 접속점 설비 위치(예; 디지털 배분 프레임(distribution frame), 맨홀 중점(重接) 박스(manhole splice box)), 접속을 위한 네트워크 설비 기술(예; 단일 모드 광섬유와 상호접속하는 OC-3 광통신 터미널), 수용능력(capacity) 및/또는 트래픽 필요조건이 명기된다. 어느 사업자가 어떤 설비를 지원하는지에 대해 접속점 및 접속된 설비의 도면을 포함해야 한다.

기술적 명세서(specification), 예컨대, 발신번호표시(CLI; calling line identification) 스펙, 여타 지능망 관련 특성 스펙(예; 착신전환(call forwarding), 발신자 이름 ID 등), 기본 및 ISDN 전화 컨트롤 인터페이스 스펙, 시내 전화번호 이동성(LNP; local number portability) 질의(query)/응답망 스펙 등이 접속 계약에서 명시되어야 하며, 신호 접속과 관련해서도 신호망 체계 또는 표준(예; CCS7), 신호 POI 위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지점 코드(Point Code), 기술적 인터페이스 명세서(예; E-1 또는

DS-1 전송 설비에 전용되는 신호 링크, 56kbps에서 동작), 신호 접속 아키텍처 도표 등이 접속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3) 네트워크 등 설비 변경

망 교환 및 여유용량 예측 등의 상호 통지(mutual notification)를 위해, 각각의 접속 점에 대한 트래픽 예측, 시내 전화번호 및 번호 이동성 필요조건, 지역 코드 포화 및 증가된 디지털 전화번호(digit phone number)로의 전환, 부족(default) 및 중복 라우팅 조정 등 주기적인 망 계획 보고서에 관한 사항이 계약에 명시되어야 한다.

설비 주문(ordering) 절차와 관련해서는 상호 접속 설비 요청 및 준비에 대한 계약 쌍방의 권한과 의무를 명시하고(언변들링 망 요소 포함), 영업 및 정보 보안(confidentiality) 의무 요건 및 정보보호 절차를 명시함과 동시에, 설비 요청 및 제공 과정에서 나타난 정보를 반경쟁적 목적으로 사용(예: 이용자 정보 도용 등)해서는 안 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접속 지점의 명시(예: 상호접속 서비스 그룹, 이메일 주소 등), 주문 포맷 및 절차의 명시(예: 표준 주문 양식은 서류문서 또는 전자문서(EDI) 포맷으로 이용될 것임) 등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특정 주문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절차, 사업자 전환 고객을 위한 상호 협조(co-ordination) 프로세스, 접속 이용사업자를 위한 이용자 맥내에서 모든 장비 설치 및 변경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주문 확인 및 주문 거절 절차, 적시 통보, 부가 요금 통보, 주문 완료 통지 및 요구사항 보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4) 트래픽 측정 및 라우팅

트래픽 측정 책임 및 절차에 대해 양사의 책임기술, 측정 및 보고 절차(과금 절차에 대해서도 명기해야 함), 트래픽 라우팅을 위한 규칙 등이 접속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5) 설비공유(Infrastructure Sharing) 및 병설(collocation)

설비공유 절차 및 비용에 대해서는 전주(pole), 도관(conduit), 탑(tower), 설비포설권(right of way) 등의 이용가능성, 설비공유와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용량 결정을 위한 절차, 수용능력을 요구하는 사업자 사이에서 수용능력 배분을 위한 절차(예: first come, first service), 공유 설비의 가격(price) 및/또는 원가계산 방법, 추가(supplementary) 서비스

스(전력, 보안 시스템, 유지 및 보수 등)의 준비 및 가격설정 등에 대해 명시해야 하며, 제 3자의 재산에 대한 서브 면허(sub-licences)(예; 통행권 소유자, 인프라가 위치한 시(市) 및 다른 공적 사적 재산 소유자), 손해에 대한 보험 및 배상(indemnification)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사실적 또는 가상적 병설의 유용성(예; 구내 교환 장비의 전송을 위해), 배치 가능한 주소의 기입, 이용 가능한 공간에 대한 절차, 확장 공간의 예약 등을 계약에 포함하고, 배치된 공간을 위한 가격 및/또는 원가계산 방법, 추가 서비스(예; 전력 및 비상시 백업 전력, 조명, 난방 및 냉방, 보안 및 알람시스템, 유지 및 수위(janitorial)서비스 등)의 준비 및 가격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배치된 설비(통지; 통제된 수리 및 준비 작업과/또는 분할된 구내 등)의 보안 및 접속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다른 임대 및/또는 면허 조정 협정, 제 3자(예; 빌딩 소유자, 시(市) 및 다른 공적 재산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서브 면허 이슈 포함, 손해에 대한 보험 및 배상을 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6) 과금(Billing)

과금과 관련해서는 과금 조정 및 책임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 사업자들은 접속 서비스(예; 착신) 및 설비(예; 언번들된 시내망 및 기타 망 요소) 각각에 대해 과금할 수 있고, 과금 대행(예; 시내 전화사업자는 장거리 전화 또는 국제전화 교환, ISP 등을 위한 과금 대행 가능)을 할 수도 있는 등 몇 가지 과금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접속 정산을 위한 과금 매체(디스크, 테이프, 서류문서 및/또는 전자문서(EDI) 전송), 과금 포맷 및 소프트웨어 명세서, 접속 과금 출력의 생성을 위한 가이드라인(과금 데이터 포맷 및 데이터 요소, 표준화된 코드, 과금 스케줄) 등 과금절차가 명시되어야 하며, 시내전화 사업자에 의해 공급되는 세부사항(예; 사용된 접속 요소의 기록, 회선 및 다른 장비(예; DSLAM) 포함 개인 식별 번호), 배송 매체(예; 테이프, 서류문서 등) 및 스케줄 등 정산자료의 보관과 기간고객서비스 기록(CSR; Customer Service Record)을 위한 준비에 대해 계약에 명시해야 한다.

과금과 관련된 지불 조건(terms and conditions)은 과금 금액 및 관련 요금, 지불 계

약 조건, 납기 후의 지불시 불이익(penalty), 서비스 부실 시 보상 등을 포함하고, 과금 문의 및 조정의 세부사항, 백업 기록을 지원 할 책임, 과금 분쟁의 고지, 최초 해결 절차(예; 보다 상급 행정기관의 단계적 확대) 및 최종 해결절차(중재 재판, 규제자 또는 법원에 회부) 등 과금 분쟁 및 화해(reconciliation)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7) 서비스/성과 품질 및 문제점(trouble) 보고서

서비스 품질에 대해 서비스 성과 표준은 부록에 명기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접속 회선 준비 평균 시간, 계획된 데이터로 만들어진 접속 컷-오버(cut-over)의 퍼센트, 경쟁사 및 자사(또는 계열사)간 공급 성과 비교, 접속된 회선에서 측정하는 교환 및 전송 품질(예; 혼잡시간 차단 확률, 전송 지연 및 로스(loss), ITU-T 권고사항 참조) 등을 담아야 한다.

네트워크 테스트 및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중단(interruption) 및 네트워크 오류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네트워크 테스트를 할 권리를 규정하고, 문제사항 보고(trouble reports)에 관해 보고 절차, 통보 기간, 응답 시간 표준, 접속 사업자에게 접속서비스 제공 문제 보고 하기 전에 자사망에 대한 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한 접속서비스 제공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초래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을 명기(문제점 보고서 조사를 위한 요금(인건비 등)의 계산 포함)해야 한다.

시스템 보호 및 안전성 측정에 대해서도 방해 및 중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조치의 수행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8) 상호교환(interchange) 및 취급(treatment) 정보

사업자 간 데이터 상호교환의 방법 및 포맷, 데이터 인터페이스/소프트웨어/형식(form) 등을 계약사항에 포함해야 한다. 어떤 데이터가 상호교환 될 것인지를 데이터 타입 및 시스템 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신규 설비 및 서비스 주문, 네트워크 변화 전망, 과금, 호 라우팅 및 시내 전화번호 이동성에 필요한 번호 할당 및 필요데이터 준비, 전화번호부 및 데이터베이스에 가입자 명부 기입, 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에 대해서는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분리된 접속서비스 그룹 설립(전자 파일을 위한 암호 보호 등), 관련 종업원에 대한 정보 보안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등 고객 정보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사업자 정보의 접근 및 사용에 대해서도 기밀성 확보 절차, 지적재산권에 대한 고려 등을 계약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

(9) 동등 접속(Equal Access) 및 고객 이전

사업자 사전선택(Carrier Pre-Selection: CPS), 통화별 사업자선택(call by call selection) 등에 대한 동등접속 절차 규정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존 사업자의 사업자 사전선택 세부 절차는 고객 인증(authorization) 요구(규정된 형식의 서명, 투명한 선택 요구), 비인증 고객의 이전(slamming)을 막기 위한 인증 및 측정, 비인증 고객 이전 시 패널티 부과, 고객 이전 보고 방법(접속 지점 및 제공 데이터), 주문 확정 절차(포맷, 데이터 제공 매체 등), 고객 이전 이행 스케줄, 고객 이전 이행 절차, 분쟁 해결 절차(예; 상급 행정기관, 규제자, 중재자 등을 통한 단계적 확대), 분쟁 고객에 대한 대응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10) 부가 서비스

교환원서비스(operator assistance) 및 여타 부가서비스에 대한 사항도 접속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즉, 교환원 서비스와 관련해 전화번호, 통역, 불완료를 안내 서비스 등 교환원 서비스 제공, 통화호 처리 절차, 과금 절차 등을 명기해야 한다. 여타 부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부에 가입자 명부 기입, 과금 및 정보 삽입, 수리 및 유지 서비스 등을 규정해야 한다.

(11) 기타 사항

기타 사항으로 자연 재해 등(force majeure)에 대해 접속 계약 의무 이행의 면제 사유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 또한 계약은 관련 법의 준용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계약의 유효성에 필요한 규제 허가의 명시 및/또는 계약의 갱신 수정 종결 등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약 위반 시, 규제조치 및 패널티, 채무, 채무의 배상(indemnification) 및 제

한에 대해서도 규정해야 한다.

한편, 법적 해석에 대한 표준 준비 및 계약의 시행(예; 전 계약 조항, 시행 불가능한 조항의 효과, 누적된 권리 및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서도 협상에 임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 규제자, 중재자 또는 법원에 위임, 중재의 선택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할 수 있다. 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의 지속기간, 권리와 절차의 갱신에 대해 규정하며,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도 검토 및 재협상 절차, 규제 변화의 영향 등에 대한 사항을 계약에 포함할 수 있다.

3. 해외 주요 사업자의 RIO

가. 유선 전화계망 서비스

① NTT의 유선 RIO

NTT의 RIO는 통신설비에 대한 상호접속 계약에 대해 지정된(designated) 설비와 미지정(non-designated) 설비로 구분하여 접속제공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정(designated) 설비에 대한 접속 약관은 총 16개장 10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4〉 NTT의 지정(designated) RIO 구성

구 분	목차 구성	
제1장 일반적 제공(general provisions)	제1조 계약의 적용 제2조 계약의 변경	제3조 용어 정의 제4조 과금, 기술 조건 등
제2장 상호접속 설비의 범위	Part1, 제5조 표준 접속점 Part2 인터페이스 포인트(Point of Interface) 제6조 POI 설치의 목적 제7조 POI 설치 위치 제8조 POI 설치 범위	Part3 상호접속 지역 제9조 NTT의상호접속 지역 Part4 상호접속이 제공하는 기능 제10조 상호접속이 제공하는 기능

구 분	목차 구성	
제2장의2 NTT 통신 빌딩에서 POI 설치 절차	제10-2 사전 조사 제10-2-2 제공 조건의 적용 제10-3 POI 서베이 제10-4조 POI설치의 적용	제10-5조 장비사이트 설치 진입 등, 상호 접속 이용사업자의 상호접속 필요조건 제10-6조 NTT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 POI의 설치 제10-7조 POI 설치 위치의 확보 제10-8조 정보의 제공
제3장 계약의 절차	Part1 예비 조사 제11조 예비 조사의 적용 제11-2조 정보 제공 제12조 예비 조사의 수용과 주문 제13조 예비 조사 응답	Part2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에 관한 자문 제14조 소프트웨어 개발비용관련 자 문 적용
제3장 계약의 절차	제15조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에 관한 자문 Part3 삭제 제16조 제20조를 통한 삭제 Part4 상호접속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제23조 상호접속 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적용 제24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 제25조 상호접속설비의 설치 또는 변 경 적용 승인 제26조 개별 구축 계약의 결론 제27조 상호접속설비의 설치, 변경에 있어서 변화 제28조 완성의 고지(Notice of Completion) 제29조 다른 상호접속설비의 설치 또 는 변경 적용 Part6 상호접속 소프트웨어 개발 제30조 상호접속 소프트웨어 개발 제31조 상호접속 소프트웨어 개발 적 용의 승인 제32조 상호접속 소프트웨어 개발 계 약의 결론 제33조 상호접속 소프트웨어 개발의 취소 제34조 완성의 고지	Part 6-2 NTT의 광 회선설비에 대한 상 호접속 절차 제34-2 광 단국 회선에 대한 회선설비 사전조사 제34-3 광 단국 회선에 대한 상호접속 제34-4 광 가입자회선에 대한 상호접속 제34-5 광 회선설비로 이용가능한 불 용 코어가 없을 경우의 진입 Part 7 장애(Defects) 제35조 장애 Part8 NTT 통신설비 또는 소프트웨어 의 업그레이드 또는 사용 취소 제36조 NTT의 통신설비 또는 소프트 웨어 업그레이드 제36-2조 계약 사업자의 어플리케이션 을 통한 개별 관리에 따라 사용 취소 제36-3조 개별 관리에 따른 Part 9 다른 작업의 신청 제37조 다른 작업의 신청 제37-2조 DSL 회선에 대한 회선 조정 작업 제37-3조 threshold 회선 길이 계약 조 건에 따라 DSL 회선의 설치 요청
제4장 표준 상호접속 기간	제38조 표준 상호접속 기간	제39조 기간의 계산

구 분	목차 구성	
제5장 계약 체결, 취소 등	제40조 계약 단위 제41조 계약 하에서 Status의 할당 제42조 계약 하에서 Status의 승계 제43조 계약의 변경	제44조 계약 사업자에 의한 계약의 취소 제45조 NTT에 의한 계약의 취소 제46조 계약의 종료
제6장 의무	Part 1 의무 제47조 비밀보장 의무 제48조 필요사항의 공지 제48-2조 서비스 제공의 확인 제49조 상호 협력 제50조 트래픽, 회선수의 고지 제50-2조 스펙트럼 호환의 확인 제50-3조 DSL 회선의 전송시스템 고지	Part 2 유지보수 제51조 유지보수 책임 제52조 문제 부문의 식별에 대한 계약 사업자의 책임 Part 3 계약의 승인(Approval of Assignment) 제53조 로밍에 관한 계약 승인 등
제7장 상호접속의 패턴	제54조 상호접속의 패턴	
제8장 중요 통신의 핸들링	Part 1 중요 통신 보장 조치 제55조 상호접속 메시지의 차단 제56조 상호접속 메시지의 제한 제57조 우선 통신(Priority Communications)의 식별	Part 2 긴급전화에 대한 상호접속 제58조 긴급전화에 대한 상호접속
제9장 상호접속의 일시 단절, 보류, 단절	제59조 상호접속의 일시 단절 제60조 상호접속의 보류	제61조 상호접속의 단절

자료: NTT(2003), Articles of agreement concerning interconnection to designated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NTT는 접속조건을 RIO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RIO는 DSL 회선이 가입되는 접속 20개 유형, DSL 회선이 가입되지 않은 접속 596개 접속 유형에 적용(제39조 및 별표 2)된다. 서비스 유형은 i) NTT가 발신, 중계, 착신 부문 중 어느 부문에 가입되는지, ii) 요금설정/과금/TS 접속료 지불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표 3-5〉 NTT의 접속 유형 구분 방식

Column1			번호	Column2	Column3	Column4	Remarks
originating carrier	transit carrier	terminating carrier		carrier setting usage charges	carrier billing charges	carrier paying usage-sensitive access charge	
NTT	—	local carrier	1				
			2				
			3				

자료: NTT(2003) 별표2 접속유형(pattern of interconnection)

요금표는 접속료(access charge)와 망구조 변경 요금(network modification charge), 서비스료(expenses for work and procedure), 국사이용료(housing charge)로 구분하고, 각각 요금산정 기준, 실제 적용하는 요금표를 제시하고 있다. access charge 서비스 기능⁴¹⁾ 별로 요금단위, 요율, 적용대상을 명시하며, 국사이용료(housing charge)는 지역별로 요금이 차등(지역별 건물과 제곱미터당 연간 요금 명시) 적용된다.

② AT&T

AT&T는 22개 주에서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96년 통신법 제251조 및 제 252조에 따라 상호접속 및 재판매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22개 주에 공통적으로 적용 될 접속 및 재판매 서비스의 표준협정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⁴²⁾ 표준협정서는 i) 일반조건(general terms & condition), ii) 서비스별 조건, iii) 서비스의 지역별 요금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조건(general terms & condition)은 모든 접속 및 재판매 협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협상절차, 요금 산정, 분쟁조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하며, 15개 서비스 부문별로 기술적인 요건을 중심으로 서비스별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41) subscriber line transmission function, subscriber line switching function, interoffice transmission function, exclusive transmission function, signal transmission function, directory assistance function, operator assistance service function, other function, inter-terminal transmission function 등 총 17개 기능으로 대분류

42) 웹주소...<https://clec.att.com/clec/shell.cfm>

〈표 3-6〉 표준협정서의 구성

구분	목차 구성	
일반조건 General Terms & Con.	1. Introduction 2. Definitions 3. Interpretation, Construction and Severability 4. Notice of Changes-Section 251(C)(5) 5. Responsibilities of the Parties 6. Insurance 7. Assignment 8. Effective Date, Term and Termination 9. End User Fraud 10. Assurance of Payment 11. Billing and Payment of Charges 12. Nonpayment and Procedures for Disconnection 13. Dispute Resolution 14. Audits 15. Disclaimer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16. Limitation of Liability 17. Indemnity 18. Performance Measures 19. Intellectual Property/License 20. Notices 21. Publicity and Use of Trademarks or Service Marks 22. Confidentiality 23. Intervening Law	24. Governing Law 25. Regulatory Approval 26. Changes in End User Local Exchange Service Provider Selection 27. Compliance and Certification 28. Law Enforcement 29. Relationship of the Parties/Independent Contractor 30. No Third Party Beneficiaries; Disclaimer of Agency 31. Subcontracting 32.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Contamination 33. Force Majeure 34. Taxes 35. Non Waiver 36. Network Maintenance and Management 37. End User Inquiries 38. Expenses 39. Conflict of Interest 40. Survival 41. Scope of Agreement 42. Amendments and Modifications 43. Authority 44. Counterparts 45. Entire Agreement
첨부 Attach- ments	1. ISP-Network interconnection 2. Structure access 3. LNP(Local Num. Portability & Numbering) 4. 911 5. 이용자 정보서비스(customer info. service) 6. OSS(Operation Supporting Service) 7. Bona Fide Request 8. 품질평가(performance measurement)	9. Billing, collecting, remitting and clearance house 10. 정보제공(data exchange) 11. daily usage file 12. 병설(collocation) 13. UNE(Unbundled Network Element) 14. xDSL loop 15. 재판매(resale) 16. 요금표

자료: AT&T 홈페이지(<https://clec.att.com/clec/shell.cfm>)

〈표 3-7〉 AT&T 협정서 상 별첨 내용

별첨	내용
1. ISP-Network interconnection	AT&T- CLEC 간의 Trunking and Inter-carrier Compensation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twork Interconnection Methods(NIM) - the trunking requirements of CLEC - Inter-carrier Compensation arrangements for inter-carrier Telecommunications traffic
2. Structure access	ROW(Rights of Way) 및 전주(poles) 제공에 적용되는 거래조건
3. LNP(Local Num. Portability)	번호자원의 확보 및 번호이동선 관련 기술적인 조건
4. 911/E911	통신법 제251조 규정에 따라 AT&T 911/E911 DB에 대한 접근, 911호의 소통을 위해 필요한 접속 및 라우팅 관련 사항을 규정
5. Customer Info. Service	도매서비스 제공 관련 정보제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erator Services/Directory Assistance(OS/DA), - Inward Assistance Operator Services(INW) - Directory Assistance Listings(DAL) and White Pages.
6. OSS(Operation Supporting Service)	통신법 251(c)(3) UNE 제공에 필요한 OSS 서비스 거래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ordering, ordering, provisioning, maintenance/repair, and billing 등 OSS 기능에 대한 비차별 접근
7. Bona Fide Request	현재 AT&T가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통신법 제251조 또는 제251조(C)에 따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비스를 요청(BFR, Bona Fide Request)하는 경우 적용되는 거래조건
8. Performance measurement	AT&T 내부의 성과평가 계획, 평가 결과의 활용 제한 등의 사항(평가 결과를 이유로 차별 등으로 제소하지 않을 것에 CLEC가 동의)
9. Billing, collecting, remitting and clearance house	과금대행, 청구, 정산 등의 절차, 대가 등을 규정(서부 5개주에서만 적용)
10. 정보제공 (data exchange)	서부 2개 주에서만 적용
11. Non-intercompany settlement	중서부 5개주, 남동부 9개주에서 AT&T가 과금하는 intrastate/intraLATA or interstate/intraLATA local/toll 호에 대한 수익정산 관련 사항
12. Daily usage file	CLEC가 요청하는 경우, AT&T가 일일 통화량 정보(DUF)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법 제251(b)(5)의 traffic 정보 및 LEC이 전송한 IntraLATA Toll Traffic 정보 - CLEC가 종량제 요금에 적용되는 서비스의 과금에 필요한 정보 - operator handled calls

별 칩	내 용
13. 코로케이션 (collocation)	AT&T 소속 ILEC이 통신법 제251조(c)(6)에 따른 ‘물리적, 가상적 코로케이션 제공’시 적용되는 대가 및 거래조건 규정
14. UNE(Unbundled Network Element)	통신법 제251(c)(3)에 따른 망세분화 제공시 적용되는 대가 및 거래조건 규정
15. xDSL loop	47 C.F.R. §51.319(a)(1)(i)-(iv) and (b)(1)의 규정에 따라 CLEC가 xDSL기반 서비스 또는 고주파분리제공(line splitting arrangements) AT&T의 xDSL Loops 및 xDSL/Unbundled Copper Subloop(UCSL)을 임차하는 경우 적용되는 거래조건 규정
16. 재판매(resale)	통신법 251(c)(4)의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재판매 서비스의 대가, 거래조건 규정
17. 요금표	지역별,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세분화된 요금표 제공

자료: AT&T 홈페이지(<https://clec.att.com/clec/shell.cfm>)

일반 조건(general terms & conditions)에 대해서는 전체 45조에 모든 유형의 상호 접속에 적용될 일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인 총칙, 정보제공 관련, 이의제기 및 조정, 청구 및 지불, 책임 및 업무의 한계 등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슷하나(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성과 측정, END-USER(최종수요자) 관련, 지적재산권, 하청계약, 환경오염 등의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원칙이다.

〈표 3-8〉 AT&T 협정서의 일반 조건

구 분	내 용
Introduction	협정서 체계에 관한 소개
Definition	1934년 통신법, 1996년 전기통신법에 근거하여 일반 조건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을 정의
Interpretation, Construction & Severability	협정서의 의미와 구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유의점(관세조건, 조항간 갈등, 의무범위, 의무범위, 특정 주에 관한 조건, 자회사 등)을 제시
Notice of Change	협정으로 인해 사업자 법인의 새로운 변화(장비,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약이 없음을 통지
Responsibility	상품, 서비스, 기술적 세부사항 등에 대해 각 사업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

구 분	내 용
Insurance	CLEC이 부담해야 할 보상의 적용범위, 상업적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
Transfer of Agreement	협정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비가맹국에게는 120일, 가맹국에게는 60일 안에 이행할 것을 명시
Effective date & Termination	위원회 승인 후 10일 후 협정은 유효하며, 'Notice of Expiration' 후 CLEC은 이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함
End User Fraud	이용자의 부정적 행위에 대한 협력적인 시스템 및 대책에 관한 내용
Assurance of Payment	사업자의 신용과 재정적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도록 요구
Billing&Payment of Charges	과금, 청구, 정산 등의 방법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분쟁 절차에 관한 조건을 제시
Procedure of Disconnection	미납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정조치, 이의제기, 분쟁 해결 등의 방법에 대한 내용
Dispute Resolution	공식적·비공식적 분쟁, 소송에 대한 대안, 조정에 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
Audits	감사의 주요 내용, 시기, 이의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를 명시
Disclaimer of Representation	협정에서 제공하는 것 이외의 특정 서비스나 시설은 보증할 것을 거부
Limitation of Liability	비용·편익적인 측면에서 의무의 범위나 손해의 타입과 관련하여 한계의 여지를 둬으로써 협정의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음
Indemnity	사업자에 의해 제공된 계약권, 지적재산권 등의 보상 범위, 내용, 그리고 절차 등을 제시
Performance Measures	적절한 성과 기준을 부칙으로 자세히 규정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있음
Intellectual Property	각 사업자의 배타적인 소유권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한다는 규정
Notice	공표의 원칙과 방법을 예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음
Publicity and Use of Trademarks	사업자 간의 협정에 관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공표해야 하며, 이를 홍보함에 있어 상호간의 서면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음
Confidentiality	사업자들은 독점적 정보를 다루는 것에 동의하며, 동의하지 않을 시 의무 사항을 제시
Intervening Law	협상의 결과가 협정이므로 무효화시키려는 행위는 있을 수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공지하기 60일 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함
Governing Law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상위법 혹은 FCC 원칙에 의해 관리될 수 있음
Regulatory Approval	협정의 내용은 공익에 해당하므로 위원회에 의해 수정, 규제될 수 있음
Changes in End User	이용자는 변화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지하고 다른 서비스로 옮겨갈 수 있음

구 분	내 용
Compliance & Certification	각 사업자는 제공 받은 장비, 서비스, 그리고 인가받은 권한 등을 책임져야 함
Law Enforcement	법 시행을 함에 있어 집행기관들은 적절한 상호 협력을 전제로 하여 적용 가능한 요구를 해야 함
Independent Contract	각 사업자는 독립적인 계약자이므로 협정 내의 사무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짐
No third party Beneficiaries	협정은 당사자들 간의 계약이므로 협정과 관련 없는 제3자는 수익과 관련된 권리가 없음
Subcontracting	하청 계약을 함에 있어 사업자는 협정에 관련된 산출물을 모두 책임져야 함
Responsibility for Contamination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유해물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책임져야 함
Force Majeure	불가항력적인 사건(Force Majeure Event)에 의한 협정의 실패나 연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음
Taxes	협정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함에 있어 적용 가능한 법에 의해 세금이 부과됨
Non Waiver	권리나 특권을 포기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협정의 적용이 제외됨
Network Maintenance	네트워크 서비스의 적절한 수준을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각 사업자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모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야 함
End User Inquiries	이용자가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하며,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모두 확인을 시켜줘야 함
Expenses	사업자는 협정과 관련된 모든 활동의 비용에 대해 자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
Conflict of Interest	사업자는 구성원의 고용, 임금, 보상 등과 관련된 협정을 대표해야 함
Survival	협정 만료 전까지 사업자들 간의 일반적 기간 및 상황이 적용됨
Scope of Agreement	사업자 간의 특정 상호접속 및 보상에 관한 합의를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원칙
Amendments & Modifications	협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변경이 불가능함
Authority	협정을 수행하는 AT&T 소유의 영업 자회사들은 합자 회사임을 보증함
Counterpart	상대방과 함께 협정을 구성하였으며 협정은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Entire Agreement	협정, 부칙 등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완전한 협정을 구성함

자료: AT&T 홈페이지(<https://clec.att.com/clec/shell.cfm>)

전화계망 UNE에 대해서는 UNE 규제 의무가 규정한 망요소를 중심으로, 세부 서

비스 유형 및 대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거래조건, 절차, 책임관계를 가능한 구체화하고, 대가는 공개된 요금표를 적용한다. 예측가능한 상황은 사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후적으로 변경될 여지 적으며, UNE ↔ 도매서비스 제공 간 전환, UNE와 도매서비스 중첩 이용(commingling),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 요청 시 대응 절차(Bona-fide Request)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 3-9〉 AT&T UNE 조건의 주요 내용

항 목	주요 내용
1. 서론	본 부속서는 통신법 제251(c)(3)의 망 세분화 제공시 적용되는 대가, 거래 조건 등을 규정 AT&T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UNE 의무를 짐 UNE로 제공하는 경우 AT&T는 망요소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책임만 지며, 통신서비스 제공의 책임은 CLEC가 짐
2. 정의	UNE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정의
3. 일반규정	3.1 UNE, UNE Combinations 및 기타 서비스 요금은 pricing schedule을 적용함 3.2 요금표상에 없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주별/시장기반 요금을 적용함 3.3 적법한 절차에 의해 UNE 제공의무가 면제(declassification)될 수 있음 3.5 계약기간 중에 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절차 규정(총 2개항)
4. 거래당사자들의 책임	4.1 AT&T는 UNE access 제공 4.2 최종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양사가 각각 책임짐 4.3 CLEC의 UNE 이용이 AT&T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지 않아야 함 4.5 Performance of UNE: 개별 망요소는 공표된 AT&T 기술기준에 따라 제공(총 4개항) 4.6 UNE 접근 조건: 자가소비 또는 목적외 이용(이동, 장거리, 국제 서비스 제공용) 등에 이용 금지(총 5개항)
5. Cross-connects/COCI	5.1 가상적/물리적 코로케이션된 경우 cross-connect 회선을 이용해 AT&T가 UNE를 코로케이션된 CLEC 설비까지 연결함, 요금은 pricing schedule을 적용함(총 3개항)
6. New Combinations, conversions, commingling and eels	6.1 New combination: CLEC가 UNE가 포함된 새로운 조합의 망요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FCC 규칙의 한도내에서 수용 가능, 필요한 경우 [첨부 8]의 Bona-fide request에 따라 서비스 및 요금체계가 개발될 수 있음(총 4개항) 6.2 도매서비스-UNE 간의 전환: 요청이 있는 경우 양자간 대체 허용, 전환대가: 요금표상 요금 적용(일회선 요금+switch-is-as 요금)(총 7개항) 6.3 commingling ⁴³⁾ (총 9개항) 6.4 특정 UNE에 대한 접근 제공시 적용하는 적합성 기준(eligibility criteria)(총 8개항)

43) CLEC가 AT&T로부터 제공받는 도매서비스에 UNE를 연동하는 서비스

항 목	주요 내용
7. NID	세분화된 NID 접속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총 8개항)
8. UNE loop	8.1 UNE loop 세분화 제공조건 규정 8.2 MDF~가입자측 단말까지가 UNE loop 8.3 UNE loop 세부 서비스 유형 설명(7개 유형) - 2wire analog, 4wire analog, 2wire digital, 4wire digital, DS1 digital, DS3 digital, FTTH/FTTC 8.4 declassification procedure (총 4개항)
9. UNE DS1 & DS 3 전송	DS1 & DS3 전송(dedicated transport)제공조건 (총 7개항)
10. UNE Dark fiber	10.1 전송용 dark fiber 세분화 제공조건 규정(UNE loop dark fiber는 세분화 대상 아님) 10.2 요금은 pricing schedule 적용 10.3 spare dark fiber transport 적용조건 10.4 spare dark fiber inventory transport 이용가능성 및 조건 10.5 CLEC는 전송용 dark fiber 필요시 요청서 제출 (이외에 5개항 포함 총 10개항)
11. 일상적인 망구조 변화	11.1 CLEC 요청으로 UNE loop, dark fiber, DS1, DS3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망구조 변경(RNM ⁴⁴⁾)하는 경우 비차별 원칙 적용 11.3 RNM은 UNE loop의 신규 구축은 포함하지 않음 (이외에 4개항 포함 총 7개항)
12. 911/E911 DB	별첨5 준용
13. OSS 기능	별첨 7준용
14. 비손상(non-impaired)wire center 기준 및 관련 절차	14.2 주 공익위원회가 인정한 wire center list 14.3 승인과정에 있는 wire center list 14.4 (CLEC의 non-impairment) 자체 인증(self-certification)(총 10개항)
15. 미래 wire center 지정	2005년 기준으로 FCC의 non-impairment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wire center 가 미래에 impaired wire center로 식별되기 위한 조건(총 7개항)
16. wire center 지정에 따른 이행기 절차	Wire center 지정에 영향을 받는 DS1/3 UNE loop, DS1/3 dedicated transport, Dark fiber dedicated transport 등의 협정에 적용되는 조건 (총 4개항)

주: COCI(Central office channel Interface), NID(Network Interface Device), OSS(Operating Supports Systems)
자료: AT&T 표준협정서 별첨13. & UNEs(AT&T 홈페이지)

- 44) RNM(Routine Network Modification)은 rearranging or splicing of existing cable; adding an equipment case; adding a doubler or repeater; adding a smart jack; installing a repeater shelf; adding a line card; deploying a new multiplexer or reconfiguring an existing multiplexer; and attaching electronic and other equipment

③ BT

영국 BT는 Ofcom의 Strategic Review(2005)의 결과, Enterprise Act(2002)에 근거하여 가입자망 부문이 기능분리(functional separation)되면서 Openreach와 BT wholesale이 각각 도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T Wholesale 부문	BT Openreach 부문
세부 상품	- ATM In-Span Handover Agreement	Ethernet
	- BT Datastream	Local Loop Unbundling
	- Ethernet MSIL	Wholesale Line Rental
	- Frame Relay	Super-fast Fiber Access
	- International Facilities Agreement(IFA)	WLR3
	- IPStream_Connect	Special Offer
	- Optical Broadband IFA	
	- Partial Private Circuits PPC	
	- Radiopaging	
	- Radio Base Station Backhaul Service	
	- Telephony	
	- Wholesale Broadband Connect	
- X75 Packet Switching		

자료: BT wholesale 홈페이지(http://www.btwholesale.com/pages/static/Pricing_and_Contracts/Reference_Offers.html)
BT openreach 홈페이지(<https://www.openreach.co.uk/orpg/news/generalbriefings/gen04208.do>)

BT Wholesale은 세부 서비스 별로 RIO를 작성하며, 협정은 본 협정서(general term &

〈표 3-10〉 BT wholesale의 RIO 구성 예: Partial private circuit(PPC)

Document	Title	Issue	Date
Main Agreement	BT Standard PPC Handover Agreement	5.0	29/08/09
Annex A	Planning and Operations	5.0	20/08/09
Annex D	Definitions	5.0	20/08/09
Annex E	Service Level Agreement	5.0	20/08/09
Schedule 01	CSH Link	5.0	20/08/09
Schedule 02	ISH Link	5.0	20/08/09
Schedule 03	Partial Private Circuits	5.0	20/08/09
Schedule 04	Third Party Links	5.0	20/08/09
Schedule 05	ATM CSH via PPC Facility Mux Links	5.0	20/08/09

자료: BT Wholesale 홈페이지(http://www.btwholesale.com/pages/static/Pricing_and_Contracts/Reference_Offers/Partial_Private_Circuits_PPC_Reference_Offer.html)

〈표 3-11〉 BT wholesale의 서비스별 RIO 구성 예

Telephony	Partial private circuit(PPC)
1. Definitions and Interpretation	1 Definitions and Interpretation
2. Commencement and Duration	2 Commencement and Duration
3. Interconnection and Standards	3 Scope and Standards
4. System Alteration	4 System Alteration
5. Scope	5 New Services
6. Quality of Service	6 Forecasts and Capacity
7. Transfer Charge Calls	7 Provision of Information
8. New Services	8 Service Level Commitment
9. Forecasts and Capacity	9 BT Services
10. Provision of Information	10 Charges and Payment
11. CLI	11 Billing
12. BT Services	12 System Protection and Safety
13. Operator Services	13 Accommodation and Access
14. Charges and Payment	14 Review
14A. Artificial Inflation of Traffic	15 Determination
14B. Credit Management	16 Confidentiality
15. Billing	17 Force Majeure
16. System Protection and Safety	18 Limitation of Liability
17. Approved Attachments and Customer Equipment	18A Conduct of Indemnified Events
18. Numbering	19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9. Review	20 Assignment
20. Dtermination	21 Disputes
21. Confidentiality	22 Breach, Suspension and Termination
22. Force Majeure	23 Notices
23. Limitation of Liability	24 Entire Agreement
24.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5 Variations
25. Assignment	26 Waiver
26. Disputes	27 The Contracts(Rights of Third Parties) Act 1999
27. Breach, Suspension and Termination	28 Independent Contractors and Agency
28. Notices	29 Severability
29. Entire Agreement	30 Governing Law
30. Variations	
31. Waiver	
32A. The Contracts(Rights of Third Parties) Act 1999	

Telephony	Partial private circuit(PPC)
33. Independent Contractors and Agency 34. Severability 35. Governing Law SPECIFICATIONS Generic Electrical & Physical Interface Specification Generic C7 Signalling Interface Specification Generic Transmission Interface Specification Generic SDH Interface Specification ANNEXES Annex A Planning and Operations Annex B Billing and Payment Annex C Schedules Annex D Definitions Annex E Artificial Inflation of Traffic Annex F Credit Management	SPECIFICATIONS Generic Electrical & Physical Interface Specification Generic Transmission Interface Specification Generic SDH Interface Specification ANNEXES Annex A Planning and Operations Annex B Billing and Payment Annex C Schedules Annex D Definitions Annex E Service Level Agreement Annex F Migration, Re-Designation, Managed Conversion and Grandfathering

자료: BT Wholesale 홈페이지

〈표 3-12〉 BT와 국내 사업자의 유사 규정 비교: 접속용량설정

KT	BT Telephony
제12조(접속용량) ①접속제공교환기의 접속용량은 실측통화량에 여유율 30%를 감안하여 접속이용사업자가 산정한다. 다만, 최초 접속시의 접속용량은 접속요청사업자가 예측한 트래픽을 기준으로 양사가 합의하여 확정하며, 접속구간 및 구간별 접속용량은 별표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각 교환기별 접속용량은 DS-1급으로 산정하되, 접속용량이 1 DS-1 미만인 국소는 1 DS-1으로 산정하고 2DS-1 이상인 국소는 15회선 이상일 경우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9. FORECASTS AND CAPACITY 9.1 The Parties shall supply to each other forecasts in accordance with Annex A and as may be required in a Schedule. 9.2 The Parties shall order and provide Capacity in accordance with Annex A and as may be required in a Schedule. ANNEX A. Planning and Operations A1 Definitions A2 General A3 Network Information

KT	BT Telephony
<p>③양사는 접속용량에 대하여 실측통화량에 여유율 30%를 감안하여 반기별로 조정하되, 최초 접속구간은 1년동안 접속용량 조정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증설이 필요하거나 통화량의 급격한 변동으로 접속용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한다.</p> <p>④양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DS-1급 용량당 240만원의 위약금을 기준으로 해당금액을 일시불로 상대방에게 지불한다. 다만, 제3항의 반기별 정기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접속이용사업자의 일방적인 사유로 양사가 정한 접속제공시기에 해당 접속용량을 접속하지 않는 경우 접속이용사업자는 위약금의 전체를 접속제공사업자에게 지불</p> <p>2. 접속이용사업자가 개통일 이후 2년...</p> <p>3. 접속제공사업자의 일방적인 사유로 양사가 정한</p> <p>⑤제4항에서 정한 위약금은 접속제공과 관련하여 양사가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별표 2] 접속구간 및 구간별 접속용량</p>	<p>A4 Location of Switch Connections</p> <p>A5 Routing Principles</p> <p>A6 ISI Interconnect Link Architecture</p> <p>A7 Capacity Provision</p> <p>A8 Traffic Forecasts</p> <p>A9 Capacity Profiles and ACOs</p> <p>A10 Capacity Orders and Testing</p> <p>A11 Capacity Order Timescales</p> <p>A12 Numbering</p> <p>A13 Technical Review Meetings</p> <p>A14 Switch Testing</p> <p>A15 Transmission and Signalling</p> <p>A16 Performance Standards</p> <p>A17 Operations</p> <p>A18 Services</p> <p>Appendices</p> <p>A BT/Operator Network Information</p> <p>B Commercial</p> <p>C Data Management Amendments</p> <p>D Responsibilities for Traffic Types</p> <p>E STP(Signal Transfer Point) Working</p>

자료: KT-SKBB간 시내전화망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 및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서
BT Telephony Main RIO 및 Annex A.(http://www.btwholesale.com/pages/static/Pricing_and_Contracts/Reference_Offers/Telephony.html)

한편, BT의 망은 21CN으로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21CN에서 제공되는 Wholesale broadband connect, IPsteram connect, Ethernet MSIL 등 3개 서비스는 일반 거래조건 (Master Service Agreement; MSA)을 규정하고, 세부 서비스별로 필요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서비스별 RIO가 일반조건(General terms & Condition)과 부록으로 구성되는 것은 다른 도매서비스와 동일하다. 그러나 서비스별 일반조건은 MSA의 규정된 사항 중에서 서비스 별로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규정(서비스별 RIO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MSA의 조항을 적용)한다.

〈표 3-13〉 BT wholesale의 RIO 구성 예: Wholesale broadband connect

Document	Title	Issue	Date
General Terms & Conditions	General Terms & Conditions	2.1*	02/04/08
Annex 1	Annex 1: General Definitions Annex	2.1*	02/04/08
Annex 2	Annex 2: General Ordering and Provisioning Annex	1.1	20/12/07
Annex 3	Annex 3: General Operations and Maintenance Annex	1.1	20/12/07
Annex 4	Annex 4: General Billing and Payment Annex	2.1*	02/04/08
Annex 5	Annex 5: BT's Details Annex	1.1	20/12/07
Annex 6	Annex 6: CP's Details Annex	1.1	20/12/07

자료: BT Wholesale 홈페이지(http://www.btwholesale.com/pages/static/Pricing_and_Contracts/Reference_Offers/Wholesale_Broadband_Connect.html)

〈표 3-14〉 BT wholesale의 RIO 구성 예: IP Stream connect

Document	Title	Issue	Date
Service Schedule	Service Schedule	3.0	28/04/09
Appendix 1	Appendix 1: Definitions	3.0	28/04/09
Appendix 2	Appendix 2: Product Schedule	3.0	28/04/09
Appendix 2: Annex	Appendix 2: Product Schedule Annex	3.0	28/04/09
Appendix 3	Appendix 3: Service Level Agreement	3.0	28/04/09

자료: BT Wholesale 홈페이지(http://www.btwholesale.com/pages/static/Pricing_and_Contracts/Reference_Offers/IPStream_Connect.html)

〈표 3-15〉 BT wholesale의 MSA 및 세부서비스 구성항목 비교

MSA	Wholesale broadband connect	IPstream Connect
〈목차〉	〈목차〉	〈목차〉
1. INTERPRETATION AND INTERPRETATION	1. INTRODUCTION	1. INTRODUCTION & INTERPRETATION
2. COMMENCEMENT	2. COMMENCEMENT	2. COMMENCEMENT
3. PROVISION OF SERVICE	3. PROVISION OF SERVICE BY BT	3. PROVISION OF SERVICE BY BT
4. SUSPENSION AND TERMINATION	4. SUSPENSION AND TERMINATION	4. SUSPENSION & TERMINATION
5. CHARGES	5. CHARGES	5. CHARGES

MSA	Wholesale broadband connect	IPstream Connect
6. BT EQUIPMENT	8. ACCESS AND SITE REGULATIONS	8. ACCESS & SITE REGULATIONS
7. CONNECTION OF EQUIPMENT TO THE SERVICE	9. USE OF THE SERVICE	9. USE OF THE SERVICE
8. ACCESS AND SITE REGULATIONS	10. AMENDING THE MSA	10. AMENDING THE MSA
9. USE OF THE SERVICE	11. DISPUTES	11. DISPUTES
10. AMENDING THE MSA	13. INDEMNITIES	13. INDEMNITIES
11. DISPUTES	15. CONFIDENTIALITY	15. CONFIDENTIALITY
12. LIABILITIES	18. DEVELOPMENT /LAUNCH OF NEW SERVICE	18. the development/launch of a new service
13. INDEMNITIES	24. NOTICES	19. REVIEW
14. DATA PROTECTION		20. DETERMINATION
15. CONFIDENTIALITY		24. NOTICES
16. IP RIGHTS		APPENDIX 1: DEFINITIONS
17. FORCE MAJEURE		APPENDIX 2: PRODUCT SCHEDULE
18. THE DEVELOPMENT/ LAUNCH OF A NEW SERVICE		APPENDIX 3: SERVICE LEVEL AGREEMENT
19. REVIEW		
20. DETERMINATION		
21. THIRD PARTIES		
22. NOVATIONS		
23. ENTIRE AGREEMENT		
24. NOTICES		
25. SEVERABILITY		
26. INDEPENDENT CONTRACTORS AND AGENCY		
27. WAIVER AND REMEDIES		
28. LAW AND JURISDICTION		
ANNEX 1: DEFINITIONS		
ANNEX 2: ORDERING & PROVISIONING		
ANNEX 3: OPERATIONS & MAINTENANCE		
ANNEX 4: BILLING & PAYMENT		
ANNEX 5: BT'S DETAILS		
ANNEX 6: CP'S DETAILS		

자료: BT wholesale 홈페이지

BT Openreach는 세부 서비스별로 별도 RIO를 작성하며, 서비스의 내용, 네트워크 구조 및 기술적 요건 등 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서비스별 요금은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하고 있다. BT Wholesale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별 RIO에 SLA가 포함되어 있다.

〈표 3-16〉 BT Openreach의 RIO 사례: LLU

파일 형태	문서명	크기	발행일
	Main Body Issue 3.1	95 K	16/06/2008
	Part I Distat Location: Forecasts and Provision Issue 3.0	145 K	27/05/2005
	Part II Co-Mingling Issue 3.0	41 K	27/05/2005
	Part IIA Provision of Co-Location Issue 3.0	113 K	27/05/2005
	Part III Terms and Conditions of Licence Issue 3.0	86 K	27/05/2005
	Part IV - Contents Issue 3.0	19 K	27/05/2005
	Part IV Schedule 01-Internal Tie Cable Issue 3.0	161 K	27/05/2005
	Part IV Schedule 02-BT Provided External Tie Cable Issue 3.0	173 K	27/05/2005
	Part IV Schedule 03-BT Egress(Backhaul) Link Issue 3.0	165 K	27/05/2005
	Part IV Schedule 04-Operator External Tie Cable Pull-through Issue 3.0	170 K	27/05/2005
	Part IV Schedule 05-MDF Site Access Issue 3.0	195 K	27/05/2005
	Part IV Schedule 06-Metallic Path Facilities Issue 3.3	61 K	16/06/2008
	Part IV Schedule 07-Provision of Standby Power(“Essential Services Supply”) Issue 3.0	163 K	27/05/2005
	Part IV Schedule 08-Shared Metallic Path Facilities Issue 3.3	49 K	16/06/2008
	Part IV Schedule 09-BT Assisted Site Delivery Service(BASIS) Issue 3.0	182 K	27/05/2005
	Part V Definitions Issue 3.3	54 K	16/06/2008
	Part VI Service Levels and Fixed Compensation Issue 3.3	74 K	18/06/2008

자료: BT Openreach 홈페이지(<http://www.openreach.co.uk/orpg/products/llu/contracts/contracts.do>)

〈표 3-17〉 BT Openreach RIO 세부 구성내용: LLU v. WLR3

LLU의 일반조건	WLR3의 일반조건
1 Definitions and Interpretation	1. Interpretation
2 Commencement and Duration	2. Commencement and termination
3 Scope	3. Provision of the Service
4 New Services	4. Service management
5 Provision of Information	5. BT Equipment
6 Compliance	6. Connection of equipment to the Service
7 Interference with other's services	7. Access and Site regulations
8 BT General Powers	8. Use of the Service
9 System Protection and Safety	9.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0 System Alterations	10.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demnity
10A Specifications	11. Confidentiality
11 Billing	12. Charges, interest and deposits
12 Charges and Payment	13. Limitation of liability
13 Review	14. Force Majeure
14 Determination	15. Conduct of indemnified events
15 Confidentiality	16. Escalation and dispute resolution
16 Force Majeure	17. Changes to this Contract
17 Limitation of Liability	18. Transfer of rights and obligations
18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9. Entire agreement
19 Assignment	20. Notices
20 Disputes	21. Severability
21 Breach, Suspension and Termination	22. Law
22 Notices	Schedule 1 Definitions
23 Entire Agreement	Schedule 2 The Service
24 Variations	Schedule 3 Service Level Agreement
25 Waiver	
26 Independent Contractors and Agency	
27 Severability	
28 The Contracts(Rights of Third Parties) Act 1999	
29 Governing Law	

자료: BT Openreach 홈페이지

WLR3: <http://www.openreach.co.uk/orpg/products/wlr/wlr3/contracts.do>

LLU: <http://www.openreach.co.uk/orpg/products/llu/contracts/contracts.do>

나. 무선 전화계망 서비스

① NTT Docomo

NTT Docomo의 RIO는 총15장(86조)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칙, 접속설비의 범위, 협정체결의 절차, 표준 협정 기간, 협정체결의 해지, 접속형태, 접속의 일시 중단 등을 포함하며, 세부 서비스의 요금 및 산출식이 명시되어 있다.

〈표 3-18〉 NTT Docomo의 RIO 구성

제 1장 총칙	제1조 약관의 적용 제2조 약관의 변경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곧수회선(直收回線) 등 접속 사업자의 요금 및 기술적 조건 등
제 2장 접속하는 설비의 범위	제5조 표준적인 접속 개소 제6조 상호 접속점을 설치하는 목적 제7조 상호 접속점의 설치 장소	제8조 당사의 접속 대상 지역 제9조 접속에 의해 제공하는 기능
제 3장 협정의 체결 수속 등	제10조 사전 조사의 신청 제11조 사전 조사의 접수 및 순서 제12조 사전 조사의 회답 제13조 상호 접속점을 표준적인 접속 개소 이외의 개소에 설치하는 경우 취급 제14조 접속 신청 제14조의 2 접속 신청이 건져 제15조 접속 신청의 승낙 제16조 접속용 설비의 설치 또는 개수의 신청 제17조 접속용 설비의 설치 또는 개수의 신청의 승낙 제18조 개별 건설 계약의 체결 제19조 접속용 설비의 설치 또는 개수의 변경등 제20조 완성 통지 제20조의 2 접속용 설비의 소유권	제21조 접속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의 신청 제22조 접속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의 승낙 제23조 접속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계약의 체결 제24조 접속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의 중지 제25조 준용 제25조의 2 접속용 소프트웨어의 소유권 제26조 하자 제27조 당사가 실시하는 접속용 설비 등의 개정 제27조의 2 협정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접속용 설비 등의 이용 중지 등 제27조의 3 접속용 설비등의 제거 또는 전용 제27조의 4 천재지변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손상 제28조 그 외의 공사의 청구 제28조 그 외의 공사의 청구 제28조의 2 그 외의 공사의 승낙 제28조의 3 그 외의 공사와 관련되는 계약의 체결
제 4장 표준적 접속 기간	제29조 표준적 접속 기간 제29조의 2 시험의 실시	제29조의 3 이동 무선 장치와 관련되는 확인 시험의 실시 제30조 준용

제 5장 협정의 체결 · 해제 등	제31조 협정의 단위 제32조 협정상 지위의 이전 또는 승계 제33조 삭제 제34조 협정의 변경	제35조 협정 사업자가 실시하는 협정의 해제 제36조 당사가 실시하는 협정의 해제 제37조 협정의 소멸
제 6장 채무	제38조 비밀을 지킬 의무 제39조 필요 사항의 통지 제39조의 2 정보의 제출 제39조의 3 증명서류의 확인 제39조의 4 MVNO 서비스의 계약 수 단계의 제출 제40조 상호 협력	제40조의 2 특정 전자 메일 취급 제41조 유지 책임 제41조의 2 혼신 등의 방지 책임 제42조 협정 사업자의 절분책임 제43조 로밍 등과 관련된 양도의 승인 제43조의 2 제삼자에게 채권 양도 등 제43조의 3 계약 약관 규정의 승낙
제 7장 접속 형태	제44조 접속 형태	
제 8장 중요통신의 취급 방법	제45조 상호 접속 통신의 절단 제46조 상호 접속 통신 및 타사 상호 접속 통신의 제한	제47조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통신의 식별
제 9장 접속의 일시 중단, 정지 및 중지	제48조 접속의 일시 중단 제49조 접속의 정지	제50조 접속의 중지 제50조의 2 공사 또는 수속 등의 정지 및 중지
제 10장 요금 등	제51조 요금 등 제52조 접속 요금의 구분 제53조 종량제의 그물 사용료 등의 지불 의무 제53조의 2 정액제의 그물 사용료의 지불 의무 제54조 망 개조료의 지불 의무 제55조 공사비의 지불 의무 제56조 수속비의 지불 의무 제56조의 2 유니버설 서비스료의 지불 의무 제57조 종량제의 그물 사용료 등의 계산 방법 제58조 통신 시간의 측정 등	제59조 정액제의 그물 사용료 및 그물 개조료 및 유니버설 서비스료의 계산 방법 제60조 요금등의 지불 제61조 요금의 일괄 후불 제61조의 2 기한의 이익 상실제62조 접속 요금의 소급 적용 제63조 채권 양도 제64조 청구 금액에 불부호가 있는 경우 취급 제64조의 2 채무의 이행의 담보와 관련된 협의 신청 등 제64조의 3 채무의 이행의 담보 제65조 할증금 제65조의 2 삭제 제66조 연체 이자 제67조 채권양수

		제68조 끝수 처리
제 11장 기술적 조건	제69조 기술적 조건	
제 12장 손해배상	제70조 책임의 제한 제71조 해제 등의 경우 취급	제71조의 2 교통 또는 회선수가 괴리했 을 경우 취급 제72조 면책
제 13장 이용자에게 의 책임에 관한 사항	제73조 이용자 요금의 설정 제74조 이용자 요금의 청구 제75조 로밍등과 관련되는 특례	제76조 이용자 요금의 과금 제77조 이용자로부터의 불평 또는 고장 수리의 청구 등에 대한 대응 제78조 당사의 계약자 회선등의 제공 조건
제 14장 당사의 통신용 건물등에 있어서의 취급	제79조 당사의 통신용 건물등에 상호 접속점을 설치하는 경우 취급	제80조 접속 신청자등이 접속에 필요한 장치등의 설치 또는 보수를 실시하는 경우의 출입 제81조 공사 등의 제한
제 15장 잡칙	제82조 개별 계약 사업자에 대한 계약 자 정보의 제공 제82조의 2 위치 정보의 제공 제83조 양식	제84조 승낙의 한계 제85조 쌍무적 조건 제86조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취급
요금표	통칙 제1표 접속 요금 제1 망사용료 1. 적용, 2. 요금액수 제2 망개조료 1. 적용, 2. 요금액수(산출식, 접속용 설 비등을 개정 또는 이용 중지하는 경우 의 요금액수, 복수의 협정 사업자가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접속용 설비등 에 대해서, 일부의 협정 사업자가 그 이용을 중지하는 경우의 요금액수, 연 액 요금의 산정과 관련되는 비율)	제2표 공사비 및 수속비 제1 공사비 1. 적용, 2. 공사비의 액수(공사비, 산 출식, 작업단금) 제2 수속비 1. 적용, 수속비의 액수(수속비, 이외 의 수속비, 산출식)
기술적 조건집별표 부칙	1. 접속에 의해 제공하는 기능 2. 접속 형태	3. 양식

다. 인터넷망 상호접속(백본망 peering policy)

외국의 인터넷망 백본 접속 표준 계약은 인터넷 접속조건(peering policy)으로 제시되어 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의 경우 외국에서 규제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백본 제공사업자의 인터넷 접속조건(peer가 되어 무정산하는 조건)만 공개·운영 중이므로, 공개된 인터넷 접속조건에 따른 당사자 간 계약 포맷 및 계약 내용은 공개되고 있지 않다.

글로벌 백본 ISP들의 peering policy는 사업자별로 상이하나, 망 규모, 네트워크 운영, 라우팅 원칙 등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세부사항은 협정 당사자 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peer 조건의 공통 요구사항으로는 접속노드의 전국적 분포, 자기 지역분포의 50% 정도와 일치하는 커버리지 및 접속점 요건, 트래픽 교환비율이 1.5:1, 2:1의 범위에 위치, 일정 수준의 백본망 보유 등이 제시되어 있다.

〈표 3-19〉 인터넷 접속조건의 해외 사례

	구 분	내 용
C&W	일반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무정산: port, 서비스, 기타 비용 ○ 24시간 peering 담당자 대기 및 Network operation center 운영
	기반 필요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망 보유 ○ OC-48(2.5G) 전용회선 운용 ○ 전국 9개 이상 지역에 노드 운영 ○ 각 Hub는 타 IBP 2개 이상의 Hub와 연결 ○ 최소 DS-3급으로 4개 이상의 NAP과 연결
	트래픽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ering 최소 속도 단위는 155M ○ peering 최소 트래픽량은 45M ○ 트래픽 교환비율은 2: 1을 초과할 수 없음 ○ 트래픽 측정은 peering이 발생하는 모든 지점에서 측정하되 In/ Out 중 높은 것으로 결정함
	루팅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우트와 정책을 IRR(Internet Routing Registry)에 등록 ○ BGP4, CIDR을 적용하되 default route는 설정하지 않음 ○ 상호 AS 번호 외에는 수용할 수 없으며, 제3 가입자의 라우트는 공지하지 않음

	구 분	내 용
Level	일반원칙	○ 24시간 peering 담당자 대기 및 Network operation center 운영
	기본 필요 설비	○ 라우팅/혼잡 문제에 대비하여 강화경로(escalation path) 제공 ○ 최소 OC-48(2.5G) 규모의 백본 유지 ○ 최소 20개의 국제 망과 접속되어 있어야 함 ○ Level 3와는 최소 OC-12(622M)의 용량으로 상호접속
	트래픽 요구사항	○ 총 트래픽 교환 비율은 2:1을 초과할 수 없음
	라우팅 요구사항	○ 라우트, 라우팅 도메인 및 라우팅 정책을 IRR(Internet Routing Registry)에 등록 ○ 자신의 직접 고객 라우트만 공지(제3의 라우트 전송이 금지되며 위반시 차단 가능) ○ default route를 상대방으로 설정하지 않음 ○ 모든 접속점에서 동일한 AS번호를 제공
	계약적 요구사항	○ Level 3는 시장 및 트래픽 상황을 관찰하고 그에 따라 peering policy를 변경할 것임 ○ peering policy는 언제든지 Level 3의 재량에 의해 수정, 대체 및 중단 가능 ○ 이 policy는 guideline이며 계약은 개별적으로 체결
World com	상호접속 요구사항	○ 지리적인 범위: Worldcom의 지리적인 설비 커버리지의 50% 수준(현재 미국의 25개주, 유럽 9개 국가, 아시아-태평양 3개 국가), 미국 내에서 최소 9개 지역의 노드를 보유하는 설비분산이 필요 ○ 트래픽 교환비율은 1.5: 1을 초과할 수 없음 ○ 백본망 수용력: 미국의 Worldcom과 OC-48(2.5G) 전용회선 운용, 유럽의 Worldcom과 OC-3(155Mbps) 전용회선 운용, ASPAC Worldcom과 45Mbps 전용 회선 운용 ○ 트래픽 총량: 미국의 Worldcom과 600Mbps 이상, 유럽의 Worldcom과 45Mbps 이상, ASPAC Worldcom과 29Mbps 이상
	운영상의 요구사항	○ 상호간의 접속링크를 경유하는 원활한 트래픽 소통을 위하여 충분한 robustness, 수용력, 지리적인 분산을 유지해야 함 ○ 24×7 Network operation center 운영 ○ 각 인터넷망은 전송라우터로 next hop을 설정해야 함 ○ 상호간에 별도의 협약이 없다면, 최단경로 라우팅(shortest routing) 실행 ○ 각 인터넷망은 상호접속 해당지역 내의 non-transit 트래픽이나, 또는 해당지역 외의 트래픽은 전송하지 않음 ○ 단일회선의 정지가 트래픽 교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별도의 충분한 보완망(fully redundant network) 운영 ○ 각 인터넷망은 무정산 상호접속 협정에 우선하여 라우팅과 관련된 테스트 및 감사목적의 free Shell 또는 PPP 계정을 교환해야 함

	구 분	내 용
World com	운영상의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인터넷망은 요청시 2시간 내에 기술진을 교환하여, 라우팅 및 보안 이슈 뿐만 아니라 비요청 메일 및 망오용 제소 등에 응답함 ○ 트래픽 교환비율과 트래픽 총량의 산정을 위하여 상호접속 링크의 모든 트래픽을 산정하되, 이것이 불가능하면 단기적인 시험링크를 설립하고, 이것도 어려우면 대표표본에 근거하여 peak utilization을 측정 ○ 트래픽 교환비율과 트래픽 총량의 산정에서, 해당 트래픽은 무정산 기반의 상호접속이 요구되는 지리적 범위 내에 있는 양사의 인터넷 망과 그들의 고객에 한정되어야 함
	기타 고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사는 인터넷 상호협정 및 비밀노출 금지의 협정을 개시 ○ Part1의 요구사항은 무정산 협정의 요청 시에 충족되어야 함 ○ 모든 policy의 요구사항은 무정산 협정의 지속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며, 해당 policy의 충족여부는 주기적으로 재평가함 ○ Worldcom은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해당 Policy의 적정성 등을 모니터링하고 어느 시점에라도 재설정할 권한을 지님 ○ 무정산 상호접속의 요청은 E-mail에 의함

국내 사업자의 인터넷망 상호접속 협정서는 인터넷 접속조건을 포함하여 접속망 구성 및 운영, 접속료 산정 및 정산 원칙, 책임 및 업무 한계 등 음성망 상호접속 등과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⁴⁶⁾ 인터넷 접속조건의 적용범위는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독자적인 망 식별번호(AS번호)를 보유하고 BGP-4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L3 기반으로 접속하는 사업자로 규정하며, tier1 3사의 인터넷 접속조건은 기본적으로 통신망 규모(커버리지, 백본총량), 가입자 규모(초고속인터넷 가정 고객수, 인터넷전용회선 가입자수), 트래픽 교환비율로 구성된다.⁴⁷⁾ KT와 하나로텔레콤은 거의 유사하나, 사업모델이 상이한 LG데이콤은 두 사업자와 다른 측면이 존재하는데, 예컨대 LG데이콤은 가정고객수의 비중이 타사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커버리지는 전국단위 서비스의 수행 역량의 평가 지표로서 KT의 경우 노드수와 인터넷서비스제공 커버리지를 구분하여 평가, 하나로텔레콤의 경

46) 인터넷망 상호접속 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별첨1>을 참조하십시오.

47) peering policy의 공개 원칙을 규정(상호접속기준 제42조)하고 있으나, 공개의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우는 주요 노드수로 평가, LG데이콤은 노드수에 무려 40점의 높은 가중치를 부과하고 있다. 트래픽 교환비율은 KT 1:2 이내, 하나로텔레콤 1:2.5 이내, 데이콤은 1:1.5 이내로 정의하고 있다.

〈표 3-20〉 1계위 3사 인터넷망 접속조건 비교

구분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통신망 규모	인터넷서비스 제공 커버리지(15) 노드 수(10) 백본 총량(15)	커버리지(20) 트래픽처리용량(20)	노드수(40) 기간통신사업자간 연동트래픽 총량(10) 연동 BGP고객수(10)
	40	40	60
가입자수	초고속 가입자 수(25) 인터넷 전용회선 가입자 수(15)	초고속가입자수(25) 인터넷전용회선 가입자수(IDC가입자 포함)(15)	가정고객수(10) 인터넷전용회선수(10) IDC가입기관수(10)
	40	40	30
트래픽 교환비율	입출력 트래픽의 교환비율(20)	입출력 구분 없이 1: 2.5 이내(20)	입출력 트래픽 교환비율 1:1.5 이내(10)
	20	20	10

자료: 각 사 인터넷 접속조건

제 4 장 협정 신고/인가제도의 개선방향

1. 협정 신고/인가 제도 운영 개선

가. 제도 개선방향

상호접속 등의 협정 체결·변경·폐지의 신고/인가 시 현재 사업자들이 제출하는 서류는 주 협정서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핵심 내용이 포함된 부속합의서가 빠져있어 협정의 원칙인 동등성·적시성·투명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협정 인가/신고제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여 제공대가가 포함된 모든 부속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법 시행령 제 40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에서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을 기재한 서류’ 제출을 규정하고 있어, 대가가 포함된 모든 서류(부속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명백하다고 하겠다.

또한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상호접속 등에 관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부터, 신고/인가 신청된 협정의 심사기준은 상호접속 고시 제4조(접속의 기본원칙)에 규정된 동등성·투명성·적시성 등의 원칙 준수 여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동등성 판단 기준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동등성(비차별성) 기준의 경우 관련 경제이론, 해외 경쟁법·통신법의 심판결례,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등을 벤치마킹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세부 방법론을 도출함으로써 객관성과 합리성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WTO의 권고와 한미 FTA 규정 등을 참고하여(지배적 사업자의) 표준협정(RIO)의 웹공개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며 투명성 원칙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적시성과 관련해서는 이용사업자의 입장에서, 협정 체결 요청 시점에서 체결 완료시점까지의 기간이 동등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가·신고의 행정비용 절감 및 심사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 협정의 동등·적시·투명성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checklist로 표현하여 피규제자가 가부를 간단히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이용대가가 포함된 주협정 및 부속 합의사항별로 엑셀 sheet에 이용대가 협정 내용을 시계열로 표기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서류제출 의무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를 들어 매분기 초에 지난 분기에 체결된 모든 협정을 모아서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협정 인가/신고 절차를 차등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는데, 신고의 경우 사업자 자율로 거래조건 등에 관한 check-list만 작성하도록 하고, 인가의 경우 차별 가이드라인 등 인가 심사기준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나. 제도 개선(안)

(1) 협정 체결 및 협정 신고/인가 신청 기한

9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신고절차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실정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사업법 개정안을 감안하여, 협정 요청 후 90일 이내 협정을 체결하고 체결 후 30일 이내 방통위에 신고 및 인가를 신청하도록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34조의6:**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도매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생략>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계약 체결 지연 등의 이유로 사업법 개정안의 취지가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도록 한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 3항 신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정 체결 즉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경우 협정 체결 후 30일까지 서류 제출을 연장할 수 있다.

(2) 협정 신고/인가의 주체

협정체결 당사자 중 협정 체결을 요청받은 사업자(즉, 망 제공사업자)가 신고/인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망을 상호 제공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제출이 용이한 사업자가 신청하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인가대상 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인가 대상사업자가 인가 신청을 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된 사업법 상의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신설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법 제34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전기통신 설비의 제공·공동이용·도매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이하 상호접속 등)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접속 등을 상호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제출이 용이한 사업자가 신고할 수 있다. 단,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대상 사업자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신규·변경 협정의 신고 의무 부과(예외 불인정)

사업법 상 신고·인가 대상에 대한 예외가 없으며, 미신고·인가 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해 모든 협정의 신규·변경 등 사유발생 시 신고·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협정서는 대가·조건 등이 미비하여 변경사유가 적은 편이었으나, 향후 협정제도 개선 실행 시에는 협정 변경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의무제공 설비제공 협정 신고뿐만 아니라 의무제공 설비 외 설비의 제공(일반설비제공)에 대한 협정도 신고의 의무를 적용한다. 일반설비제공 중 전용회선의 제공 대가는 이용약관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용약관의 관련부분에 대한 정비(고속회선상품 추가, 대가 현실화 등)도 권고할 수 있다.

(4) 제출 서류의 내실화

협정서에 실질 대가·조건 등 기존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토록 하고 (부속합의 금지), 시행령 상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사업자에 통보한다.

〈표 4-1〉 협정 신고·인가 시 제출서류(안)

관련 근거	시행령 충족을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협정서 사본	- 협정서 사본(표준협정제안서 포함) - 협정의 간단한 요약
2. 지급 및 수령할 금액 및 그 정산방법을 기재한 서류	- 협정서 사본(기존 부속합의서 내용 포함) - 협정의 간단한 요약 - 정산 관련 서류
3. 상호접속 등의 조건 및 그 밖의 협정 비용을 명시한 서류	- 협정 자가 점검표 - 자가 점검표 중 가격동등성 판단을 위한 3년 간 대가 분석 자료 - 가격 차등 입증 자료 - 비가격 거래조건 입증 자료(예: 인터넷망 상호접속조건 및 부여 점수)
4. 상호접속 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 접속점의 위치, 기술기준 등을 명기한 도면
5. 신·구 협정을 대비한 서류	- 신·구 협정 대비표

또한, 협정 체결 사업자 스스로 협정의 원칙 및 고시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 점검표(Self Checklist)⁴⁸⁾를 마련하여 제출서류에 포함하도록 한다. 자가 점검표는 상호접속기준 등 고시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고시 적합성 점검표와 협정의 동등성·투명성·적시성 여부를 판단하는 대가 적합성 점검표로 구성한다. 이러한 서류 요건은 법 시행령 40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하도록 한다.

48) 고시 적합성 점검표와 대가 적합성 점검표의 양식은 별첨을 참조하시오.

〈표 4-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정안
<p>제40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① (생략)</p> <p>1. (생략)</p> <p>2.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정산방법과 협정의 시행방법을 기재한 서류</p> <p>3.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조건 및 그 밖에 협정의 비용을 명시한 서류</p> <p>4.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p> <p>5. 신·구협정을 대비한 서류(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p>	<p>제40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대가, 조건 및 그 정산방법과 협정의 시행방법을 기재한 서류</u></p> <p>3. <u>제33조의5제3항, 제33조의7제3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3제3항, 또는 제3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의 세부사항별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서류</u></p> <p>4. ----- -----내용을-----</p> <p>5. -----서류(유사한 협정에서 제2호에 따른 대가가 변동 또는 유지된 2년간의 추이를 나타내는 서류를 포함하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의 변경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관련 서류 중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p> <p>1. 제1항 제1호의 협정서 상의 대가를 적용하여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p> <p>2. 제1항 제1호의 협정서 내용의 변경없이 협정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p> <p>3. 기타 경미한 협정 변경의 경우</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정 체결 즉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경우 협정 체결 후 30일까지 서류 제출을 연장할 수 있다.</p>

현 행	개정안
<p>② 방송통신위원회는-----기준 등에 접한한 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p> <p>③ 방송통신위원회는-----설치된 것 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34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에 따른 신고는 <u>전기통신 설비의 제공·공동 이용·도매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이하 상호접속 등)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접속 등을 상호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제출 이용이한 사업자가 신고할 수 있다. 단,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대상 사업자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⑤ 방송통신위원회는 <u>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기준 등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 경우에는 심사를 간소화할 수 있다.</u></p> <p>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설치된 것 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p>

(5) 협정 신고/인가 심사 절차 차등

신고 협정의 경우 사업자가 자가 점검표를 제출하면, 형식요건(구비서류 충족 등)만을 확인한 후 신고 수리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사후적으로 문제발생시 금지행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인가 협정은 사업자가 제출한 자가 점검표와 동일한 심사기준으로 사업자 제출내용을 검토, 심사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되, 향후 인가 의결을 위원회 서면결의로 가능하도록 인가절차 간소화를 추진(훈령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 협정 신고/인가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 마련

가. 협정 신고/인가 절차 및 심사 가이드라인

(1) 목적, 적용범위 및 원칙

(가) 목적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사업법 제34조의6(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및 사업

법 시행령 제40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신고 등)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 체결 및 동 협정의 방송통신위원회 신고/인가 시, 구비서류, 신고/인가 절차, 심사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나) 적용 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 및 모든 부속 합의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다) 협정의 신고/인가 절차 및 심사의 원칙

① 관련 기준에의 내용 적합성 여부 심사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이 이용자의 편의 및 통신사업의 효율성 증진에 부합되는 지 여부에 대해 심사한다. 협정은 동등, 투명, 적시성의 원칙에 따라 부당한 차별 없이 합리적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협정 체결 시 이용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준에의 세부사항별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서류의 사업자 자율 작성 제출 및 필요시 보완 제출

협정서 사본 등 (개정) 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반 서류는 i) 협정의 요약표(유사 거래에 대한 최근 2년간의 대가 변동 추이를 포함), ii) 협정 원칙 이행 점검표(동등성/적시성/투명성 checklist), iii) 고시 적합성 점검표 등을 포함한다.

③ 협정 신고/인가 심사 절차의 차등

신고 대상 협정의 경우, 사업자의 관련 구비서류 제출 등 형식요건만 심사·확인 후 신고 수리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사후적으로 문제 발생 시 금지행위의 적용 대상으로 한다.

신고(申告): 사인(私人)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행정청에 의한 실질적 심사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며, 신고의 요건은 ①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없을 것 ②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③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경우 행정청은 의무적으로 수리하여야 함

인가 대상 협정의 경우, 구비서류 제출 등 형식요건 심사와 함께 차별성,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통해 협정의 내용 적합성을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향후 인가 의결을 위원회 서면 결의로 가능하도록 인가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한다.

인가(認可): 행정청이 타자의 법률행위를 동의로써 보충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상호접속, 공동사용 등이 기준에 적합하게 체결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함

(2) 협정 신고/인가 심사 절차

(가) 협정의 신고/인가 신청 기한

사업법 제36조의4 및 동 법 시행령 제40조(개정안)에 따라 협정 체결 즉시 당해 협정을 신고/인가 신청하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할 경우 당해 협정의 신고/인가 신청을 협정 체결 후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나) 신고/인가 신청 당사자

법 제34조의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전기통신 설비의 제공·공동이용·도매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이하 상호접속 등)을 요청 받은 사업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접속 등을 상호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제출이 용이한 사업자가 신고할 수 있다. 단,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대상 사업자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련 제출 서류

협정의 신고/인가 신청 시 시행령 제40조의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

하는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협정서 사본, 부속합의서 사본 등 모든 계약 문서: 이용 수량, 요금표 등 제공 대가, 할인율, 기타 비가격적 거래조건 등 당해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
- 협정의 요약표: 협정체결 요청일, 체결일, 협정 지속기간, 대상설비, 요금, 수량 등 포함(별첨 양식 참조), 최근 2년간 동일 유형의 협정 체결 사항 포함
- 협정 원칙 이행 점검표(동등성/적시성/투명성 checklist) 및 고시 적합성 점검표(별첨 양식 참조)
- 점검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체 가격분석 자료:
 - 거래 용량(또는 수량), 거래기간, 거래 시점 등의 관점에서 일정규모 이상 (eg. 10%)의 가격차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하 분석예시 참조)
 - 가격차등이 있는 경우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협정의 내용을 나타내는 도면: 접속점의 위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자료, 의무제공 대상설비 및 상호접속대상설비 현황 및 여유율 현황 포함
- 신규 협정 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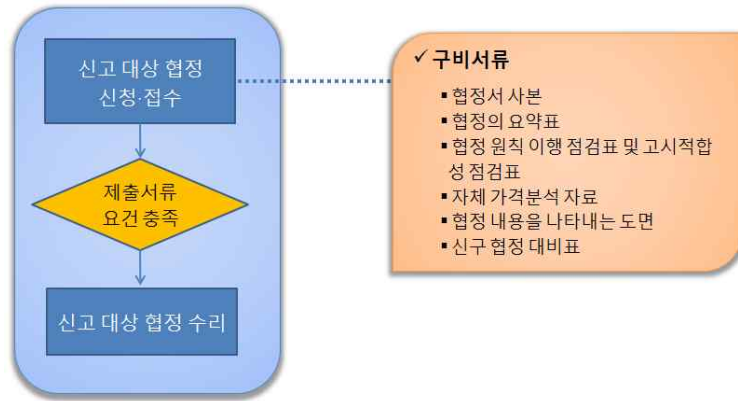
(3) 신고 심사 절차

신고 대상 사업자는 협정서 사본, 협정의 요약표, 협정 원칙 이행 점검표 및 고시 적합성 점검표, 점검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체 가격 분석 자료, 기타 거래관련 증빙 서류를 협정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여 방통위에 신고한다.

단, 기 신고된 협정과 동일한 상품의 거래가 반복되거나, 단순히 협정의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협정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사업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변동된 사항만을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고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1) 신고 서류의 구비 여부, 2) 동등·투명·적시, 합리성 등 협정 체결 원칙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점검표를 확인 후 신고 협정을 수리한다. 단, 자료 누락 또는 추가적인 보충 분석 필요 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림 4-1) 신고 심사 절차



(4) 인가 심사 절차

인가 대상 사업자는 당해 협정의 협정서 사본, 협정의 요약표, 협정 원칙 이행 점검표 및 고시 적합성 점검표, 점검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체 가격 분석 자료와 기타 거래관련 증빙 서류를 협정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여 방통위에 신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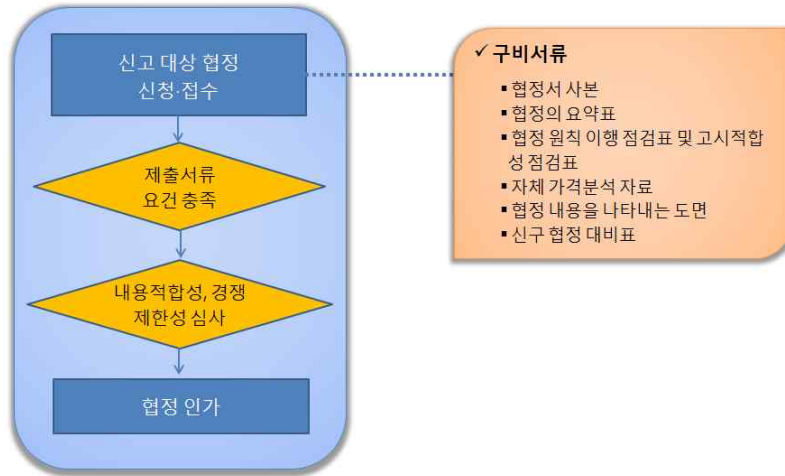
단, 기 인가된 협정과 동일한 상품의 거래가 반복되거나, 단순히 협정의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협정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사업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변동된 사항만을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고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1) 제출 서류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2) 동등·적시·투명·합리성 등 관련 기준에의 내용 적합성 여부를 사업자가 제출한 자가 점검표와 동일한 심사기준으로 사업자 제출 내용을 심사하며, 3) 당해 협정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해 심사하여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인가 심사 과정에서 자료 누락 또는 추가적인 보충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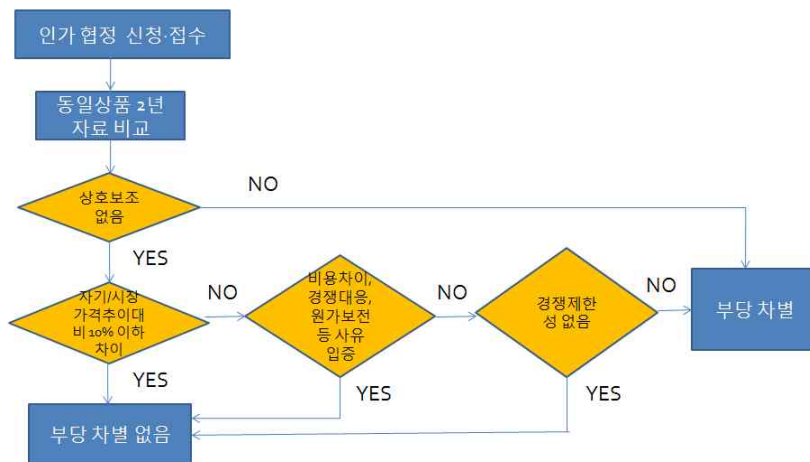
※ 인가 심사기간, 인가 심사 연장 기간(사유 포함) 등 time line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내용적합성/경쟁제한성 심사 및 의결 주체에 대한 결정도 필요하다.

(그림 4-2) 인가 심사 절차



동등성 심사 및 경쟁제한성 심사는 [그림 4-3]의 흐름도에 따라 실시한다. 동일상품 판단, 가격/비가격 차등 분석, 정당성 사유 판단은 협정 이행 자가 점검표의 내용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심사한다.

(그림 4-3) 동등성(부당한 차별) 심사 및 경쟁제한성 심사 흐름도



경쟁제한성은 당해 협정의 관련 시장 확정, 확정된 동 시장의 경쟁상황평가 결과 분석과 당해 협정 체결·이행으로 인한 경쟁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단, 당해 협정의 거래 규모가 미미한 경우에는 경쟁제한성 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나. 부당한 차별 판단 기준 제정

(1) 부당한 차별의 기준

경제적 효율성 관점(경쟁제한성)에서 사업자간 협정에 있어 차별에 의한 경쟁제한은 당해 협정에 의해 제공되는 도매서비스(예: 상호접속)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primary-line injury와 동 도매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최종 전기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secondary-line injury로 구분된다.

형평성 관점에서는 일정 기간(예: 평균가입기간, CEO 임기 등)에 걸쳐 한 이용계층으로부터 얻는 수익이 서비스 제공비용보다 낮아 적자가 발생하면서 서비스 전체적으로는 후자를 시현한다면 이 이용계층은 다른 이용계층을 보조하는 것으로서,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정한 협정 체결·이행 가이드라인

— 부당한 차별 기준 —

1. 일반적으로 동일한 상품을 차별적인 대가/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은 지불의사가 낮은 이용자를 구매계층에 포함시킴으로써 거래규모 확대 등 효율성 증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2. 그러나 경쟁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시장에서는 경쟁의 주 타깃이 되는 이용자 그룹에 대한 (원가 이하의) 선별적 차등 할인을 통해 경쟁사 배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 [1선시장(primary-line) 손상]
3. 또한 (수직통합형)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소매 서비스의 투입물로 이용되는 도매 상품의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는 투입물 접근 제한에 의한 경쟁사 봉쇄, 가격압착 등의 수단으로 작용하여 관련 소매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2선시장(secondary-line) 손상]

※ 예: 인터넷 상호접속 협정의 경우 인터넷 상호접속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은 1선 가격차별이며, 인터넷 상호접속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인터넷 가입자 접속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차별은 2선 가격차별

4. 이용자간 상호보조를 유발하는 차별은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5. (최종 통신서비스의 투입물로 이용되는 상호접속 등의 협정에 있어 부당한 차별은 상기한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 제1호(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에 관련된 시행령 별표 관련규정에 따라 상호접속 등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간에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6. 차별의 부당성 여부는 일차적으로 상기한 경쟁제한성과 이용사업자간 상호보조를 기준으로 판단되나, 비용의 차이 등 차별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차별에 의한 시장규모의 확대,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차별이 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7. 차별은 가격 뿐 아니라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8. 가격은 이용사업자가 제공사업자에게 실제 지불하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여기에는 할인율 등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용조건이 포함된다. 협정의 대상이 되는 상품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 차별의 정당한 사유

9. 다음 각 목에 해당됨이 입증되는 경우 차별은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가. 차별이 거래규모 차이에 따른 비용차이를 적절히 반영(단위당 제공대가는 단위 비용에 일정비율의 mark-up을 더한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나. 차별이 거래기간 차이에 따른 비용차이를 적절히 반영(장기계약은 제공사업자의 단기계약의 마케팅 비용 절감, 재무적 안정성 제고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다. 차별이 제공사업자의 다른 서비스/상품을 자발적으로 동시에 구매하는 데 따른 범위의 경제, 거래비용의 감소 등 경제적 효율성을 적절히 반영
 - 라. 차별이 이용사업자 및 이용자의 수, 통신 이용량 등 통신시장 규모 확대에 기여했음이 입증되는 경우 상기한 경쟁제한적/상호보조적 차별 조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마. 대가를 차등적용하지 않고는 적정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함(매물적 고정비용 규모/비중이 큰 경우 단일 수준의 대가로는 총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음)
- 바. 표준협정과 다르게 적용한 대가의 총규모가 당해 협정의 거래규모(표준협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의 5% 이하
- 사. 기타 차별의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

□ 경쟁제한적 차별의 기준

10. 차별이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가. 차별로 인해 관련 1선시장에서의 경쟁자 또는 협정의 상대방이 속한 2선시장의 경쟁자가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나. 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차별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쟁사업자 배제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 제공원가(직접비용 등 장기적인 회피가능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를 하회하는지 여부
 - 라. 차별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 여부. 일회성의 가격차별은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상당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수록 경쟁제한효과가 커질 수 있다.
 - 마. 차별에 의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협정 상대방이 제공 사업자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를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다면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11.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억원 미만인 경우 경쟁제한성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 이용사업자간 부당한 상호보조 판단 기준

12. 가장 많은 우대가 적용된 이용사업자로부터 장기적으로 회피가능한(직접적 제공 비용을 포함한다) 비용을 회수할 수 없으면 이용사업자간 상호보조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대가 차별의 기준 마련

협정 원칙 이행 점검표에서는 협정의 대가를 사업자간 합의로 정한 경우, ‘10% 규칙(Rule)’을 적용하여 사업자간 가격차별 여부를 1차적으로 약식심사하고, 아닐 경우 사업자가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10% 범위 내 예외적용의 예로는 최초 결합 판매 인가지침에서 10%할인은 요금 인가 시 심사면제, 공정거래위원회 경품고시에서 10% 경품제공은 부당한 경품으로 보지 않는 사례 등이 있다.

다. 부당한 차별 판단을 위한 상호보조 측정방법 개발

(1) 기본 개념

일반적으로 이용자 그룹 간 가격차별(경품, 단말기 보조금 차등 제공 포함)은 지불의사에 비례하여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지불의사가 낮은 이용자까지도 구매가 가능하게 하므로 시장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각 이용자 그룹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이용자간 차별에도 불구하고 문제되지 않으나, 서비스 전체로는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동 서비스의 특정 이용자 그룹으로부터(중장기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면 다른 이용자들이 이 이용자 그룹을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서, 보편적 서비스 의무이행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

(2) 상호보조 판정 방법

단말기보조금/경품 지급으로 n명의 가입자 유치를 가정하면, “단말기보조금/경품 지급액+가입기간(평균 t개월)중 발생하는 비용 \geq 예상수익($=t \times n \times \text{ARPU}$)”이 성립하면 타이용자가 상호보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입자 1인당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으로는 i) 방식 1: 완전배부원가(FDC) 방식 \Rightarrow 총괄원가 \div 총가입자수, ii) 방식 2: 증분원가(incremental cost) 방식 \Rightarrow 신규가입자 n명 유치를 위한 증분비용 \div n, iii) 방식 3: 증분원가 대용치(proxy) 1 \Rightarrow [총괄원가 - (중단기 고정비용=망운영비전체+일반관리비+광고비)] \div n, iv) 방식 4: 증분원가 대용치(proxy) 2 \Rightarrow [총괄원가 - (중단기 고정비용=가입자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을 제외한 망운영비+일반관리비+광고비)] \div n, v) 방식 5: 증분원가 대용치(proxy)

3 ⇒ {총괄원가 - (중단기 고정비용 = 가입자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을 제외한 망 운영비중 + 일반관리비 + 광고비)} ÷ n 등이 있을 수 있다.

방식 1의 완전배부원가에는 단기간에 발생하는 가입자수 증가와 비례관계가 매우 낮은 망운영비용, 일반관리비용, 광고비용 등이 포함되므로 경품/단말기 보조금과 같은 특정 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데는 부적절한 측면이 많다(원가가 과대계상되므로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

방식 2의 경우, 증분원가는 영업보고서나 일반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항목으로부터 추출하기가 매우 어렵고, 일정기간(예: 2009년 상반기) 중 지급된 단말기 보조금이나 경품 신규가입으로 인하여 유치된 가입자들(수만명 단위)이 직접 유발하는 비용(경품/보조금 비용, 개통비용, 대리점에 지급되는 장려금, 과금비용 등 판매영업비에 국한)을 사업자 협조를 통해서만 식별 가능할 수 있다.

방식 3은 상기한 방식으로 증분원가를 산출하기에 앞서 영업보고서 상 총괄원가에서 신규가입자 수만명 추가로 인해 변동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비용요소(망운영비, 일반관리비, 광고비)를 차감한 부분을 당해 신규가입자 수로 나눈 수치를 가입자 1인당 증분원가 대용치(proxy)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방식 4의 망운영비의 경우 2~3년 기간에 걸쳐 가입자 증가분을 반영하여 증가될 수 있으므로 매년 전년대비 망운영비 증가분과 가입자 증가분 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산출하여, 계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경우 가입자 1인 증가에 따른 망이용비용 증가분을 가입자 모집 1인당 증분비용에 포함한다.

방식 5는 접속원가가 장기증분원가 방식으로 산정되었다는 전제 하에 가입자 1인당 접속원가를 망 관련 증분비용으로 간주해 볼 수 있다.

(3) 상호보조 측정 사례

① 방식 1: 완전배부원가(FDC) 방식

구 분	SKT	KTF	LGT	계
월평균매출액(A=①÷②÷12월)	☒	☒	☒	☒
총매출액(①)	☒	☒	☒	☒
평균가입자수(②)	☒	☒	☒	☒
월평균비용(B=③÷④÷12월)	☒	☒	☒	☒
총괄원가(③)	☒	☒	☒	☒
단말기보조금(④)	☒	☒	☒	☒
유지비용(③=①-②)	☒	☒	☒	☒
평균가입자수(④)	☒	☒	☒	☒
보조금 추정치(①+②×③)	☒	☒	☒	☒
약정보조금(①)	☒	☒	☒	☒
판매촉진비(②)	☒	☒	☒	☒
보조금전이비율(%)	☒	☒	☒	☒
유지기간 평균이익(①×②)	☒	☒	☒	☒
월평균이익(①=A-B)	☒	☒	☒	☒
유지기간(개월)	☒	☒	☒	☒

주: 자료의 보안성을 고려하여 수치를 표시하지 않음

② 방식 3: [총괄원가- (중단기고정비용=망운영비전체+일반관리비+광고비)] ÷ n=

판매관련 증분비용 ÷ n = [광고비외판촉비+고객서비스기능비용] ÷ n

구 분	SKT	KTF	LGT	계
월평균매출액(A=①÷②÷12월)	☒	☒	☒	☒
총매출액(①)	☒	☒	☒	☒
평균가입자수(②)	☒	☒	☒	☒
월평균 판매증분비용(B=③÷④÷12월)	☒	☒	☒	☒
판매관련 증분원가(③)	☒	☒	☒	☒
평균가입자수(④)	☒	☒	☒	☒
유지기간 평균이익(①×②)	☒	☒	☒	☒
월평균이익(①=A-B)	☒	☒	☒	☒
유지기간(②)	☒	☒	☒	☒

주: 1. 판매관련 증분비용=광고비외판촉비+고객서비스기능 비용

2. 자료의 보안성을 고려하여 수치를 표시하지 않음

③ 방식 4: [판매관련 증분비용+네트워크 증분비용] ÷ n

구 분	SKT	KTF	LGT	계
월평균매출액(A=①÷②÷12월)	☒	☒	☒	☒
총매출액(①)	☒	☒	☒	☒
평균가입자수(②)	☒	☒	☒	☒
월평균 판매증분비용(B=③÷④÷12월)	☒	☒	☒	☒
판매관련 증분원가(③)	☒	☒	☒	☒
평균가입자수(④)	☒	☒	☒	☒
네트워크 월평균 증분비용(C)	☒	☒	☒	☒
유지기간 평균이익(①×②)	☒	☒	☒	☒
월평균이익(①=A - (B+C))	☒	☒	☒	☒
유지기간(개월)	☒	☒	☒	☒

주: 1. 네트워크 증분비용은 영업보고서상 연도별 네트워크 비용증분과 증분가입자 수를 단순 회귀분석함(네트워크 증분비용=설비운영비용+설비사용료)

2. 모든 사업자의 가입자당 네트워크 증분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

3. 자료의 보안성을 고려하여 수치를 표시하지 않음

④ 방식 5: [판매관련 증분비용+접속원가] ÷ n

구 분	SKT	KTF	LGT	계
월평균매출액(A=①÷②÷12월)	☒	☒	☒	☒
총매출액(①)	☒	☒	☒	☒
평균가입자수(②)	☒	☒	☒	☒
월평균 판매증분비용(B=③÷④÷12월)	☒	☒	☒	☒
판매관련 증분원가(③)	☒	☒	☒	☒
평균가입자수(④)	☒	☒	☒	☒
가입자당 월평균 접속원가(C)	☒	☒	☒	☒
유지기간 평균이익(①×②)	☒	☒	☒	☒
월평균이익(①=A - (B+C))	☒	☒	☒	☒
유지기간(개월)	☒	☒	☒	☒

주: 1. 가입자당 접속원가를 네트워크 증분비용의 proxy로 이용. 단, 자료제약상 가입자당 접속원가는 2006년도 수치임(네트워크 증분비용=가입자당 접속원가÷네트워크 원가÷평균가입자수)

2. 자료의 보안성을 고려하여 수치를 표시하지 않음

3. 표준협정제안서 작성 · 공개

가. 제도 개선방향

(1) RIO 작성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설비제공, 상호접속 등 협정에 필요한 표준협정제안서(RO: Reference Offer)를 작성하여 협정체결 요청사업자에 동일하게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이 때, 표준협정제안서는 각종 협정에 필요한 절차, 기준 및 제공요율 등이 기재된 제공지침과 협정서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사업자가 협정대가 등을 예측할 수 있어 사업자간 차별을 예방할 수 있다.

(2) RIO 공개

국제협상 준수를 위해 시장지배적사업자(KT, SKT)의 경우 상호접속제공지침(RIO)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이 때, 상호접속제공지침은 상호접속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상호접속에 필요한 설비 · 정보제공에 대한 사항도 포함한다.

나. RIO 작성 가이드라인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RIO에 포함될 필수사항을 식별한다. 방법으로는 ITU RIO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별 RIO에 포함될 필수 항목을 식별하되, 국내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특히 ITU 가이드라인이 유선망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유/무선망간 차별성을 반영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RIO 포함사항	세부항목
상호접속의 범위 (Scope of Interconn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접속 범위의 기술 및 접속의 목적 – 접속범위 명시, 접속 아키텍처(접속 도면 포함)
접속점(Point of Interconnection) 및 접속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속점(PO i) 및 관련된 설비 명세 – 특정 POI 설치 위치, 접속을 위한 네트워크 설비 기술, 수용능력(capacity) 및/또는 트래픽 필요조건, 세부 기술 명세(specification) ○ 신호 접속 – 신호망 체계 또는 표준, 신호 POI 위치, 기술적 인터페이스 명세, 신호 접속 아키텍처 도표 등

RIO 포함사항	세부항목
네트워크 등 설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및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 교환 및 여유용량 예측 관련 상호 통지 요건, 주기적인 망 계획 보고 ○ 설비 주문(ordering)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담당 명시, 주문 포맷 및 절차, 신속한 업무처리 절차, 사업자 전환 고객을 위한 상호 협조(co-ordination) 프로세스, 주문 확인 및 주문 거절 절차, 적시 통보, 부가 요금 통보 등 - 영업 및 정보 보안(confidentiality) 의무 요건 및 정보보호 절차, 정보의 반경쟁적 유용금지
트래픽 측정 및 라우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래픽 측정 책임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 사의 책임기술, 측정 및 보고 절차(과금 절차도 명기) - 이상 트래픽 라우팅을 위한 규칙
설비공유 (Infrastructure Sharing) 및 병설 (collo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공유 절차 및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 관로 등의 이용가능성, 용량 산정절차, 설비의 가격(price) 및 /또는 원가계산 방법, 부대 서비스, 손해보험 및 배상 규정 등 ○ 병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설 가능 장소, 이용 가능 공간 및 절차, 확장 공간의 예약 - 가격 및/또는 원가계산 방법, 부대 서비스, 보안 및 접속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과금(Bill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금 조정 및 책임 ○ 과금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속 정산을 위한 과금 매체, 과금 출력의 생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정산자료의 보관 기간 등 ○ 지불 조건(terms and condi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금 금액 및 관련 요금, 지불 계약 조건, 납기 후 지불시 불이익(penalty) 포함 ○ 과금 분쟁 및 화해(reconciliation)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금 문의 및 조정 세부사항, 과금 분쟁의 고지, 최초해결 절차, 최종 해결
서비스/성과 품질 및 문제점(trouble)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품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성과 표준은 부록에 명기 ○ 네트워크 테스트 및 유지보수 ○ 문제사항 보고(trouble reports) ○ 시스템 보호 및 안전성 측정

RIO 포함사항	세부항목
상호교환 (interchange) 및 취급 (treatment)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환될 자료 목록 ○ 고객 정보의 접근 및 사용 ○ 사업자 정보의 접근 및 사용
동등 접속(Equal Access) 및 고객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등 접속 절차
부수적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환원서비스(operator assist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처리 및 과금 절차 포함 ○ 다른 부수적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번호부에 가입자 명부 기입, 과금 및 정보 삽입, 유지보수 서비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재해 등(force majeure), 계약의 위반시 적용될 페널티, 법적 해석, 분쟁 해결, 계약 기간 및 계약 갱신 관련 사항, 계약 조건의 변경 절차

식별된 RIO의 각 항목을 기준으로 사업자별로 RIO를 작성하되, 국내 사업자의 서비스별 약관 중 ITU의 표준 항목에서 누락된 사항은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해외 사업자의 RIO 내용을 참고하여 해외 사업자의 RIO와 유사한 수준의 체계성, 구체성, 명시성이 확보되는 기술방식을 권고한다. 즉, 현행 국내 서비스별 협정의 ‘사업자간 추후 협의’ 사항 중 사전적으로 식별가능한 사항은 가능한 구체화하도록 한다.

RIO의 구성방식은 ‘일반조건+세부 서비스별 추가 조건’ 또는 ‘세부 서비스별 별도 약관’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RIO가 사전에 정한 필수 포함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특정 조항이 누락된 경우 이유를 소명하도록 한다. RIO 필수항목이 정해지면 별도의 checklist를 통해 당해 사업자의 RIO가 필수항목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지, 내용이 적정한지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RIO 내용의 적정성은 이용사업자의 이의제기를 통해 cross-check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표 4-3〉 BT와 국내 사업자의 유사 규정 비교: 접속용량설정

KT	BT Telephony
<p>제12조(접속용량) ① 접속제공교환기의 접속용량은 실측통화량에 여유율 30%를 감안하여 접속이용사업자가 산정한다. 다만, 최초 접속시의 접속용량은 접속요청사업자가 예측한 트래픽을 기준으로 양사가 합의하여 확정하며, 접속구간 및 구간별 접속용량은 별표2와 같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각 교환기별 접속용량은 DS-1급으로 산정하되, 접속용량이 1 DS-1 미만인 국소는 1 DS-1으로 산정하고 2DS-1 이상인 국소는 15회선 이상일 경우 반올림하여 산정한다.</p> <p>③ 양사는 접속용량에 대하여 실측통화량에 여유율 30%를 감안하여 반기별로 조정하되, 최초 접속구간은 1년동안 접속용량 조정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증설이 필요하거나 통화량의 급격한 변동으로 접속용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한다.</p> <p>④ 양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DS-1급 용량당 240만원의 위약금을 기준으로 해당금액을 일시불로 상대방에게 지불한다. 다만, 제3항의 반기별 정기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접속이용사업자의 일방적인 사유로 양사가 정한 접속제공시기에 해당 접속용량을 접속하지 않는 경우 접속이용사업자는 위약금의 전체를 접속제공사업자에게 지불</p> <p>2. 접속이용사업자가 개통일 이후 2년...</p> <p>3. 접속제공사업자의 일방적인 사유로 양사가 정한.</p> <p>⑤ 제4항에서 정한 위약금은 접속제공과 관련하여 양사가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별표 2] 접속구간 및 구간별 접속용량</p>	<p>9. FORECASTS AND CAPACITY</p> <p>9.1 The Parties shall supply to each other forecasts in accordance with Annex A and as may be required in a Schedule.</p> <p>9.2 The Parties shall order and provide Capacity in accordance with Annex A and as may be required in a Schedule.</p> <p>ANNEX A. Planning and Operations</p> <p>A1 Definitions</p> <p>A2 General</p> <p>A3 Network Information</p> <p>A4 Location of Switch Connections</p> <p>A5 Routing Principles</p> <p>A6 ISI Interconnect Link Architecture</p> <p>A7 Capacity Provision</p> <p>A8 Traffic Forecasts</p> <p>A9 Capacity Profiles and ACOs</p> <p>A10 Capacity Orders and Testing</p> <p>A11 Capacity Order Timescales</p> <p>A12 Numbering</p> <p>A13 Technical Review Meetings</p> <p>A14 Switch Testing</p> <p>A15 Transmission and Signalling</p> <p>A16 Performance Standards</p> <p>A17 Operations</p> <p>A18 Services</p> <p>Appendices</p> <p>A BT/Operator Network Information</p> <p>B Commercial</p> <p>C Data Management Amendments</p> <p>D Responsibilities for Traffic Types</p> <p>E STP(Signal Transfer Point) Working</p>

자료: 1. KT-SK브로드밴드간 시내전화망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 및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서
 2. BT Telephony Main RIO 및 Annex A.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기간통신망 이용 관련 협정 현황 및 불공정 행위의 유형에 대해 사업자의 협정서/부속합의서와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하고, 망 이용 계약에서 이슈가 되는 동등성을 심사하기 위한 차별기준 및 상호보조 측정에 대한 해외사례를 검토하였으며, 협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협정제안서(RIO) 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협정 신고/인가제도의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협정 신고/인가 시 가격 및 비가격 조건에 대한 차별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동등성 심사 점검표, 부당한 차별기준, 부당한 상호보조의 측정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협정 체결 및 협정 신고/인가 신청 기한, 협정 신고/인가의 주체, 모든 신규·변경 협정의 신고 의무 부과 원칙, 협정 신고/인가 시 제출 서류의 내실화, 협정 신고/인가 심사 절차 차등화 등 협정 신고/인가제도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 개정안을 도출함으로써 관련 정책 추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제도적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하게 운영되거나, 투명성이 부족했던 현 협정 신고/인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기간통신망 이용 관련 협정의 투명성 확보와 계약 조건의 동등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이상규 외(2006), 「통신서비스 가격차별」, 『정보통신정책연구』 제13권 제2호 pp.109~152.
이상규·김정현 외(2005), 『통신서비스에서의 가격차별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05-13, 2005. 12.

해외 문헌

- 일본 총무성·공정취인위원회, 「전기 통신 사업 분야의 경쟁 촉진에 관한 지침」,
ACCC(2008), “Assessing cross-subsidy in Australia Post 2006-7”, 2008. 4.
Baker, J. B.(2003), “Competitive price discrimination: the exercise of market power
without anticompetitive effects(comments on Klein and Wiley)”, Antitrust law
Journal Vol. 70.
Canadian Bureau of Competition Policy(1993), Price Discrimination Enforcement Guidelines
[available at <http://www.competitionbureau.gc.ca/eic/site/cb-bc.nsf/eng/01810.html>]
Carlton, D. & Perloff, J.(1999), Modern Industrial Organization, Addison-Wesley Longman.
EEC(1998), “Notice on the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rules to access agreements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framework, relevant markets and principles”, EEC
98/C265/02.
FAULHABER, G. R. “Cross-Subsidization: Pricing in Public Enterpris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5, pp.966~77.
Hovenkamp, Herbert(1999), Federal Antitrust Policy: The law of competition and its
practice, Hornbook Series(2nd edition), pp.565~581

- ITU(2000),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s Handbook, Module5.
- Kwoka, J. E.(1984), "Output and Allocative Efficiency under Second-Degree Price Discrimination," *Economic Inquiry*, Vol. 22, pp.282 ~ 286.
- Levine, M.E.,(2002), "Price discrimination without market power", *Yale Journal of Regulation*, Vol. 19, pp.1 ~ 36.
- Milgrom, P.(1989), "An Essay on Price Discrimination", in *The Economics of Imperfect Competition and Employment: Joan Robinson and Beyond* edited by George Feiwel, New York: Macmillan and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pp. 365 ~ 386.
- Ofcom(2005), "Undue Discrimination by SMP Providers; Consultation."
- O'doghue & Padilla(2006), *The law and economics of article 82 EC*, Hart Publishing, pp.552 ~ 602.
- Palmer, Karen(1989), "A New Test for Cross-Subsidies in Regulated Industries with Application on a Local Telecommunications Monopoly." Ph.D. dissertation, Boston College.
- Palmer, Karen(1991), "Using An Upper Bound on Stand-Alone Cost in Tests of Cross-Subsidy." *Economics Letters*, Vol. 35, pp. 457 ~ 460.
- Palmer, Karen(1992), "A test for cross subsidies in local telephone rates: do business customers subsidize residential customers?", *RAND Journal of Economics* Vol. 23, pp.415 ~ 433.
- Philips, L.(1983), "The Economics of Price Discrimin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gou, A.(1920), *The Economics of Welfare*, London: McMillan.
- Robinson, J.(1933), *The Economics of Imperfect Competition*, London:McMillan.
- Schmalensee, R.(1981), "Output and Welfare Implications of Monopolistic Third-Degree Price Discrimin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1, pp.242 ~ 247.
- Stigler, G.(1987), *The Theory of Price*, New York: Macmillan.

Varian, H. R.(1985), “Price Discrimination and Social Welfar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5, pp.870 ~ 875.

Varian, H. R.(1996), “Differential Pricing and Efficiency”, First Monday, [available at <http://www.firstmonday.dk/issues/issue2/different>]

〈별첨 1〉

인터넷망 상호접속 협정서의 주요 내용

구분		협정서의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정의	
제4조	기본원칙	
제5조	통신망의 범위	정보통신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이 된 의무를 제공하는 인터넷망
제6조	접속망 구성 및 운영의 원칙	접속점까지 양사가 상호구축운영, 필요시상호협조 상대사회선 설비를 이용해 접속회선 구축 시 설비제공 협정 적용(단, KT 설비이용 시 별표 접속회선료 적용)(접속망구성도)
제7조	접속료 산정 및 정산의 원칙	상호접속기준 제7조 준용
제8조	정보유용 금지	정보제공기준 제5조 준용
제2장 접속망구성및운영		
제9조	접속제공교환기	접속이용사 선정 GWR 원칙, 망효율적 운용을 위해 상호 협의 가능
제10조	접속제공교환기의 설치, 개조 등	상대방 접속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경우 사전통지
제11조	접속방식 및 용량	상호협의
제12조	접속 또는 변경절차	접속희망일 3개월 전 서면신청 접속희망일에 제공, 불가능시 1개월 전 통보 (신규설치시 6개월이내)
제13조	접속 관련설비의 개조 등 신청	희망일 3개월 전 서면신청(긴급, 양사 인정 시 예외인정)_서류요건 공사시기 방법 등은 별도협의
제14조	접속호의 처리	직접, 중계접속호 구분 운영상 필요한 라우팅 정보, AS번호의 사용자 정보 등 제공 접속호처리 세부사항은 양사실무부서 별도협의 합의되지 않은 호상호 제한
제15조	접속경로의 설정	이용사업자가 최단거리 접속경로를 선택하고 제공사업자에게 통보

구분		협정서의 주요 내용
제16조	인터넷 접속조건에의 운영	KT가 인터넷 접속조건, 인터넷망 운영현황 이용사업자에게 공개 인터넷접속조건: 통신망규모, 가입자수, 트래픽교환비율, 기타(연동점, 라우터등) 인터넷 접속조건에의 적용범위, 계위산정 등은 제공사업자의 인터넷망 접속조건에서 정한 내용 따름 제공사가 상대사업자 계위구분, 필요시 인터넷망 접속조건 조정가능, 1개월 전 통보
제17조	인터넷 접속조건에의 재평가	매년 정기적 재평가, 이용사업자 요청시 재평가 가능, 재평가 이후 익월부터 적용
제18조	접속망에의 비상대책	설비장애로 인해 호소통이 어려운 경우 회선별 우회소통 우회경로의 세부사항은 양사간 별도합의
제19조	기술기준	기술관련 사항 적용 우선순위(기술기준, 국가표준, 정통부 승인 기준, 국제표준 순)
제20조	통신품질조사	통신망 품질 조사 등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공동조사
제21조	전기통신설비에의 공동사용	공동사용기준 적용하여 체결된 공동사용협정준용
제3장 전기통신설비에의 정보제공 제1절 정보제공에의 항목		
제22조	인터넷 관련정보	접속 시 필요한 정보제공 항목 규정
제23조	기타 필요한 정보	기타정보 제공은 양사협의
제2절 정보제공에의 절차 및 방법		
제24조	정보제공 요청	정보제공 요청 시 포함사항(요청사 법인명, 주소, 정보범위, 대상, 목적 및 용도, 제공방법, 시기 및 조건 등)
제25조	정보제공 시기	정기, 즉시, 상시정보로 구성 자사 인터넷망 운용현황을 매년 정기정보로 상대사에게 제공
제26조	정보에의 제공방법	정보제공방법은 양사협의, 정보제공 방법 변경 시 사전 통보하고협의 정기, 즉시, 상시정보에 따라 제공방식차 등
제27조	정보제공 제한	정보제공제한사유: 기제공정보인 경우, 사용목적 및 용도 불 명확한 경우 정보제공 제한사유 요청일 15일 이내 서면통보, 통보일 15일 이내 협의조정
제28조	제공정보에의 목적외 사용금지	정보제공 목적 이외 사용금지, 위반시 시정 요구 및 즉시 시정

구분		협정서의 주요 내용
제4장 접속료의산정		
제29조	접속료 산정 등	이용사업자가 일괄 또는 분리산정선택 이용사업자 희망하는 중계접속용량 기준으로 중계접속비율산 정해 중계 접속료산정 제공사업자는 중계접속비율 검증위해트래픽측정, 결과반영 해 접속료 조정요구가능 트래픽 측정구간 및 방법은 양사협의
제30조	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	요청사업자 설비 개조 비용부담 투자비, 설계비, 인건비 등 직접비 기준으로 사업자간 별도 계약하여 산정
제31조	부대서비스비	상대사업자 요청으로 품질조사 하는 경우 요청사업자 비용 부담 추가적서비스 제공시는 직접비, 유사서비스 제공대가, 계약 방식으로 산정
제5장 접속료 등 정산 제1절 통칙		
제32조	적용범위	정산은 본 협정 또는 별도 협의해 정함
제33조	비용의 분류	정기비용, 수시비용으로 구분
제34조	정산주기	정기비용(접속회선비용, 통신료, 부대서비스비용 등)은 월별정 산, 수시비용은 발생시 정산
제35조	접속회선비용의 정산	상호접속기준 제45조 적용
제36조	접속통신료의 정산	상호접속기준 제46조 적용
제37조	정산부서	제공, 이용 사업자의 선정 부서
제38조	접속료 산정 및 정산협의회 구성	양사 각 3인의 협의회 구성, 협의회 운영은 협의
제39조	수시비용의 청구 및 지불	상호청구, 청구일 1개월 이내 지불
제2절 청구 및 지불		
제40조	정기비용의 청구 및 지불	사용 월 익월 25일 까지 청구, 청구일 15일 이내 지불 청구시정산내역서 첨부
제41조	청구 및 지불방법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송부, 청구사실 전화 통보
제42조	연체이자의 지불	연체총액에 대해 연체이자 지불, 이자는 익월에 청구
제3절 연체이자		
제43조	연체이자의 계산	지불기일 다음날부터 일할 계산

구분		협정서의 주요 내용
제44조	연체이자율	3개월 이내 연 14%, 6개월 내 연18%, 6개월 이상 연21%
제4절 이의제기 및 조정		
제45조	이의제기 기간	청구서 도착 1개월 이내
제46조	이의제기 제한	1% 미만의 차액은 이의제기 없는 것으로 봄 (차액기준은 양사 협의)
제47조	이의제기시 조정	이의제기 1개월 내 조정여부 결정해 서면 통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협의회에서 조정(이의 있더라도 기일내 납부, 조정은분은 익월 가감 조정)
제48조	정산자료 보관	청구자료 6개월 보관
제6장 책임및업무의한계		
제49조	신의성실의 의무	
제50조	유지보수의 책임한계	접속점 기준으로 각사가 설비운용 및 유지보수 책임짐 상대사에 위탁가능, 비용은 별도협의
제51조	손해배상	접속조건 적용관련 정보허위제공에 따른 손해인 경우 부당 사용기간동안 정상요금 2배를 배상
제52조	접속제한 등	2차까지 지불하지 않는 경우 상호접속 및 정보제공일 시제한 가능 제한하는날의 30일 전서면통보, 이의있는 경우 즉시 서면 통지후 협의
제53조	불가항력	불가항력적 사유로 협정서 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협정 위반 책임 면제
제54조	시설내 출입	상호접속 업무처리, 통신설비설치, 운용 및 유지보수를 위해 국사 출입 시 시설물 출입규정 등에 따라 편의 제공
제55조	유권해석	상호접속 기준 제71조 준용
제56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협정의해석및준수관련문제해결위해협의회구성 상대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회의 개최, 운영
부칙		
제1조	시행일	통신위 인가(또는 신고) 받은 날로부터 효력 발생
제2조	협정의 유효기간	협정 체결일로 부터 2년 이내, 별도 계약연장 요구가 없는 경우 2년 단위 연장
제3조	계위구분	제16조에 따른 이용사업자의 지위는 Tier 1
제4조	협정의 개정	협정내용의 개정 보완시 협의
제5조	협정서 보관	
제6조	경과조치	

〈별첨 2〉

협정 신고/인가제도 개선 관련 사업자 의견 요약(1차)

1. 현행 도매제공 협정 체결 시 동등·투명·적시성의 원칙 준수 여부

(1) 동등성(거래조건 및 대가, 절차 등)의 원칙 준수 여부

- 동등성 원칙이 대체로 지켜지고 있으나, 협정의 유형에 따라 차이 존재
 - － 대가, 절차 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음성망 상호접속의 경우 동등성 원칙이 잘 준수되고 있으나, 설비제공/인터넷망 상호접속의 경우 동등성 여부 판단 어려움
 - － 특히 설비제공시장은 매우 동태적으로 이용 구간에 따라 경쟁상황이 다르고, 동등성 확보 수준도 다를 것이라는 의견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사 내부용과 타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동등성의 원칙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적 제공 기간과 무관하게 이용사업자의 요청일에 제공하도록 협조, 사용가능한 설비에 대해 내부용과 타사와 거래를 구별하지 않음 － 이용절차에 있어서도 내부용(협조문)과 타사간 거래(대외공문)의 차이만 존재할 뿐 차등 대우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 조건 등 정보가 사업자 간 쉽게 공유, 방통위에 자료 제공/open되고 있어 동등성이 지켜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범위가 유사한 상호접속, 정보제공에서는 사업자간 협정 및 부속합의서 체결 시 동등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사업자별로 이용구간이 다른 설비제공에서는 사업자 간 비교가 어려워 동등성 확보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배적 사업자와의 협정체결에 있어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동등성 원칙에 입각하여 협정이 체결되는 지 확인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사업자간 동등한 조건으로 협정이 체결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망 상호접속 협정에서는 절대적인 동등성이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기관이 정한 표준적인 대가 및 절차에 기반하여 협정 체결, 사업자 간 동등성 미 확보 시 사업자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음 ○ 인터넷망 상호접속 협정은 접속제공사업자가 정한 거래조건 및 대가를 기준으로 체결되고 있으나, 접속제공과 이용관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시장의 논리에 따라 접속제공사업자가 정한 조건을 기준으로 협정 체결 및 이행이 이루어지는 문제점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제공 협정은 의무 제공 대상 설비 및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다수의 사업자에 의한 제공/이용관계가 존재하는 매우 동태적인 부문임 – 사업자별/지역별 원가수준이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설비제공 협정에서는 사업자간 협의에 의해 제공 여부가 결정 – 다수의 설비제공사업자가 존재하는 설비 도매시장에서는 시장의 경쟁압력에 의해 이용사업자간에 최소한의 동등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판단 – 경쟁적인 제공사업자가 존재하는 국간망 구간에서는 상대적인 동등성이 확보, 경쟁사업자가 없는 인입망 구간에서는 대체망 존재 여부에 따라 동등성 원칙 준수가 미흡할 가능성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망 상호접속과 관련하여 타사 내부거래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으나, 각사(상위계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협정체결 관련 접속 계위기준과 대가산정이 자의적이고 형평성 결여 문제

(2) 투명성(가격 및 이용조건의 예측가능성)의 원칙 준수 여부

- 대체로 대가 등 이용조건이 상세히 규제되는 상호접속의 경우 투명성 확보, 설비제공/인터넷망 상호접속 부문은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
- 설비제공의 경우 대가가 다양하고 비공개됨에 따라 투명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으며, 관련 시장의 경쟁압력에 따라 투명성 확보되고 있다는 의견도 존재
- 인터넷망 상호접속의 경우 원가 산출 근거 부재로 투명성 확보 미비 의견 있음
- 한편, 신고제도, 중재절차 등 기존 법제에 의해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다는 의견도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내용을 준수하고, 방통위 신고제도를 통해 투명성을 보장 – 음성망, VoIP 대가는 방통위의 규제에 의해 투명성이 보장 – 설비제공, 인터넷망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간 협정내용은 협정 당사자 이외에 공개할 수 없으나, 방통위 신고제도를 통해 협정의 투명성이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상호접속은 가격 및 이용조건의 예측가능성이 잘 준수되고 있으나, 설비제공의 경우 의무제공설비 대가가 이동전화사업자에게만 적용되지 않아 유무선 사업자간 차별이 존재 ○ 또한, 설비제공의 경우 보편적인 대가가 적용되기 보다는 제공하는 설비의 경쟁여부, 지역, 구간 등에 따라, 다수의 대가가 적용되어 사업자간 제공받는 대가를 비교할 수 없어 투명성이 미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배적 사업자와의 협정 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협정체결 조건 등을 타사업자의 경우와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

○ 사업자간 합의에 대한 분쟁 시 제소 및 신고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중재 절차를 사업자가 충분히 기 활용하고 있어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사업자간 예측가능한 이용조건(가격 등)으로 협정이 체결
○ 상호접속 협정의 경우는 가격 및 이용조건이 정형화되어 있어 투명성 확보 - 음성망은 수년간의 경험 및 규제원칙 정립으로 사업자간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 데이터망은 사업자간 협의 및 시장 경쟁에 의해 가격 및 이용조건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미흡
○ 설비제공 협정에 있어서는 제공사업자의 설비보유 및 여유용량 존재 여부 또는 요청구간에 대한 설비구축 후 제공 가능성 등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 경쟁적인 제공사업자가 존재하는 간선 또는 백본망 구간에서는 시장경쟁 압력으로 투명성이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 예상
○ 인터넷망 상호접속의 경우 원가산출 근거 부재에 따른 투명성 원칙 위배 - 2006년 SO의 기간통신사업자 전환시점에서 협정서에 채택된 상호 협정 가는 가격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원가 산출 방식에 의해 정해진 협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투명성의 원칙에 위배

(3) 적시성의 원칙 준수 여부

- 대체로 적시성 원칙이 지켜지고 있음
 - 지배적 사업자와의 협정 체결 및 업무추진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견, 협정 체결 시 적시성 원칙 위배 사례 제시
 - 설비제공 협정의 경우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 적시성 미 준수 사례 제시
- 공식적인 협정 체결 이전 실무적 의견 교환 단계에서 이견 발생 시 적시성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거나, 협정 자체가 체결되지 못하는 심각한 경우 존재 의견

○ 사업법상 협정체결 일정을 준수, 협정체결 일정 이전이라도 요청사업자와 신속히 협정 체결하여 이용사업자의 적시 서비스 제공에 협조
○ 서비스 개발 일정을 고려하여 접수 처리된 건에 대해 적시 처리되고 있음
○ 대체로 적기에 협정 체결되나, 설비제공에 있어 이용사업자가 제공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적시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
○ 지배적 사업자와의 협정 체결 뿐 아니라 체결 후 업무추진이 적시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음
○ 전반적으로 사업자간 적시에 협정이 체결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적시성 원칙이 지켜진다고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시성은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원칙이나, 협정 자체가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는 적시성 문제뿐만 아니라, 불공정행위의 문제로 비화 ○ 사업자 간에는 공식적인 협정 체결 요청 이전에 실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적시성 준수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 협의 과정에서 대가/거래조건 등에 대한 이견 발생 시, 적시성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며, 모든 협정이 일률적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체결되기는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협정 체결 시 여러 시설(광케이블의 부족, 인입 선로의 부족 등) 및 장비(인터페이스의 부족 등)에 대한 문제를 들어 적시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존재

2. 제출 서류의 범위 및 내용

(1) 총평

- 현행 법 규정에 제시된 제출 서류 범위로도 규제기관이 거래의 동등, 투명, 적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서류 양식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규제기관의 활용을 위해서도 다소 제약 존재
- 현재 연 단위 “사업자간 협정서 및 합의서 체결 현황”에 대해 방통위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통해서도 위법 가능성이 높은 합의 건에 대해 규제 가능

(2) 동등성 파악을 위한 필요 자료

- 동등성 판단 지표 설정 및 관리, 지배력이 현저한 사업자의 경우 규제기관 및 중립기관을 통한 주요 협정 내용의 공개 등 제안
- 현행 자료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존재하며, 추가 보완 자료로는 다음이 제시
 - 동일·유사 내용의 기 체결 협정과 신규 체결 협정과의 비교 자료
 - 실제 협정 내용의 구체적 설명자료 및 이용대가
 - 이용 사업자의 요청사항을 담은 문서
 - 관련 법령에 규정된 경우, 법령과 당해 협정 내용의 비교표
 - 관련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거래조건 등이 포함된 협정의 경우, 최초 체결의 경우 특수 거래조건의 포함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용과 타사와의 거래간의 동등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간, 이용절차, 대가, 제공내역 등 동등성 지표에 대한 사업자별 자료 ○ 유선의 KT와 같이 지배력이 현저한 사업자의 경우, 주요 협정내용(이용대가, 위약조항, 제공절차 등)을 규제기관 또는 중립기관을 통해 공개
○ 현행 자료로 충분함
○ 동일한 내용에 대해 기존에 다른 사업자와 체결된 협정이나 부속합의서가 존재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자와 체결한 협정 내용과 기존 사업자와 체결한 협정내용과 비교한 자료 제출
○ 실제 협정체결 대상의 구체적인 설명 자료, 이용대가
○ 접속이용사업자가 요청한 항목을 첨부하여 접속이용사업자의 요청사항이 동등성 원칙에 따라 협정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 등 관련 법령에 거래조건, 절차 및 대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과 협정과의 비교표 및 기 체결 사업자와의 동일 유사 내용 비교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체결 사업자가 다수이고 거래조건이 서로 다른 경우 비교 대상 사업자 선정에 임의성이 개입될 수 있음 ○ 관련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거래조건, 절차 및 대가가 협정에 포함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체결 사례인 경우: 특수한 거래조건 등이 포함된 사유 등 설명 － 기존 체결 사례인 경우: 기 체결 사례와 동등성 여부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발 협정 체결 사업자는 최초 협정체결 사업자의 조건에 기속될 우려 존재

(3) 투명성 파악을 위한 필요 자료

- 요금 및 이용조건을 포함한 표준 협정서 마련
- 협정 및 부속합의서 공개 또는 열람(인가 사업자로 한정 의견 존재)
 - －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규제기관을 통한 공개
 - － 열람의 주체를 협정 당사자와 협정 체결 예정자로 엄격히 제한·관리
-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접속 노드별 가용자원 현황 등 정보 공개

○ 투명성의 가장 큰 요소인 요금 및 이용조건 관련하여 표준협정서(또는 별도의 도매이용약관)를 작성하여 홈페이지나 또는 공동으로 규제기관(또는 중립기관)을 통해 공시
○ 다른 사업자간 체결된 협정 및 부속합의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열람이 허용되는 사업자는 열람한 협정의 당해 사업자와 협정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 등으로 제한 등 엄격한 관리 필요
○ 인가대상 사업자의 협정 및 부속합의서 내용
○ 접속이용사업자가 요청한 항목을 첨부하여 접속이용사업자가 이용조건에 대한 예측가능성 하에서 협정에 체결되었는지를 확인

○ 투명성과 동등성에 대한 파악 기준 자료가 유사한 것으로 보임
○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접속 노드별 가용 자원 현황(광코어, 관로, 인터페이스)을 기간통신사업자가 검색, 파악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상시 제공

(4) 적시성 파악을 위한 자료

- 현행 자료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존재하며, 추가 보완 자료로는 다음이 제시
 - 협정 소요기간(협정 요청일시, 협정 체결 일시)
 - 협정 체결 요청 시점부터 완료시까지 양사 간 교환자료(이메일, 공문, 회의록)
 - 협정 체결 지연 시 사유(eg. 이용사업자 요청 내용의 적절성 등)

○ 접속이용사업자가 최초 협정체결을 요청한 시점부터 협정체결 완료시까지의 양사 간 교환된 자료(이메일, 공문, 회의록 등) 및 소요기간
○ 인가/신고 신청 시 법에 규정된 기한과 제공된 일정에 대한 자료 제출하고 제공이 연기된 경우 연기사유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사업자의 기한 내 제공여부 검토를 위해 제공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용사업자의 요청내용의 적절성 여부도 검토 필요(이용사업자가 요청 시 구비서류 부족 등으로 인한 제공사업자의 기한 연장은 적시성 검토 시 고려 필요)
○ 요청 일시, 협정체결 일시
○ 접속이용사업자의 요청항목(요청일자 등)을 첨부하여 협정의 적시성 확인
○ 협정 당사자 간 협정 체결 경과 자료(요청시기, 희망시기, 제공시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협정 신고는 제공 사업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정 체결 경과 자료는 임의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객관성 확보를 위해 양 당사자가 모두 설명할 필요 있음

3. 도매제공의 협정 신고/인가제도 개선 시 고려 사항

(1) 협정 신고와 인가제도 차별화 필요

- 신고와 인가 대상 사업자에 대해 제출서류, 심사기준 등 차별화 필요
 - 신고대상 협정은 형식요건만 갖추도록 하고, 인가대상 협정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SMP 사업자의 협정서만 인가하고, 비 지배적 사업자는 협정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 고려

(2) 현행 제도 내용 명확화

- 협정 신고 주체 정립 필요
 - － 제공, 이용 관계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신고 주체 명확화 필요, 협정 양 사가 신고 주체가 될 경우 규제 원칙 준수 확인이 용이하나 행정비용 증가 우려
- 협정 체결 신고 기한 명확화 필요
 - － 현행 사업법상 협정 체결 후 신고 기한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정리(eg. 협정체결 후 90일 이내 신고)
- 제출 서류의 범위, 내용 명확화 필요

(3) 제출 자료에 대한 심사기준/심사절차 마련 및 공개

- 협정의 신고/인가 절차에 대한 규제의 예측 가능성 제고, 협정 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 정책의 일관성 유지(정책 담당 교체 시 일관된 적용) 및 사업자 혼란 방지를 위해 기준의 구체화 필요
- 상호 이용/제공을 하는 설비제공의 경우, 사업자별로 이용/제공 대가가 상이할 수 있고, 경쟁시장에서의 대가는 기준요금 이하로 결정될 수 있어 KCC의 심의기준 마련이 필요

(4) 사업자 제출 자료 간소화, 행정비용 추가 발생 억제 필요

- 제출 서류를 서비스별 공정경쟁 제한 요소로 간소화
 - － KCC 고시내용의 준수여부와 부당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이용대가, 제공설비, 이용절차 등)만으로 제출서류를 간소화
 - －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내용(접속점, 기술방식, 망구성도 등)은 제외
 - － KCC의 추가적인 필요한 사항은 신고절차와 별도로 처리
- 사업자 간 관련 법령 하에 체결한 협정이 명백하게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계약이 아닌 이상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을 인정하고, 규제 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출도록 하여 사업자의 행정비용 발생을 최소화

- 제출 서류의 종류와 양이 많을 경우 협정체결 당사자들과 규제기관의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협정체결 지연, 원활한 협상진행 어려움 예상
- (5) 제출 자료의 활용범위 명시 필요
- 사업자의 제출 자료를 근거로 KCC가 신고/인가 업무 이외에 조사업무에 활용할 경우, 사업자에게 신고/인가 자체에 부담을 주어 성실한 신고/인가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
 - 제출 자료를 근거로 특정 시점의 거래관계만 판단할 경우 부당한 차별 존재로 오해할 가능성 제기
- (6) 도매대가가 현 시장가 수준 또는 인하될 수 있는 방향의 규제 개선 필요
- 시장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거래변수에도 불구하고 동등성의 원칙이 강조되는 경우, 도매가격 인하라는 시장경쟁 압력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동등성 원칙이 사용될 수 있는 우려
 - － 특히 설비제공의 경우는 사업자별 여유설비 보유 여부, 지리적 격차, 물리적 망 구성 환경 및 수요자의 구매력·구매물량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시장이나, 동등성, 투명성, 적시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설비이용사업자가 필요한 설비를 경제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예상
 - 제도 개선이 지난 4년 여 간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온 현실 백본접속 단가의 인위적 인상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아니됨
 - － 4년 이상 지속된 백본가격 하락은 정상적인 시장가격 인하로 판단
 - － 백본시장의 현실 거래가격을 모니터링 한다면, 이후 접속제도 개선에서도 합리적인 현실시장 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요청
 - 본 신고/인가 제도개선 이후 현재의 사업자간 시장거래가보다 상승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실적인 시장가격 형성이 본 제도개선의 취지에 부합

(7) 혁신, 이용자 후생, 규제 효율성 측면 고려

- 신규 서비스에 대한 사업자간 합의 시 정부에 신고 또는 인가 과정에서 이용대가 등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정부가 판단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재협상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로 인한 서비스 출시 지연으로 이용자 후생이 저하될 우려
- 융/복합 시대에 다양한 통신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서에 대한 신고/인가는 규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함

(8) 자료제출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규제기관에 제출한 협정서 내용과 실제 사업자간 체결한 협정서 내용이 상이할 수 있는 개연성 존재
 - 따라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의도적인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후속 조치 필요

〈별첨 3〉

협정 신고/인가제도 개선 관련 사업자 의견 요약(2차)

1. 협정 신고/인가제도 운영 개선

가. 기한 확정

- KT 이외의 사업자는 신고/인가 신청 기간 연장(30일)에 대해 부정적 의견
 - － 혁신적 서비스 출시 등 지연으로 건전한 경쟁 저해, 계약 일방의 의도적 지연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 요구

○ 방통위 개선안 동의
○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사항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 등을 지연시켜 건전한 경쟁을 저해할 수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선증설, 서비스 지역 변경, 부가서비스 제공, 설비신청(관로, 전주, 전용회선) 등 즉시 적용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접속제공 또는 이용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경우 최대 120일이 소요될 수 있음 － 사업자간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인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인가/신고 신청 대상에 예외가 없는 경우 사업 현실상 수시로 설비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이 변경되고, 제공 기한이 촉박한 경우, 설비제공 및 이용 기한에 차질이 발생할 문제점이 있음
○ 최초 협정 체결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협정의 내용이 유지되는 기본 상호접속 협정의 경우는 기한 확정의 내용이 타당하나, 수시로 발생하는 부가서비스 접속 및 설비제공의 경우는 효력 발생 시기에 문제가 되므로 별도의 보완책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 발생 부가서비스 및 설비제공의 경우는 효력 발생시기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
○ 향후, 90일 이내에 협정 체결은 물론 방통위 신고 및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경우, 접속 이용사업자가 요청 시 1개월내에 상호접속 등 물리적 작업의 완료 가능하여 기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 － 개정 전까지 인가의 경우, 현행과 같이 인가 신청 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인가결정을 위한 상임위원회 일정을 예측 하는 것이 어려움

- 수시 발생 계약 건(eg. 부가서비스, 설비제공 협정 등)에 대해서는 협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보완책 필요 의견
- 90일 이내 협정 체결과 신고/인가 신청 절차가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가 협정의 경우 신청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나. 모든 신규·변경 협정의 신고 의무 부과(예외 불인정)

- 신속한 업무처리를 요하는 사항, 빈번한 협정 변경이 예상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모든 계약관계의 신고가 바람직하지 않음 의견
 - 설비제공 협정 신고 과중한 업무 부담, 협정 기간 중 미미한 변경 등 협정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변경의 경우 예외 적용 필요
 - 회선증설, 설비이용/제공 등 빈번히 발생하는 건의 경우 부속합의(또는 공문) 체결로만 되는데 이를 협정으로 모두 올려 정식 협정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과중한 행정부담
 - 협정 작성 서류 등이 실무적으로 협정 개정 협의 시 부담 요인으로 작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통위가 요율을 고시하거나 이에 따른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회선 제공, 부가서비스 접속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을 모두 신고 및 인가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 특히 설비 제공의 경우, 기초 설비를 제공할 때마다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에 과중한 업무 부하를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설비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대가는 설비제공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치 장소, 난이도, 장비 종류(외산, 국산) 등에 따라 상당폭 상이할 수 있고 이미 과거에 체결된 내용들 중에는 그 배경이나 사유 등이 소실되어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에 대해서까지 협정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규제에 부담이 크므로 사례를 명시한 예외 규정이 필요함 ※ 협정 기간 중 대표이사 변경,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문구 수정 등 협정의 본질과는 상관 없는 변경 등은 예외 사례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간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거나, 신속한 업무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정서 내용에서 제외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 적용 필요 ○ 법/고시의 위반 가능성만 고려한 사전규제 강화는 경쟁촉진, 투자촉진 등 사업법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사업자의 법률위반 사항을 과도하게 일반화하여 사후규제 수단을 배제하고 모든 사업자에 대한 사전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업자간 경쟁 및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번하게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을 신고/인가하도록 한다면, 신고/인가에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음 – 회선증설, 설비이용 등은 가입자 확보를 위한 사전 행위이므로 협정에 포함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 ※ '09년도 설비이용/제공 건수: 전용회선(604건), 선로설비(940건) ※ '09년도 상호접속(PSTN, VOIP, IX) 회선증설/변경 건수: 30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로 발생하는 모든 협정 변경사항을 개선(안)과 같이 모든 서류를 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사업자에게는 커다란 행정비용으로 작용함 – 실무적으로 협정 개정 협의에 대한 부담요인으로 작용 우려 – 사유 발생 시 즉시 신고/인가해야 되는 변경 요소와 정기적으로 변경 협정을 모아서 신고 가능한 변경 요소를 그룹핑하는 탄력적인 제도 운영 필요

다. 제출서류의 범위 및 내실화

- 시행령 상 서류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되, 신고 대상 협정에 대한 서류 조건 완화, 협정 변경 사유별 제출 서류 차별화 등을 요구
- 부속합의서 제출 시 이용사업자 피해 유발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시행령에 충실하도록 제출 서류의 범위를 제한하고 협정의 요약서 등 중복되는 추가 제출 서류를 줄일 필요가 있음 ○ 신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인가에 준하도록 엄격하게 제출할 서류를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됨 ○ 현행 시행령에 반영된 서류를 중심으로 대가 및 조건 등 기존 합의서 내용을 충실히 제출하도록 하되, 이를 협정의 부속(부칙) 개념으로 제출하여 빈번한 개정에 따른 행정 소요를 줄일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속합의서는 이용사업자의 신속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체결되고 있으므로, 부속합의서 내용을 신고/인가 신청하도록 하면 제공사업자가 아닌 이용사업자의 피해를 유발 – 설비보유량, 서비스 커버리지, 가입자수 등 경쟁열위에 있는 후발사업자는 선발사업자와의 협정체결을 통해 보완하고 있음 –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 협정체결(변경)의 지연은 이용사업자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 변경 사유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차별화하여 행정비용 축소

라. 제출 서류의 당사자

- 제공 사업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현행 체계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룸

- 단, 당사자 모두가 제공사업자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자가 신고
- 제3자와의 협정내용이 포함될 소지가 있는 자가 점검표를 포함한 서류는 규제기관에만 공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속 체결 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에 대해 중복하여 자가 점검표를 작성/제출하기 보다는 접속 제공 사업자 입장에서 검토하여 제출하는 것이 타당함(인가협정시도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 신고/ 인가의 제출서류는 양사 간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이므로, 제공사업자가 신고/인가 신청하는 현행의 체계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는 이용/제공사업자가 이미 합의한 협정서를 확인하는 수준이므로 제공사업자가 단독으로 작성하도록 해야 함 - 자가 점검표 작성 시, 이용사업자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제3자와의 협정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 자가 점검표를 포함한 제출서류는 규제기관에게만 공개될 수 있도록 변경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접속제공 또는 설비제공사업자가 협정을 신고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사업자가 가격 관련 자료 작성 가능하므로 제공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하며, - 당사자 모두가 제공사업자인 경우 주된 제공사업자가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2. 자가 점검표 및 심사기준의 마련

가. 자가 점검표 작성/제출

- 자가 점검표의 작성 기준을 방통위가 제시하고, 자가 점검의 내용을 간소화할 필요 제기
 - 표준협정서 제도 도입 시 자가 점검표의 많은 부분 해소 가능
 - 협정이 체결된 경우 자가 점검표 작성 실익이 없으며, 개별 사업자 입장에서 가격 동등성 판단 곤란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마다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으므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작성되는 자가 점검표는 심사 기준으로서의 합리성이 결여될 수 있음. 따라서 방통위에서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점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별로 상호접속, 설비제공, 공동사용 등에 대한 표준협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전에 점검토록 한다면 자가 점검표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별 표준협정서를 사전에 심사하고, 모든 사업자와의 협정을 체결하면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간 형평성과 관계없는 내용을 제외하고, 필수적인 부분만으로 자가 점검표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내용을 확인하는 항목(접속경로 구성시 경제적/효율적 구성여부, 부당한 차별과 적기 정보제공 등)과 협정내용을 확인하는 항목(접속제공교환기의 이용사업자 선정, 요금부과/이의신청절차 등) 등은 사업자간 형평성과 관계없음 - 세부요금 산정방법, 사용기간 등에 대해서만 자가 점검표를 구성하여 절차 및 내용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 점검표는 실질적으로 제출의 의미가 없음(협정이 체결되었다는 의미는 협의과정상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잠정적으로 합의된 상태이므로 부정적인 내용으로 자가 점검표를 작성할 실익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 점검표 중 대가적합성에 대한 시장 가격 판단기준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아 작성 가능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 - 개별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가 점검표 중 가격동등성 등에 대한 판단이 곤란

나. 대가 차별 기준안

- 10% Rule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필요 의견이 많음
 - 각 서비스 특성 고려 필요, 시장 가격에 대한 판단 어렵고, 기준가격의 적용도 어려움, 정부 규제가격의 경우에는 10% 를 적용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통위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10% 범위 적용 수준에 대해 추가 논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간 공정성 확보를 위해 10% Rule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각 서비스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해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사업자간 접속료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차이는 접속용량, 계약 기간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신규 협정 체결시 기존사업자와의 접속요금과 10% 이내로 설정되도록 10% Rule 적용이 가능 - PSTN 등 음성전화 접속대가는 전체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10% Rule을 적용하기엔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설비제공의 이용대가는 양사 간의 설비별 이용대가가 제공설비와 이용설비에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사업자별로는 10% 이상의 차이가 있음. 이러한 상황을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고, 사업자 자율 보다는 방통위 주도하에 단계적인 이용대가 조정작업이 이루어져야 10% Rule을 적용할 수 있음 ※ 사업자간 이용대가의 차이는 기업시장의 특성상 전용회선 등 다른 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면서 거래되는 총액 범위 안에서 서비스별 이용대가를 임의로 조정할 결과임

- 10% rule 적용 시에도 기준이 되는 시장 가격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있으며,
- 시장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한 정보도 실질적으로 파악이 매우 어려움
- 설비제공의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단가도 달라서 기준 가격 적용이 어려움
- 특히 정부에서 정한 접속료의 경우에도 10% rule 적용시 시장 경쟁에 치명적인 혼란 발생 우려
- 기본적으로 10% 수준의 차이는 과다하며, 5% 오차를 인정한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법 위반여지가 없는 합리적 차별이 타당한 지 판단한 후에, 5% 이하의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의 검토는 가능할 것임
- 다만, MVNO와 같은 신규 및 후발 사업인 경우, 사업자간 공정경쟁 훼손 방지를 위해 사업자간 가격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 또한, 제시(안) 중 상하 오차율 적용 없이 10% 적용은 최대 20% 적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대가 차이가 불가피하다면, 상하한 오차율 적용 축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

다. 심사절차 간소화

- 자가 심사의 주관성으로 인해 신고사업자의 협정에 대한 공정성 확인 절차가 보완될 필요

3. 표준협정제안서(RIO) 작성 · 공개

- RIO 작성, 공개에 상당한 시간 필요하고, 비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RIO 작성 및 공개 의무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 사업자(기존 기간통신사와 S, RO, NO 등)에 따라 일부 조항이 상이할 수 있어 작성 및 공개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정보 제공 범위 등 국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RIO 작성이 필요
- 국가간 협정상에 지배적 사업자의 표준협정제안서(RIO)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비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공개 규정은 없음
 - 방통위의 의견도 지배적 사업자에게는 표준협정제안서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비지배적 사업자에게 표준협정제안서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모든 기간사업자 대상으로 RIO 작성 권고 시 실질적으로 모든 기간사업자에게 RIO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 발생 예상
- 수백여 개의 모든 기간사업자가 RIO를 작성하는 것이 낭비 요소로 작용되므로 모든 기간사업자가 RIO를 작성하는 것이 불필요하며, 주된 접속 제공사업자에게만 RIO 작성 필요

<별첨 4>

협정신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업자 의견

구분	사업자의견
차별 판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차별 기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차별의 입증 방법, 허용기준이 명확화 필요(자의적 해석, 사업 추진이 위축/지연 등 부작용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차별 사유와 부당한 차별 사유가 공존하는 경우 처리 기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시구매 등에 의한 대가 대가차등은 비지배적 사업자만 인정(지배적 사업자의 대가 차등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 입증시 요구되는 자료가 과도하게 계량화된 자료제공 부담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배/비지배 사업자간 입증 책임 차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배적 사업자는 원가산정을 통해 차별의 정당성을 입증하되, 비지배 사업자는 사후규제
부당한 차별에 대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이 발생하고 사업자의 정당성 입증에 수용되지 않는 경우 조치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이용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협정 신고 규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부담으로 협상여지 축소되어 후발사업자의 지위 약화 우려 ○ 과도한 대가 차별 입증책임이 대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우려
표준협정서상 대가 현실화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요금에 부합하도록 전용회선 약관을 재조정하는 경우 대가상승/시장 규모 축소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관 재조정이 제공사업자간 묵시적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으로 귀결되는 것 우려 - 설비제공 대가와 일반 전용회선 약관 요금을 분리하는 방안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 요금을 인상하여 비계열사 요금인상 근거로 삼는 상황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계열사 제공시 입증책임 완화, 비계열사 대가가 계열사 대가와 유사한 경우 입증책임 면제 고려 제안

〈별첨 5〉

WTO, FTA 통신 협정문 상 협정 관련 이행사항 비교

<input type="checkbox"/> WTO Reference Paper	
2-4 상호접속 협정의 투명성 주요 공급자는 그의 상호접속 협정 또는 상호접속 제공지침의 공개가 보장되어야 한다.	2-4 Transparency of interconnection arrangements It is ensured that a major supplier will make publicly available either its interconnection agreements or a reference interconnection offer.
<input type="checkbox"/> 한·칠레 FTA	
제12.7조 투명성 제17.3조에 부가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접속 및 사용에 관한 조치를 공개한다. 가. 요금 및 그 밖의 서비스 사용조건, 나. 망 또는 서비스와의 기술적 접속 관련 세부사항 다. 이러한 접속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 관련 조치를 준비하고 채택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 라. 단말기나 그 밖의 장비를 망에 연결시 적용되는 조건, 그리고 마. 통보, 허가, 등록, 면허 또는 양허 요건	Article 12.7. Transparency Further to Article 17.3, each Party shall make publicly available its measures relating to access to and use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or services, including measures relating to: (a) tariffs and 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service; (b) specifications of technical interfaces with the networks or services; (c) information on bodies responsible for the preparation and adoption of standards related measures affecting such access and use ; (d) conditions applying to attachment of terminal or other equipment to the networks; and (e) notification, permit, registration, or licensing or concession requirements.

<p>□ 한·싱가폴 FTA 협정문</p>	
<p>제11.4조 지배적사업자의 행위</p> <p>상호접속 8. 가. 일반조건</p> <p>지배적사업자와의 상호접속</p> <p>각 당사국은 지배적사업자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점에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이하생략)</p> <p>나. 상호접속협정의 투명성</p> <p>각 당사국은 지배적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 협정 또는 상호접속 제공 지침을 공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p> <p>다. 상호접속 협상절차의 공개</p> <p>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에 적용 가능한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p> <p>라. 지배적사업자와 체결한 상호접속 협정의 공개</p> <p>(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 협정을 통신규제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한다.</p> <p>(2) 각 당사국은 상호접속을 하려는 공중전기통신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가 그 밖의 공중전기통신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체결한 상호접속 협정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p>	<p>ARTICLE 11.4: CONDUCT OF MAJOR SUPPLIERS</p> <p>Interconnection 8. (a) General Terms and Conditions</p> <p>Interconnection with Major Suppliers</p> <p>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 major supplier is required to provide interconnection at any technically feasible point in the network.(이하생략)</p> <p>(b) Transparency of interconnection arrangements</p> <p>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 major supplier will make publicly available either its interconnection agreements or a reference interconnection offer</p> <p>(c) Public Availability of the Procedures for interconnection Negotiations</p> <p>Each Party shall make publicly available the applicable procedures for interconnection negotiations with major suppliers in its territory.</p> <p>(d) Public Availability of Interconnection Agreements Concluded with Major Suppliers</p> <p>(i) Each Party shall require major suppliers in its territory to file all their interconnection agreements with its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p> <p>(ii) Each Party shall make available to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 or services which are seeking interconnection, interconnection agreements between a major supplier in its territory and any other supplier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 or services in such territory.</p>

<input type="checkbox"/> 한·미 FTA 협정문	
<p>제14.8조 상호접속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선택권</p> <p>2.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통신서비스의 공급자에게 그의 설비 및 장비를 지배적사업자의 그것과 상호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다음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보장한다.</p> <p>가. 새로운 상호접속협정의 협상, 그리고</p> <p>나. 다음 선택권 중 하나</p> <p>1) 지배적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공중통신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제시하는 요율 및 조건을 포함하는 표준상호접속제안, 또는</p> <p>2) 발효중인 상호접속협정의 조건</p> <p>상호접속 제안 및 협정의 공개</p> <p>3. 당사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표준상호접속제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제안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p> <p>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적용가능한 절차를 공개한다.</p> <p>5. 생략</p> <p>6.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사업자와 자국영역의 다른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간에 발효 중인 상호접속협정을 공개한다.</p>	<p>ARTICLE 14.8: INTERCONNECTION Options for Interconnecting with Major Suppliers</p> <p>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 major supplier in its territory provides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f the other Party the opportunity to interconnect their facilities and equipment with those of the major supplier through:</p> <p>(a) negotiation of a new interconnection agreement; and</p> <p>(b) one of the following options:</p> <p>(i) a reference interconnection offer containing the rates, terms, and conditions that the major supplier offers generally to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r</p> <p>(ii)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n interconnection agreement in effect.</p> <p>3. If a major supplier in the territory of a Party has a reference interconnection offer, the Party shall require the offer to be made publicly available.</p> <p>4. Each Party shall make publicly available the applicable procedures for interconnection negotiations major supplier in its territory.</p> <p>5. 생략</p> <p>6. Each Party shall make publicly available interconnection agreements in effect between a major supplier in its territory and other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its territory.</p>

<p>□ 한·인도 FTA</p>	
<p>제7.7조 상호접속</p> <p>지배적사업자와의 상호접속</p> <p>1. 각 당사국은 자국영역 내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배적사업자의 망내의 기술적으로 실행가능한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든 규제 기관의 규정에 따른 상호약정에 따라 상호 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p> <p>상호접속제한의 공개</p> <p>2. 각 당사국은 지배적사업자가 그 지배적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적용 가능한 절차를 공개하여야 한다.</p> <p>상호접속 협상절차의 공개</p> <p>3.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지배적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적용 가능한 절차를 공개하여야 한다.</p> <p>지배적사업자와 체결한 상호접속협정의 공개</p> <p>4. 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당사자인 모든 상호접속협정을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p> <p>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지배적 사업자와 그 밖의 공중통신 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간에 유효한 상호접속협정에 포함된 상업적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이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의 적용을 받는 조건으로, 상호접속을 하려는 공중통신 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이러한 상호 접속협정을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p>	<p>ARTICLE 7.7: INTERCONNECTION</p> <p>Interconnection with Major Suppliers</p> <p>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 major supplier in its territory provides interconnection at any technically feasible point in the network as per mutual agreement subject to regulations by regulatory body.(이하생략)</p> <p>Public Availability of Interconnection offers</p> <p>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 major supplier will make publicly available either its interconnection agreements or a reference interconnection offer.</p> <p>Public Availability of the Procedures for Interconnection Negotiations</p> <p>3. Each Party shall make publicly available the applicable procedures for interconnection negotiations with major suppliers in its territory.</p> <p>Public Availability of Interconnection Agreements Concluded with Major Suppliers</p> <p>4. (a) Each Party shall require major suppliers in its territory to file all their interconnection agreements to which they are a party with its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p> <p>(b) Each Party shall ensure to make available to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or services which are seeking interconnection, interconnection agreements in force between a major supplier and any other supplier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or services in its territory, subject to any requirements which the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 may impose to protect the commercial confidentiality information contained in these interconnection agreements.</p>

<input type="checkbox"/> 한·EFTA 협정문	
<p>제6조 상호접속</p> <p>2. 각 당사국은 지배적사업자가 망 내에 기술적으로 가능한 어떠한 지점에서든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이하생략)</p> <p>3. 각 당사국은 지배적사업자와의 상호접속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절차를 공개한다.</p> <p>4. 각 당사국은 지배적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 협정 및/또는 상호접속 제공 지침을 공개하도록 보장한다.</p>	<p>Article 6. Interconnection</p> <p>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 major supplier provides interconnection at any technically feasible point in the network.</p> <p>3. Each Party shall make the procedure applicable for interconnection to a major supplier publicly available.</p> <p>4.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 major supplier makes either its interconnection agreements and/or a reference interconnection offer publicly available.</p>

〈별첨 6〉 제출 서류 양식(안)

상호접속 등 협정 신고·인가 시 제출 서류

2009. 10.

전기통신사업자명

< 제 출 자 >

(주)△△△ 담당: 소속 성명 (인) 전화번호

(주)○○○ 담당: 소속 성명 (인) 전화번호

- 관련 근거
 - － 사업법 시행령 제40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 협정체결 쌍방은 인가/신고 신청 시 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서류는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함
 - ① 협정서 사본
 - － 이용 수량, 요금표 등 제공 대가, 할인율, 기타 비가격적 거래조건 등 당해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
 - ※ 인가 신청 시에는 표준협정서 양식으로 작성
 - － 요약표 별도 작성
 - ※ 요약표는 당해 거래 및 최근 3년간 동일 유형의 협정체결 요청일, 체결일, 협정 지속기간, 대상설비, 요금, 수량 등 포함
 - ② 협정의 원칙 이행점검표 및 고시적합성 점검표
 - － 별첨 점검표 양식 참조
 - ③ 점검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체 가격분석 자료
 - － 거래 용량(또는 수량), 거래기간, 거래 시점 등의 관점에서 일정규모 이상 (eg. 10%)의 가격차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 가격 차등이 있는 경우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④ 접속점의 위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자료(도면 포함)
 - － 의무제공 대상설비 및 상호접속대상설비 현황, 설비 여유율을 공개
 - ⑤ 신규 협정 대비표

〈협정 신고/인가 신청 시 서류 요건 및 주요 제출서류〉

관련 근거	서류 요건	주요 제출 서류
1. 협정서 사본	이용 수량, 요금표 등 제공 대가, 할인율, 기타 비가격적 거래조건 등 당해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	- 협정서 사본(인가 시 표준협정서 사본) - 협정 요약표
2. 지급 및 수령할 금액 및 그 정산방법을 기재한 서류		- 협정서 사본(인가 시 표준협정서 사본) - 협정 요약표 - 정산 서류 양식
3. 상호접속 등의 조건 및 그 밖의 협정 비용을 명시한 서류	부당한 가격 및 비가격 차별, 상호보조 등이 없음을 증명	- 협정원칙이행 자가 점검표 및 고시적합성 점검표 - 점검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체 가격 분석 자료 - 가격 차등이 있는 경우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비가격 거래조건 관련 자료 eg. 인터넷망 상호접속조건(peering policy)
4. 상호접속 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 접속점의 위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자료
5. 신·구 협정을 대비한 서류		- 신·구 협정 대비표

1. 고시적합성 자가 점검표(안): 전화계망 상호접속 협정

근거법령	점검사항 ()내용은 세부내용에 작성	전화계망 상호접속 협정		
		적합 여부	관련 조항	세부내용
상호접속 기준 고시	4조(접속 기본원칙)	동등, 투명, 적시, 합리적 접속을 구현하고 있는가?		check list
	6조 (접속망 구성 및 운영원칙) 1항	체결된 상호접속협정 대상역무와 서비스에 대해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해당서비스는 무엇인가? (해당역무와 서비스 및 사업자 기재)		예) 이동전화서비스(▲▲▲) - 국제전화서비스(△△△)
	6조 4항	접속용량은 이용사업자가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6조 5항	접속호 송수신 경로와 방법의 효율성		접속망 구성 및 운영항목 참조
	6조 6항	직접접속, 경유접속 여부 및 망의 효율적 활용		접속망 구성 및 운영항목 참조
	7조(접속료 산정 및 정산원칙) 1항	시내, 시외, 공중전화, 이동전화망(셀룰러, PCS, IMT2000) 및 인터넷전화망 접속료는 원가에 기반하여 산정된 접속료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접속설비비, 통화료 등 접속료 산정 항목 참조
	7조2항	제7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지 않은 접속료는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상호정산 하고 있는가?		접속설비비, 통화료 등 접속료 산정 항목 참조
	접속망 구성	8조 (접속제공 교환기) 1항	접속제공교환기는 이용사업자가 선정하였는가?(접속제공사업자가 2인이상 이거나 기술적, 물리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협의 조정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가?)	
8조2항		KT 시내망에 접속하는 경우 이용사업자가 번호관리 세칙 상 번호권별 접속점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가?(협의시 주요 합의내용)		
8조3항		상호접속의무대상사업자가 제공사업자인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설비에대한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느설비에 접속하고 있는가?		
9조 (접속용량)		접속 용량 산정은 최근 3개월 최면시 통화량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가?(통화량과 접속용량) 단, 최초 접속시는 예측통화량, 가입자를 가진 통신망간 접속 시는 사업자 간 협의 가능		
10조(접속 또는 변경절차)		서면신청 후 3개월이내에 상호접속이 완료되었는가? 접속희망일 기준 3개월전 서면 신청, 접속희망일 제공 원칙, 제공가능시기 서면 통보 등 실질적인접속 또는 변경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11조 (접속방식)		접속방식 · 신호방식 · 회선용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근거법령		점 검 사 항 ()내용은 세부내용에 작성	전화계망 상호접속 협정		
			적합 여부	관련 조항	세부내용
상 호 접 속 기 준 고 시	12조 (접속호의 처리)	접속호 처리 원칙(접속, 과금에 필요한 정보 분석 후 해당 사업자망으로인도)을 규정하고 있는가?			
		불완료호 처리 규정은 기준에 맞게 규정하고 있는가?			
		합의되지 않은 호에 대한 접속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가?			
	13조 (접속경로의 설정)	접속경로 구성시 접속이용사업자가 자기의 망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단거리 접속경로를 선택하였는가?			
		접속경로의 변경에 관한 사전협의 규정이 있는가?			
	14조 (접속망비상대책)	긴급접속 및 우회접속 규정은 접속전에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우회접속 경로는 발신측 사업자가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15조 (번호방식)	전기통신 번호관리세칙에 따라 통신망간 접속을 위한 전기통신번호를 사용하고 있는가?			
		통신망내 번호 운영 및 입력 협의에 관한 규정은 접속고시를 준수하고 있는가?			
	16조 (과금방식)	접속제공/이용 교환기의 상세과금 및 트래픽정보 기록(필요시협의 포함)을 따르고 있는가?			
인터넷전화접속시 상호정산을 위해 가입자수, 접속통화량, IP주소 등 과금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가?					
접속통화량 차이 협의·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17조 (기술기준)	접속 고시에 맞게 기술기준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가?				
18조(통신품질조사)	접속이용사업자의 품질조사 요청 권한 및 공동조사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가?(구체적 품질조사 종류 및 내용)				
접속 설비비	19조(접속회선비용)	접속회선비용 부담 주체 및 부담 규정은 접속기준에 부합하는가? ※ 이용사업자 부담원칙, 전화계망-무선호출망간 접속시 1/2씩 부담, 타망경유 접속인 경우 접속구간 통화량 비율에 따른 부담			적용요금표
	20조 (접속관련 설비개조 비용)	설비개조 요청사업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단, 동등접속 구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쟁사업자 부담 설비개조 비용은 투자비, 인건비, 설계비 비용 산정원칙, 비용부담 방식에 관한 규정은 접속기준에 부합하는가?			
접속 통화료	21조 (접속통화료 부담)	접속기준에 맞게 접속통화료 부담주체, 접속료 정산방식 등을 명기하고 있는가?(접속이용사업자와 접속제공사업자 명기)			
	22조~22조의5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접속료에 따르고 있으며, 접속요율은 얼마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간 협의한 접속료와 산정방식은?			

근거법령		점 검 사 항 ()내용은 세부내용에 작성	전화계망 상호접속 협정			
			적합 여부	관련 조항	세부내용	
상호 접속 기준 고시	부대 서비스 비	33조, 34조	부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지불하는 부대서비스의 대상, 비용, 산정방식(서비스별 비용발생형태)을 규정하고 있는가?			
	전화 부가 서비스	35조(전화 부가 서비스)	전화부가서비스의 종류, 관련 정산방식(접속료부담 주체 포함), 접속호의 종류, 전화부가서비스 경로설정 및 호처리, 번호송출방식, 요금회수대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부가서비스의 종류: 1. 호전환서비스 2. 수신자요금 부담서비스 3. 정보제공서비스			적용요금표
	기타	66조(번호 이동성) 4항	번호이동이 관련된 경우 추가전송구간에 대한 정산원칙, 정산방법 등 협의를 규정하고 있는가? ※ 접속이용사업자는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번호이동 가입자로 통화하는 호에 대하여 2010년까지는 한시적으로 변경전사업자의 접속통화요율을 정산함으로써 시내전화사업자의 추가전송구간비용중 일부를 지불하며, 2011년 이후에는 변경전사업자가 추가전송구간 비용을 부담하고 접속이용사업자는 변경후사업자의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정산방법 등세부사항은 사업자간 협의(세부사항 기재)			
		71조 (협의회 구성·운영)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정보 제공 기준 고시			책임 및 업무의 한계: 신의성실, 유지보수, 손해배상, 접속제한, 불가항력, 유권해석, 시설내 출입 등			
	정보 제공 범위	4조(정보 제공의 기본원칙)	제공사업자는 정보제공을 함에 있어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거나 다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적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5조(정보 유용의 금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영업정보로의 유용 등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가?			
		9조 (상호접속 관련정보)	교환설비, 접속교환기, 통화량, 전용회선망 등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는가? (구체적 정보제공내역) ※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 - 교환설비 관련 정보: 교환기설치및운영현황,단기증설계획,교환설비운용에필요한프리픽스별경로정보 - 접속교환기 관련 정보: 접속제공 교환기 기능 및 특성(용량회선수용현황, 신호 및 전송방식, 과금기능, 기술예고 등), 교환기 소재지 및 망계위			

근거법령		점 검 사 항 ()내용은 세부내용에 작성	전화계망 상호접속 협정			
			적합 여부	관련 조항	세부내용	
정보 제공 기준 고시	정보 제공 범위		- 통화량 관련 정보: 프리픽스별 통화량, 시도호수(단, 제16조3항 관련 인터넷전화 접속시 가입자수, 접속 통화량, IP주소 등의 과금정보 제공) - 전용회선망 관련 정보: 상호접속 요청구간의 단국장치, 회선분배 장치 및 가입자 선로 등의 설치/운영현황, 단기 신/증설계획			
		10조 (공동사용 관련정보)	국사 및 부대시설 및 선로설비 등 공동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였는가? (구체적 정보제공내역) ※ 공동사용에 필요한 정보 - 국사 ACL 부대시설 관련 정보: 국사의 위치, 연면적, 사용현황 및 여유면적, 단기(2년) 신·증설계획, 기타 공동사용에 필요한 전선설비등의 부대시설현황 - 선로설비관련 정보: 설비제공요청 계획구간의 설비 종류, 시설용량, 사용현황, 단기 신·증설계획			
		11조 (이용자 및 과금정보)	요금의 부과/징수 및 이용자 이의신청 처리에 필요한 정보(이용자 정보 및 과금정보) 제공하였는가?(구체적 정보제공 내역)			
		12조(기타 필요한 정보)	9조, 10조 및 11조 이외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관한 협의를 규정하고 있는가?(구체적 정보제공 내역)			
	정보 제공 절차 및 방법	13조(정보 제공요청) 14조(정보 제공시기) 15조(정보 제공방법)	정보제공 요청절차, 시기 및 제공방법에 관하여 정보제공 고시에 맞게 규정하고 있는가?			
		정보 제공 대가	17조(비용 부담주체)	요청사업자 비용부담을 규정하고 있는가? (정보제공 비용 발생시 요금표 내역 첨부)		
	18조(정보 제공의 대가)		정보제공 대가는 실제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표준단가 및 준용규정이 있을 경우 첨부)			
	공동 사용의 기본 원칙	4조 (기본원칙)	자사 제공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가? 상호접속 이외의 목적에 사용 시 시정요구 또는 사용 중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6조(비밀 누설금지)	공동사용으로 인해 특한 제반기술 및 경영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			
	공동 사용의 대상·절차등	7조(공동 사용의 대상)	전기통신설비 및 시설의 공동사용 대상에 대해 공동사용 기준에 맞게 규정하고 있는가?			

근거법령		점 검 사 항 ()내용은 세부내용에 작성	전화계망 상호접속 협정		
			적합 여부	관련 조항	세부내용
공 동 사 용 기 준 고 시	7조(공동 사용의 대상)	국사상면 공동사용에 대해서는 피요청자의 국사내 원칙 및 국사상면이 부족할 경우의 대비책에 대해 기준에 맞게 규정하고 있는가? 공동사용의 대상에 식별되지 아니한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에 대한 협의 규정을 두고 있는가?			
	8조 (공동사용 요청절차)	공동사용 요청은 고시에서 정한 시기에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되었는가? 피요청자는 요청일로부터 고시에서 정한 기간내(1개월 이내)에 공동사용 가능여부를 통보하였는가?			
	9조 (공동사용 개시일)	요청자의 공동사용 희망일 원칙 및 불가능시 협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10조(공동 사용기간)	공동사용기간의 설비제공기준 준용 규정, 기간 연장요청 시 피요청자의 의무 및 공동사용기간의 지정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공동사용기간 중 설비가 대·개체되는 경우의 공동사용기간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공동사용 중단 시 절차 및 공동사용 잔여기간 대가에 대한 협의 규정을 두고 있는가?			
	11조 (출입절차)	시설 출입 요청 시 피요청자의 출입 허용 규정을 두고 있는가? 출입 요청 시, 요청자의 피요청자에 대한 통보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출입 시 요청자의 중요 패용, 긴급사항 발생 시 출입 요건, 주요시설 출입시 절차 등에 대해 기준에 맞게 규정하고 있는가?			
	공 동 사 용 의 대 가 산 정	12조(공동 사용의 대가)	공동사용 대가 산정의 기준 및 당사자 간 협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13조(유지 보수비용)	유지보수비용의 실제 발생 비용 기준 산정 및 대상설비용량 중 사용비율에 따른 사업자 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기 타	14조(유지 보수책임)	공동사용 설비의 대·개체 유지보수의 피요청자 책임 및 필요한 경우 협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16조(비상 대책 등)	피요청자의 설비 변경 및 증설시 요청자에 대한 사전 통보, 장애발생 사실 즉시 통보 및 장애복구 비상대책의 협조·처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2. 고시집합성 자가 점검표(안): 인터넷망 상호접속 협정

근거법령		점검사항 () 내용은 세부내용에 작성	인터넷망 상호접속 협정		
			여부 포함	관련 조항	세부내용
상호 접속 기준 고시	총칙	4조(접속 기본원칙)	동등, 투명, 적시, 합리적 접속을 구현하고 있는가?		check list
		6조(접속망 구성 및 운영원칙) 1항	체결된 상호접속협정 대상역무와 서비스에 대해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해당서비스는 무엇인가? (해당역무와 서비스 및 사업자 기재)		예) 이동전화서비스 (▲▲▲) - 국제전화서비스 (△△△)
		6조 4항	접속용량은 이용사업자가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6조 5항	접속호 송수신 경로와 방법의 효율성		접속망 구성 및 운영항목 참조
		6조 6항	직접접속, 경유접속 여부 및 망의 효율적 활용		접속망 구성 및 운영항목 참조
	접속망구성 및 운영	37조(접속 제공교환기)	접속제공사업자의 게이트웨이 라우터의 위치는?		
		38조(접속 또는 변경절차)	서면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상호접속이 완료되었는가? 접속희망일 기준 3개월전 서면 신청, 접속희망일 제공 원칙, 제공가능시기 서면 통보 등 실질적인접속 또는 변경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39조(접속 방식 및 용량등)	접속방식 및 용량 등을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였는가?(사업자간 협의내용 기재)		
		40조(접속 경로)	접속경로 구성시 접속이용사업자가 자기의 망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단거리 접속경로를 선택하였는가? 접속경로의 변경에 관한 사전협의 규정이 있는가?		
		41조(접속호의 처리)	인터넷망간 접속시 접속호는 직접접속호와 중계접속호로 구분하여 소통하고 있는가? ※ 접속호 처리 및 관련 정보 제공: 라우팅, AS번호의 사용자 정보 교환방안, 부가 접속호 협의, 미합의호 제한 규정		
42조(인터넷 접속조건 공개)		이용사업자에게 적용한 합리적인 인터넷접속조건을 공개하고, 조건에 따른 자신의 인터넷망 운영현황을 공개하고 있는가?(공개내용) 접속기준에 따라 이용사업자 계위를 구분함을 규정하고 있는가?			
43조(준용 규정)		접속망의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2개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접속경로 기재)			
접속통신료	44조(접속료 산정 원칙 등)	접속회선비용과 접속통신료를 일괄 또는 분리산정하여 접속이용사업자가 선택하였는가?			

근거법령		점 검 사 항 () 내용은 세부내용에 작성	인터넷망 상호접속 협정		
			여부 포함	관련 조항	세부내용
상 호 접 속 기 준 고 시	접속 통신료	45조(접속 회선비용 등)	동일계위간: 접속사업자간 1/2씩 부담 다른계위간: 계위가 낮은 사업자가 부담하되, 직접구축시 계위가 높은 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기준을 적용 전화계와 데이터망간: 접속사업자간 1/2씩 부담		
		46조(접속 통신료 정산)	동일계위간: 정산하지 않음 다른계위간: 낮은 계위의 사업자가 높은 계위의 사업자에게 지불 전화계와 데이터망간: 정산하지 않음		
	부대 서비스비	46조의2 (부대 서비스비)	부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지불하는 부대서비스의 대상, 비용, 산정방식(서비스별 비용발생형태)을 규정하고 있는가?		
정 보 제 공 기 준 고 시	정 보 제 공 범 위	4조(정보 제공의 기본원칙)	제공사업자는 정보제공을 함에 있어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거나 다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적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5조(정보이용의 금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영업정보로의 유용 등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가?		
		9조(상호 접속 관련정보)	교환설비, 접속교환기, 통화량, 전용회선망 등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는가? (구체적 정보제공내역) ※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 - 교환설비 관련 정보: 교환기설치및운영현황,단기증설계획,교환설비운용에필요한프리픽스별경로정보 - 접속교환기 관련 정보: 접속제공 교환기 기능 및 특성(용량회선수용현황, 신호 및 전송방식, 과금기능, 기술예고 등), 교환기 소재지 및 망계위 - 통화량 관련 정보: 프리픽스별 통화량, 시도호수(단, 제16조3항 관련 인터넷전화 접속시 가입자수, 접속통화량, IP주소 등의 과금정보 제공) - 전용회선망 관련 정보: 상호접속 요청구간의 단국장치, 회선분배 장치 및 가입자 선로 등의 설치/운영현황, 단기 신/증설계획		
		10조(공동 사용 관련정보)	국사 및 부대시설 및 선로설비 등 공동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였는가? (구체적 정보제공내역) ※ 공동사용에 필요한 정보 - 국사 ACL 부대시설 관련 정보: 국사의 위치, 연면적, 사용현황 및 여유면적, 단기(2년) 신·증설계획, 기타 공동사용에 필요한 전원설비등의 부대시설현황 - 선로설비관련 정보: 설비제공요청 계획구간의 설비종류, 시설용량, 사용현황, 단기 신·증설계획		

근거법령		점 검 사 항 () 내용은 세부내용에 작성	인터넷망 상호접속 협정			
			여부 포함	관련 조항	세부내용	
정보 제공 범위	11조 (이용자 및 과금정보)	요금의 부과/징수 및 이용자 이의신청 처리에 필요한 정보(이용자 정보 및 과금정보) 제공하였는가?(구체적 정보제공 내역)				
	12조(기타 필요한 정보)	9조, 10조 및 11조 이외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관한 협의를 규정하고 있는가?(구체적 정보제공 내역)				
정보 제공 절차 및 방법	13조(정보 제공요청) 14조(정보 제공시기) 15조(정보 제공방법)	정보제공 요청절차, 시기 및 제공방법에 관하여 정보제공 고시에 맞게 규정하고 있는가?				
정보 제공 대가	17조(비용 부담주체)	요청사업자 비용부담을 규정하고 있는가? (정보제공 비용 발생시 요금표 내역 첨부)			정보제공 요금표	
	18조(정보제공의 대가)	정보제공 대가는 실제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표준단가 및 준용규정이 있을 경우 첨부)				
공동 사용 기준 고시	공동 사용의 기본 원칙	4조(기본 원칙)	자사 제공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가? 상호접속 이외의 목적에 사용 시 시정요구 또는 사용 중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6조(비밀 누설금지)	공동사용으로 인해 특한 제한기술 및 경영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			
	공동 사용의 대상·절차 등		전기통신설비 및 시설의 공동사용 대상에 대해 공동사용 기준에 맞게 규정하고 있는가?			
		7조(공동 사용의 대상)	국사상면 공동사용에 대해서는 피요청자의 국사내 원칙 및 국사상면이 부족할 경우의 대비책에 대해 기준에 맞게 규정하고 있는가? 공동사용의 대상에 식별되지 아니한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에 대한 협의 규정을 두고 있는가?			
		8조(공동 사용 요청절차)	공동사용 요청은 고시에서 정한 시기에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되었는가? 피요청자는 요청일로부터 고시에서 정한 기간내(1개월 이내)에 공동사용 가능여부를 통보하였는가?			
		9조(공동 사용 개시일)	요청자의 공동사용 희망일 원칙 및 불가능시 협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10조(공동 사용기간)	공동사용기간의 설비제공기준 준용 규정, 기간 연장요청 시 피요청자의 의무 및 공동사용기간의 지정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근거법령		점 검 사 항 () 내용은 세부내용에 작성	인터넷망 상호접속 협정			
			여부 포함	관련 조항	세부내용	
공동 사용 기준 고 시	공동 사용의 대상· 절차 등	10조(공동 사용기간)	공동사용기간 중 설비가 대·개체되는 경우의 공동사용기간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공동사용 중단 시 절차 및 공동사용 잔여기간 대가에 대한 협의 규정을 두고 있는가?			
		11조(출입 절차)	시설 출입 요청 시 피요청자의 출입 허용 규정을 두고 있는가? 출입 요청 시, 요청자의 피요청자에 대한 통보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출입 시 요청자의 중요 패용, 긴급사항 발생 시 출입 요건, 주요시설 출입시 절차 등에 대해 기준에 맞게 규정하고 있는가?			
	공동 사용의 대가 산정	12조(공동 사용의 대가)	공동사용 대가 산정의 기준 및 당사자 간 협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13조(유지 보수비용)	유지보수비용의 실제 발생 비용 기준 산정 및 대상설비용량 중 사용비율에 따른 사업자 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기타	14조(유지 보수책임)	공동사용 설비의 대·개체 유지보수의 피요청자 책임 및 필요한 경우 협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16조(비상 대책 등)	피요청자의 설비 변경 및 증설시 요청자에 대한 사전 통보, 장애발생 사실 즉시 통보 및 장애복구 비상대책의 협조·처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3. 고시적합성 자가 점검표(안): 무선인터넷망 상호접속 협정

근거법령		점 검 사 항 () 내용은 세부내용에 작성		무선인터넷망 상호접속 협정	
				적합 여부	관련 조항
상호 접속 기준 고시	총칙	4조(접속 기본원칙)	동등, 투명, 적시, 합리적 접속을 구현하고 있는가?		check list
		6조(접속망 구성 및 운영원칙) 1항	체결된 상호접속협정 대상역무와 서비스에 대해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해당서비스는 무엇인가? (해당역무와 서비스 및 사업자 기재)		예) 이동전화서비스 (▲▲▲) - 국제전화서비스 (△△△)
		6조4항	접속용량은 이용사업자가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6조 5항	접속호 송수신 경로와 방법의 효율성		접속망 구성 및 운영항목 참조
		6조 6항	직접접속, 경유접속 여부 및 망의 효율적 활용		접속망 구성 및 운영항목 참조
	접속망 구성 및 운영	47조(접속 이용 사업자)	무선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기간통신사업자 인가?		
		48조(접속 제공 교환기)	접속이용사업자가 요청하여 접속한 설비(IWF, PDSN, GGSN)는 무엇입니까?		
		49조(접속 용량)	접속이용사업자가 접속제공사업자에게 고지한 통신량과 이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산정한 접속용량은? (상세내용 기재)		
		50조(접속 또는 접속변경 절차)	서면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상호접속이 완료되었는가? 접속희망일 기준 3개월전 서면 신청, 접속희망일 제공 원칙, 제공가능시기 서면 통보 등 실질적인접속 또는 변경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51조(접속 방식)	접속방식(중계회선방식원칙)· 회선용량(DS-1급 E1(32채널) 또는 T1(24채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58조(준용 규정)	접속망의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전화계망 비상대책 준용)		
	접속 통신료	59조(접속 회선 비용 등)	접속회선비용 부담 주체 및 부담 규정은 접속기준에 부합하는가? ※ 이용사업자 부담원칙, 설비개조 요청사업자 직접비용부담		
60조(접속 통신료)		접속사업자는 무선인터넷망 접속에 따른 접속통신료를 무정산하고 있는가?			
61조(과금 및 징수)		과금은 접속이용사업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징수대행은 사업자간 협의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62조(부대 서비스비)		부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지불하는 부대서비스의 대상, 비용, 산정방식(서비스별 비용발생형태)을 규정하고 있는가?			

근거법령		점 검 사 항 () 내용은 세부내용에 작성	무선인터넷망 상호접속 협정		
			적합 여부	관련 조항	세부내용
정보 제공 기준 고시	4조(정보 제공의 기본원칙)	제공사업자는 정보제공을 함에 있어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거나 다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적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5조(정보 유용의 금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영업정보로의 유용 등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가?			
	9조(상호 접속 관련정보)	교환설비, 접속교환기, 통화량, 전용회선망 등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는가? (구체적 정보제공내역) ※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 - 교환설비 관련 정보: 교환기설치및운영현황,단기중설계획,교환설비운용에필요한프릭스별경로정보 - 접속교환기 관련 정보: 접속제공 교환기 기능 및 특성(용량회선수용현황, 신호 및 전송방식, 과금기능, 기술예고 등), 교환기 소재지 및 망계위 - 통화량 관련 정보: 프리픽스별 통화량, 시도호수(단, 제16조3항 관련 인터넷전화 접속시 가입자수, 접속통화량, IP주소 등의 과금정보 제공) - 전용회선망 관련 정보: 상호접속 요청구간의 단국장치, 회선분배 장치 및 가입자 선로 등의 설치/운영현황, 단기 신/증설계획			
	10조(공동 사용 관련정보)	국사 및 부대시설 및 선로설비 등 공동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였는가? (구체적 정보제공내역) ※ 공동사용에 필요한 정보 - 국사 ACL 부대시설 관련 정보: 국사의 위치, 연면적, 사용현황 및 여유면적, 단기(2년) 신·증설계획, 기타 공동사용에 필요한 전원설비 등의 부대시설현황 - 선로설비관련 정보: 설비제공요청 계획구간의 설비종류, 시설용량, 사용현황, 단기 신·증설계획			
	11조(이용자 및 과금정보)	요금의 부과/징수 및 이용자 이의신청 처리에 필요한 정보(이용자 정보 및 과금정보) 제공하였는가?(구체적 정보제공 내역)			
	12조(기타 필요한 정보)	9조, 10조 및 11조 이외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관한 협의를 규정하고 있는가?(구체적 정보제공 내역)			
정보 제공 절차 및 방법	13조(정보 제공요청) 14조(정보 제공시기) 15조(정보 제공방법)	정보제공 요청절차, 시기 및 제공방법에 관하여 정보제공 고시에 맞게 규정하고 있는가?			

근거법령		점 검 사 항 () 내용은 세부내용에 작성	무선인터넷망 상호접속 협정		
			적합 여부	관련 조항	세부내용
정보 제공 대가	17조(비용 부담주체)	요청사업자 비용부담을 규정하고 있는가? (정보제공 비용 발생시 요금표 내역 첨부)			정보제공 요금표
	18조(정보 제공의 대가)	정보제공 대가는 실제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표준단가 및 준용규정이 있을 경우 첨부)			
공동 사용의 기본 원칙	4조(기본 원칙)	자사 제공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가? 상호접속 이외의 목적에 사용 시 시정요구 또는 사용 중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6조(비밀 누설금지)	공동사용으로 인해 득한 제반기술 및 경영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			
공동 사용 기준 고시 공동사용의 대상·절차등	7조(공동 사용의 대상)	전기통신설비 및 시설의 공동사용 대상에 대해 공동사용 기준에 맞게 규정하고 있는가? 국사상면 공동사용에 대해서는 피요청자의 국사내 원칙 및 국사상면이 부족할 경우의 대비책에 대해 기준에 맞게 규정하고 있는가? 공동사용의 대상에 식별되지 아니한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에 대한 협의 규정을 두고 있는가?			
	8조(공동 사용 요청절차)	공동사용 요청은 고시에서 정한 시기에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되었는가? 피요청자는 요청일로부터 고시에서 정한 기간내(1개월 이내)에 공동사용 가능여부를 통보하였는가?			
	9조(공동 사용 개시일)	요청자의 공동사용 희망일 원칙 및 불가능시 협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10조(공동 사용기간)	공동사용기간의 설비제공기준 준용 규정, 기간 연장요청 시 피요청자의 의무 및 공동사용기간의 지정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공동사용기간 중 설비가 대·개체되는 경우의 공동사용기간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공동사용 중단 시 절차 및 공동사용 잔여기간 대가에 대한 협의 규정을 두고 있는가?			
	11조(출입 절차)	시설 출입 요청 시 피요청자의 출입 허용 규정을 두고 있는가? 출입 요청 시, 요청자의 피요청자에 대한 통보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출입 시 요청자의 중요 패용, 긴급사항 발생 시 출입 요건, 주요시설 출입시 절차 등에 대해 기준에 맞게 규정하고 있는가?			

근거법령		점 검 사 항 () 내용은 세부내용에 작성	무선인터넷망 상호접속 협정		
			적합 여부	관련 조항	세부내용
정 보 제 공 기 준 고 시	공동 사용의 대가 산정	12조(공동 사용의 대가)	공동사용 대가 산정의 기준 및 당사자 간 협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13조(유지 보수비용)	유지보수비용의 실제 발생 비용 기준 산정 및 대상설비용량 중 사용비율에 따른 사업자 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기타	14조(유지 보수책임)	공동사용 설비의 대·개체 유지보수의 피요청자 책임 및 필요한 경우 협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16조(비상 대책 등)	피요청자의 설비 변경 및 증설시 요청자에 대한 사전 통보, 장애발생 사실 즉시 통보 및 장애복구 비상대책의 협조·처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4. 고시적합성 자가 점검표(안): 설비제공 협정

근거법령		점검사항 () 내용은 세부내용에 작성	전기통신 설비제공 협정		
			포함 여부	관련 조항	세부내용
설비 제공 고시	총칙	2조(적용 범위)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가?(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기재)		
		4조(설비제공의 기본원칙)	동등, 적기 제공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가?		check list
	설비 제공 대상	5조(제공 대상설비 등)	선로설비와 전용회선 설비를 제공하고 있는가?		의무제공 대상설비 보유 및 사용 현황
		6조(의무 제공대상 설비)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의무제공사업자에게 설비제공을 요청한 경우 어떠한 의무대상설비를 제공하였는가? ※ 의무제공대상설비 - 가입자구간 동선중 운용회선과 운용회선의 8%를 제외한 설비 - 가입자구간 광케이블중 운용회선과 운용회선의 35%(간선구간의 경우 20%)를 제외한 설비 - 관로중 운용중인 관로와 별표에서 규정한 예비관로를 제외한 설비 또는 별표 특칙에 의한 내관 1공 - 전주 - 제1호 내지 제3호의 설비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국사상면 ○ 위 설비 중 의무제공대상 제외설비 - 제8조제2항에 의한 제공요청일 이전에 계약서등 공식 문서를 통해 수요처와 사용계획이 확정된 설비 - 기준시행일 이후에 구축(대·개체 구축 제외)된 설비중 구축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설비. 다만, 전기통신기본법 제18조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설비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2004년 이후 구축하는 광케이블(광케이블을 대·개체하는 경우 제외)		
제공 절차 및 사용 기간	8조(제공 절차)	약관에 규정된 전용회선요청시 등 이용약관의 청약절차를 적용하였는가?			
		선로설비 및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전용회선요청시 아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였는가? - 제공요청구간(설치장소 포함) - 요청설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 - 제공희망일, 사용기간 및 용도 - 기타 필요한 사항			

근거법령		점 검 사 항 () 내용은 세부내용에 작성	전기통신 설비제공 협정			
			포함 여부	관련 조항	세부내용	
설 비 제 공 고 시	제공 절차 및 사용 기간	8조(제공 절차)	제공사업자는 제공요청일로부터 아래기간내에 제공가능여부 및 제공시기를 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하였는가? - 동선, 전주: 1주 - 광케이블, 관로(인공, 수공 포함),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전용회선등: 2주			
			제공요청건수와 수량이 과다하거나, 기상여건 등의 사유로 인해 기간연장이 불가피하여 위에서 규정한 기간을 연장하여 제공하였는가?			
	9조(제공 설비의 사용 기간)	제공 설비의 사용기간(선로설비 및 전용회선 최소사용기간 6개월)을 규정하고 있는가? (계약기간 및 계약연장 규정 기재)				
		다만, 이용약관에 규정된 전용회선의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따르고 있는가? 사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연장요청이 있어서 연장을 해준 설비가 협정에 있는가?				
	10조(제공 설비의 사용 제한 등)	제공설비의 사용제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가? ※ 허가받은 사업범위내 사용, 자사 이동통신망 직접 구축용도 사용시 의무대상설비에서 제외				
	11조(설비의 재제공 금지 등)	이용사업자는 제공받은 설비를 제3자에게 동일한 형태로 재제공할 목적이 아님을 보장하는가? 단, 유희설비 발생시 협의에 따름				
		이용사업자는 의무제공사업자 동의없이 의무제공대상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로설비 형태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가?				
	12조(유지 보수책임)	제공사업자의 유지보수 책임 또는 예외적 협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13조(비밀 누설금지)	설비제공으로 인해 지득한 상대방에 관한 제반기술 및 경영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자신의 영업정보로 활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14조(손해 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 청구 주체, 손해배상 범위와 수준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				
	15조(제공설 비의 이전)	제공설비 이전 요청 기준 및 비용부담 협의의 규정이 있는가? ※ 제공사업자가 3개월내 이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 설비폐쇄 또는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16조(자가 전기 통신설비 현황의 신고 등)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설비의 수량 등 설비현황이 포함되어 있는가?				
자가전기통신설비 제공을위해 이용약관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련 이용약관을 준용하고 있으며, 설비제공 협정전에 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였는가?						

근거법령		점 검 사 항 () 내용은 세부내용에 작성	전기통신 설비제공 협정		
			포함 여부	관련 조항	세부내용
설비 제공 고시	대가 산정 및 정산 등	17조(이용 대가의 산정원칙)	선로설비의 이용대가는 표준원가의 계산방식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요율로 정산하고 있는가?(설비용량 및 산정금액)		
		전용회선 이용대가의 원가기준에 기반 한 협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규정된 경우 이용약관을 준수하고 있는가?(설비용량 및 산정금액) ※ 부칙3조: 이용약관 적용시 - 시내회선: 규격별 전용회선요금의 100% - 시외회선: 규격별 전용회선요금의 50% - 국제회선: 규격별 전용회선요금의 50%			- 일반제공대상 설비의 이용단 가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요율 - 협정당시관련 전용회선이용 약관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자의 선로설비 이용대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요율로 정산하고있는가?(설비용량 및 산정금액)			자기통신설비 현황 자료(종류, 사용용도, 사용율 등 포함)
	제18조(의무 제공대상 설비의 이용대가 산정)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표준원가계산방식으로 산출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가?(설비용량 및 산정금액) ※ 부칙3조: 광케이블의 경우 인입구간 100m미만은 100m, 비인입구간 200m미만은 200m를 적용			- 의무제공대상 설비의이용단 가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요율
	28조(일회성 비용의 부담) 29조(일회성 비용의 구성) 30조(일회성 비용의 정산)	일회성비용 내용 및 부담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가?(구체적 비용) - 접수비 - 시설검토비 - 설비접속공사비 - 철거비 -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용			
정보 제공 기준 고시	정보 제공 범위	4조(정보 제공의 기본원칙)	제공사업자는 정보제공을 함에 있어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거나 다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적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5조(정보 유용의 금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영업정보로의 유용 등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가?		
		8조(설비 제공관련 정보)	선로설비, 회선설비 등 설비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는가? (구체적 정보제공내역) ※ 설비제공에 필요한 정보 - 선로설비관련 정보: 설비제공요청 계획구간의 설비 종류, 시설용량, 사용현황, 단기(2년)신·증설계획 - 회선설비관련 정보: 설비제공요청 계획구간의 설비현황(전송장비 포함) 및 사용현황, 단기(2년)신·증설계획, 기술규격, 전송품질		

근거법령		점 검 사 항 () 내용은 세부내용에 작성		전기통신 설비제공 협정		
				포함 여부	관련 조항	세부내용
정 보 제 공 기 준 고 시	정보 제공 범위	11조(이용자 및 과금정보)	요금의 부과/징수 및 이용자 이의신청 처리에 필요한 정보(이용자 정보 및 과금정보) 제공하였는가?(구체적 정보제공 내역)			
		12조(기타 필요한 정보)	9조, 10조 및 11조 이외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관한 협의를 규정하고 있는가?(구체적 정보제공 내역)			
	정보 제공 절차 및 방법	13조(정보 제공요청)	정보제공 요청절차, 시기 및 제공방법에 관하여 정보제공 고시에 맞게 규정하고 있는가?			
		14조(정보 제공시기) 15조(정보 제공방법)				
	정보 제공 대가	17조(비용 부담주체)	요청사업자 비용부담을 규정하고 있는가? (정보제공 비용 발생시 요금표 내역 첨부)			정보제공 요금표
18조(정보 제공의 대가)		정보제공 대가는 실제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표준단가 및 준용규정이 있을 경우 첨부)				

5. 협정 원칙 이행 자가 점검표

A. 동등성 checklist

○ 기본 원칙

- ① 차별은 비용 등에 있어 동일한 거래상황에서 동일한 서비스의 제공대가 또는 거래조건을 다른 이용사업자간 또는 자사와 다른 사업자간 차등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비용 또는 경쟁상황의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는 가격차별은,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한, 정당한 것으로 본다.
- ③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가격차별로 인하여 이용사업자의 범위, 거래규모 등 수요규모가 확대됨이 입증되는 경우 가격차별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비가격적인 거래조건을 차등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로 본다.

○ Checklist

1. (가격차별의 존재 여부) 인가/신고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제공대가는 최근 1년간 다른 이용사업자에게 제공된 (실질적으로) 동일한 서비스의 제공대와 비교하여 시장가격의 변동추이를 반영한 수준 이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 예 ⇒ 가격 동등성 요건 충족, 5번으로
 - 아니오 ⇒ 2, 3번으로

〈가격차별의 존재 여부 식별(예시)〉

동일한 서비스 유형 내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체결한 모든 협정(부속합의서 포함)상의 제공대가를 ‘협정체결시점’을 가로축으로 ‘제공대가’를 세로축으로 하는 그래프에, 다른 이용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점으로 표시한다. 최근 1년내에 2개 이상의 다른 이용사업자와 체결한 협정 상의 대가차이가, 지난 3년간의 시장가격 평균 변동폭 대비, 10% 이내인 경우 정당한 차별로 간주된다. 10% 이상인 경우 check-list 2번으로.

2. **(비용차이를 반영한 가격차별)** 가격차별이 거래규모와 계약기간의 차이에 따른 비용차이를 적절히 반영하며, 거래규모와 계약기간이 유사하다면 이용사업자간 가격차별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비용차이를 적절히 반영하는지 못하는 가격차등(예시)〉

- 평균 거래규모 이상의 계약 또는 3년(?) 이상의 장기계약에 대해서만 대가할인을 제공하여 대규모 사업자에게만 할인 대가 적용
- 동일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관행으로 간주되는 대량구매 또는 장기이용 할인율/할인구조로부터 상당히 벗어난 가격차등

3. **(경쟁 대응을 위한 가격차별)** 가격차별은 기존 협정 체결상황과 다른 경쟁상황에 기인한다.

- 2와 3모두 예 ⇒ 가격 동등성 요건 충족, 5번으로
- 나머지 경우 ⇒ 4번으로

〈경쟁 대응을 위한 가격차별(예시)〉

-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경쟁적으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상황이 이전과 다른 정도로 나타난 경우(예: 이용사업자가 제공자간 경쟁입찰을 유도할 수 있는 상황)

4. **(가격차등에 의한 수요확대)** 가격차별로 인하여 이용사업자의 범위, 거래규모 등 수요규모가 크게 확대된다.

- 예 ⇒ 가격 동등성 요건 충족, 5번으로
- 아니오 ⇒ 동등성 요건 미충족

〈가격차별에 의한 수요확대 효과 입증(예)〉

- 이용사업자의 지불능력 차이가 크거나 서비스 제공의 고정비용이 상당하여 비차별적인 가격으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5. (비가격적 조건의 차등) 가격이외의 이용조건은 다른 이용사업자에게 적용한 조건과 동일하다.

예 ⇒ 동등성 요건 충족

아니오 ⇒ 동등성 요건 미충족

B. 투명성 checklist

1. (표준협정 공개 등) 당해 협정은 관련 법규상의 협정원칙을 준수하는 공개 표준협정(Reference Offer)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용사업자가 요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다른 서비스 이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2. (공개된 요금표 준수) 공개된 요금표와 본 협정상의 제공대가가 일치하거나 10% 이내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1, 2 모두 예 ⇒ 투명성 요건 충족

1만 아니오 ⇒ 투명성 요건 미충족

2만 아니오 ⇒ 요금표의 현실화 또는 협정상의 요금을 요금표와 일치시키는 작업을 전제로 투명성 요건 충족

C. 적시성 checklist

본 협정은 이용사업자가 협정체결을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결되었다.

예 ⇒ 적시성 요건 충족

아니오 ⇒ 적시성 요건 미충족

<별첨 7>

별정통신사업자 망 이용 계약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설문지



110-054 서울시 중로구 서측동 208 전화 (02) 3702-2100, 팩스 (02) 3702-2121, 한국갤럽연구소 이지 www.gallup.co.kr, 김원태대표 par.et.gallup.co.kr
한국갤럽 GALLUP KOREA 대표이사장 GALLUP JAPAN/AMERICA

GMR200914055 **별정통신사업자 망 이용 계약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사:4			
-----	--	--	--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의뢰**로 별정통신사업자의 망 이용 계약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정/부가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망 이용관계에 이용 약관이 적용되고 있으나, 향후 협정 등의 계약관계로 제도가 정비될 계획에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위 공고 제2008-72호). 본 조사는 이에 앞서 국내 기간통신-별정통신 사업자 간 망 이용 계약관계 현황을 파악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 간 견련한 통신시장 연계형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시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이용약관의 신고) ⑥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이용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을 적용한다.

업무로 바쁘시더라도 **별정통신사업자의 환경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경쟁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본 조사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귀사에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제13조, 제14조)에 따라 **통계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귀사의 비밀이 절대 보장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박 무 인

담당 연구원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윤지은 담당 02-3702-2669 / 팩스 : 02-3702-2655
김태우 연구원 02-3702-2517
한형진 차장 02-3702-2515

설문 작성시 유의 사항

1. 한국갤럽 면접원에게 연락주시면, **한국갤럽의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갤럽 실사 담당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실사실 윤지은** (TEL : 02-3702-2669, FAX : 02-3702-2655)
2. 응답은 반드시 귀사의 전반적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책임자 분계약 영업 담당 또는 업체 대표**께서 **직접 작성**해 주시고 **가급적 불리**,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질문지는 순서대로 응답해주시고, 질문과 관련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모든 질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4. 질문지의 선택작성 항목은 **보기 번호 중에서 0포**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질문 항목별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가장 최근의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제공 서비스 일반현황

문1-1. 먼저, 현재 귀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별정통신 서비스 종류 (2개 이상인 경우) 주력 서비스와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답란 **해당번호에 O표**해 주시거나, **보기에 없는 경우는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1) **귀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별정통신 서비스 (서비스가 2개 이상인 경우 중복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 2) **(제공 서비스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주력 서비스 (가장 주력인 서비스 하나만 응답해 주십시오)**
- 3) **(제공 서비스별)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1 답란

1) 현재 제공 서비스	2) 주력 서비스	5)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
1. 자체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국제 음성재판매 5	1	1. SKT(해니로탈려공포함) 2. KT(KTF포함) 3. LG계열 4.기타(_____) 15-16
2. 위의 1번 항목 이외의 국제 음성재판매 6	2	1. SKT(해니로탈려공포함) 2. KT(KTF포함) 3. LG계열 4.기타(_____) 17-18
3. 자체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인터넷전화 7	3	1. SKT(해니로탈려공포함) 2. KT(KTF포함) 3. LG계열 4.기타(_____) 19-20
4. 위의 3번 항목 이외의 인터넷전화 8	4	1. SKT(해니로탈려공포함) 2. KT(KTF포함) 3. LG계열 4.기타(_____) 21-22
5. 선불카드 9	5	1. SKT(해니로탈려공포함) 2. KT(KTF포함) 3. LG계열 4.기타(_____) 23-24
6. 기타 (_____) 10-11	6	1. SKT(해니로탈려공포함) 2. KT(KTF포함) 3. LG계열 4.기타(_____) 25-26
7. 기타 (_____) 12-13	7	1. SKT(해니로탈려공포함) 2. KT(KTF포함) 3. LG계열 4.기타(_____) 27-28

문1-2. **(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여러 서비스의 망을 이용하는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 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여러 서비스의 망을 중복으로 이용하는 경우, **망 이용 계약은 서비스별로 각각 체결**하십니까? 아니면, 전체 이용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 **패키지로 체결**하십니까? (단답)

- 1) 서비스별로 각각 계약 체결
- 2) 전체 이용 서비스를 묶어 하나의 패키지로 계약 체결

다음부터는 귀하께서 문1-1.의 2)에서 응답하신 귀사의 주력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는 귀사의 주력 서비스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와 귀사와의 망 이용 계약체결 단계별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① 계약체결 이전 절차 ② 계약체결 요청 거절과 ③ 계약체결 이행 변경 및 해지에 대해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2. 망 이용 계약체결 이전 절차

다음은 귀사와 기간통신사업자와의 망 이용 계약체결 이전 단계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2-1. 망 이용계약 체결 전에 귀사에서 선택 가능한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 수는 일반적으로 몇 개 업체나 됩니까?

- ※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이상

문2-2. 그럼, 망 이용계약 체결 전에 귀사에서는 몇 개의 기간통신사업자와 사전 접촉을 하십니까?

- ※
 1) 기존에 계약중인 사업자 1개 업체만 접촉한다.
 2) 기존에 계약중인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1개 업체를 중복으로 접촉한다.
 3) 기존에 계약중인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2개 이상 업체를 중복으로 접촉한다.
 4) 신규 사업자 1개 업체만 접촉한다.
 5) 신규 사업자 2개 이상 업체를 중복으로 접촉한다.

문2-3. 그럼,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 요청시, 귀사의 일반적인 요청방법은 무엇입니까?

- ※※
 1) 공문발송 2) 전화통보 3) 이메일 발송 4) 기간통신사업자 영업사원 면담
 5)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_____)

문2-4. 귀사의 계약 요청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응대는 어느 정도 신속합니까?

- ※※
 1) 요청 후, 1~2일 이내에 응대한다.
 2) 요청 후, 일주일 이내에 응대한다.
 3) 요청 후, 한달 이내에 응대한다.
 4)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_____)
 =====
 8) 응대가 없다

문2-5. 계약 전, 기간통신사업자의 계약요청 상공에 대한 거래조건 설명은 어느 정도 자세합니까?

※

전혀 자세하지 않다	자세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자세한 편이다	매우 자세하다
+	+	+	+	+
1	2	3	4	5

문2-6. 그럼, 귀사의 계약 요청시부터 계약 체결시까지 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 ※※
 1) 일주일 이내 2) 한달 이내 3) 3개월 이내
 4)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_____)

문2-7. 귀사에서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보기를 보시고 가장 큰 기준과 그 다음 기준 각각 다음 답란에 적어주십시오. 보기에 없는 경우, 기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1위 기준	2위 기준
--------------	--------------

- 1) 저렴한 요금(할인) 2) 상품의 품질 우수 3) 망 구성 용이성
 4) 기존 계약관계 5) 원하는 상품 제공(협상) 가능성 6)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_____)

3. 망 이용 계약체결 요청 거절

다음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 이용 계약체결 요청 거절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3-1. 귀사에서는 망 이용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이를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
- 1) 거절당한 경험 있다
- 2) 거절당한 경험 없다 → **다음 페이지 문제1로 가십시오.**

문3-2. 그럼, 그 기간통신사업자가 망 이용 계약체결 요청을 거절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까?

- ☞
- 1) 설명해 주었다
- 2) 설명해 주지 않았다 → **문제4로 가십시오.**

문3-3. 그럼, 망 이용 계약체결 요청을 거절한 구체적인 이유를 어떤 방법으로 설명해 주었습니까?

- ☞☞
- 1) 공문통보 2) 전화통보 3) 이메일 통보 4) 기간통신사업자 영업사원 방문
- 5)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_____)

문3-4. 귀사에서는 망 이용 계약체결 요청을 거절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거절이유에 대한 해명요청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
- 1) 경험 있다
- 2) 경험 없다 → **문제6으로 가십시오.**

문3-5. 그럼, 귀사의 거절사유 해명요청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응대수준은 어느 정도 적극적 이었습니까?

☞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다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었다	보통이었다	적극적인 편이었다	매우 적극적 이었다
+	+	+	+	+
1	2	3	4	5

문3-6. 기간통신사업자가 밝힌 거절이유와 관계없이, 기간통신사업자가 망 이용 계약체결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를 보시고, 가장 큰 이유와 그 다음 이유 각각 다음 답란에 적어주십시오. 보기에 없는 경우, 기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1위 이유	49-50	2위 이유	51-52
--------------	-------	--------------	-------

- 1) 제공 가능한 여유용량 부족
- 2) 망 이용 대가 수준 미합의
- 3) 담보요구 금액 미합의
- 4) 별정통신사업자를 경쟁사로 인식해서 (기간통신사업자 자사나 자회사의 서비스 영역과 중복으로)
- 5)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_____)

4. 망 이용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및 해지

다음은 귀사의 망 이용 계약변경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4.1. 귀사에서는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와 망 이용 계약변경을 요청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53

- 1) 경험 **있다**
 2) 경험 **없다** → **문4.6으로 가십시오**

문4.2. 그럼, 귀사에서 계약 변경을 요청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 하나만 응답해 주십시오.

54-55

- 1) 가입 유치에 따른 용량 추가계약 필요
 2) 대가할인 적용 요구 (시장상황 반영)
 3)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의 약관 등 정책변화 반영 요구
 4) 타 이용 사업자와 동등조건 적용 요구
 5)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_____)

문4.3. 귀사의 계약변경 요청에 대해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의 응대는 어느 정도 신속하였습니까?

56-57

- 1) 요청 후 1~2일 이내에 응대한다.
 2) 요청 후, 일주일 이내에 응대한다.
 3) 요청 후, 한달 이내에 응대한다.
 4)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_____)
 =====
 5) 응대가 없다

문4.4. 그럼, 귀사의 요청에 의해 계약을 변경하였습니까?

58

- 1) 계약을 변경했다
 2) 계약을 변경하지 못했다 → **문4.6으로 가십시오**

문4.5. 그럼, 귀사의 계약변경 요청시부터 계약변경 완료시까지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59-60

- 1) 일주일 이내 2) 한달 이내 3) 3개월 이내
 4)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_____)

문4.6.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가 귀사에게 망 이용 계약변경을 요청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61

- 1) 경험 **있다**
 2) 경험 **없다** → **다음페이지 문4.7으로 가십시오**

문4.7. 그럼,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가 망 이용 계약변경을 요청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까?

62

- 1) 설명해 주었다
 2) 설명해 주지 못했다 → **다음페이지 문4.8으로 가십시오**

문4.8.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의 계약변경 요청 이유는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63-64

- 1)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의 약관 등 정책변화 반영
 2) 대가할인 적용 (실제 적용대가의 변경)
 3) 담보금액 변화 요구
 4) 정부정책 반영 요구
 5)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_____)

다음은 귀사의 망 이용 사업자 변경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5-1. 귀사에서는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를 변경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
- 1) 경험 있다
 - 2) 경험 없다 → **문5-4로 가십시오**

문5-2. 그럼, 귀사에서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를 변경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 하나만 응답해 주십시오.

☞☞ _____

문5-3. 그럼, 귀사에서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를 변경했을 때, 기존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가 계약 해지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을 강요했습니까?

- ☞
- 1) 추가 비용부담을 강요했다
 - 2) 추가 비용부담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 **문5-5로 가십시오**

문5-4. (문5-1에서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 변경 경험이 없는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럼, 귀사에서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를 변경해 보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 하나만 응답해 주십시오.

☞☞ _____

문5-5. 현재 귀사에서 체결중인 계약 내용 중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의 변경 및 해지 시 제한 조건이 있습니까?

- ☞
- 1) 있다
 - 2) 없다 → **다음 페이지 문6-1로 가십시오**

문5-6.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 변경시(해지시) 제한조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중복응답)

☞☞ 1. _____

☞☞ 2. _____

다음은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6-1.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가 귀사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 ┌ 1) 경험 **있다**
└ 2) 경험 **없다** → **무7-1로 가십시오**

문6-2. 그럼,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까?

※

- ┌ 1) 설명해 주었다
└ 2) 설명해 주지 **않았다** → **무7-1로 가십시오**

문6-3. 그럼,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의 **계약해지 통보 이유**는 무엇이었 **이**었습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 1) 요금납부를 못해서
- 2) 담보제공 불이행
- 3) 망의 안정성을 위해
- 4) 사업자의 해당 서비스 축소 정책으로 인해
- 5)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_____)

문6-4. 그럼,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의 계약해지 통보부터 해지완료까지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

- 1) 일주일 이내
- 2) 한달 이내
- 3) 3개월 이내
- 4)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_____)

다음은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의 **부당한 정보유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7-1.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가 귀사에서 **계획중인 서비스**를 먼저 출시하여 귀사의 서비스를 어렵게 한 경험이 있습니까?

※

- ┌ 1) 경험 **있다**
└ 2) 경험 **없다** → **무7-3으로 가십시오**

문7-2. 그럼, 그러한 경험에 대한 사례를 다음 답란에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중복응답**)

61

1. _____

62

2. _____

문7-3. 그럼,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가 귀사의 고객에게 접근하여 **귀사의 고객을 빼앗아 간** 경험이 있습니까?

※

- ┌ 1) 경험 **있다**
└ 2) 경험 **없다** → **다음페이지 무8-1로 가십시오**

문7-4. 그럼, 그러한 경험에 대한 사례를 다음 답란에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중복응답**)

11-12

1. _____

11-14

2. _____

5. 망 이용 계약조건

먼저, 망 이용 계약 조건중 **요금 계약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8-1. 귀사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는 **약관요금을 적용**합니까? 아니면, **약관요금 보다 할인된 요금**을 적용합니까?

- 1) 약관요금을 적용한다 → **무조건으로 가십시오**
- 2) 약관요금 보다 할인된 요금을 적용한다

문8-2. 그럼, 약관요금 보다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는 경우, **요금할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음 보기를 보시고,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1) 동일 거래량이라도 최근 계약일수록 요금을 할인받는다
- 2) 총 이용량이 많수록 요금을 할인받는다
- 3) 계약기간이 길수록 요금을 할인받는다
- 4)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같이 이용할수록 요금을 할인받는다

문8-3.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 간 **요금할인 경쟁**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요금할인 경쟁이 전혀 없다	요금할인 경쟁이 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요금할인 경쟁이 많은 편이다	요금할인 경쟁이 매우 많다
+	+	+	+	+
1	2	3	4	5

문8-4. 그럼, 다른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요금할인**을 받아보신 경험은 있으십니까?

- 1) 경험 **있다**
- 2) 경험 **없다**

문8-5. 그럼, 현재 귀사의 **망 이용요금 수준**이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사업자 대비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높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중 어느 어느 사업자 대비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1) 다른 별정통신사업자
- 2)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인 별정통신사업자
- 3)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련 서비스 부문
- 4)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_____)
- =====
- 9) 다른 사업자 대비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8-6.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의 **소요원가 대비 귀사의 망 이용 요금수준**은 어떻습니까?

- 1)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의 소요원가 대비 높다
- 2)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의 소요원가 대비 적절하다

다음은 망 이용 계약 조건중 요금 이외의 계약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9-1. 현재 귀사와 계약중인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의 **담보 요구금액 설정기준**은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3-33

- 1) 거래기간
- 2) 통신망 이용요금
- 3) 회사 신용도
- 4) 회사 매출규모
- 5)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_____)

문9-2. 그럼, 귀하께서는 **담보 요구금액 설정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3-35

- 1) 거래기간
- 2) 통신망 이용요금
- 3) 회사 신용도
- 4) 회사 매출규모
- 5)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_____)

문9-3. 귀하께서는 담보 요구금액은 **통화량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 1) 통화량 대비 1배
- 2) 통화량 대비 1.5배
- 3) 통화량 대비 2배
- 4) 통화량 대비 2.5배
- 5) 통화량 대비 3배
- 6) 통화량 대비 3배 초과

문9-4. 귀사에서는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담보금액 확대**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3-

- 1) 경험 있다
 2) 경험 없다 → 문9-7로 가십시오

문9-5. 그럼, 담보금액을 **현재 어느 수준에서 향후 어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받았습니까?

현재 월 통화량 대비 □.□배에서 향후 월 통화량 대비 □.□배로 확대 요구
3-30 31-33

문9-6. 그럼, 담보금액 확대는 **어떤 방법으로** 요구하였습니까?
3-35

- 1) 공문통보
- 2) 전화통보
- 3) 이메일 통보
- 4) 기간통신사업자 영업사원 방문
- 5)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_____)

문9-7. 귀사에서는 망 제공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시, **보증보험액 산정에 부당한 차별**을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까?
3-

- 1) 경험 있다
- 2) 경험 없다

문10. 마지막으로,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 간 망 이용 계약 관련 정책방안 수립과 추진시, **별정통신사업자 입장에서 권역사양**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좋으니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중복응답)

- 3-39 1. _____
- 4-42 2. _____
- 4-45 3. _____

6. 기업체 일반현황

마지막으로 기업 및 응답자 일반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1. 다음 기업 일반현황에 응답해 주십시오.

업체 설립년월	_____년 _____월 설립 <small>4-49 5-51</small>
소재지 <small>5-52</small>	01. 서울 02. 부산 03. 대구 04. 인천 05. 광주 06. 대전 07. 울산 08. 경기, 09. 울산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자본금	()억 () 천만원
매출액 (최근 3년 평균)	()억 () 천만원
직원 수 (대표 포함) <small>5-53</small>	() 명

끝까지 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면접후 기록 (면접원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업체 ID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small>5-54</small>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응답월일	____월 ____일 <small>5-55 5-56</small>	면접원	(ID : _____) <small>5-57</small>
검증증원		실사연구원	(ID : _____) <small>5-58</small>

● 저 자 소 개 ●

김 희 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미국 UCLA 경제학 석사
- 미국 UCLA 경제학 박사
-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형 찬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Cornell University 경제학 석사
- Cornell University 경제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남 심

-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오 기 환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미국 University of Virginia 경제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책연구 09-29

기간통신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2009년 11월 일 인쇄

2009년 11월 일 발행

발행인 방 석 호

발행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1-1

TEL: 570-4114 FAX: 579-4695~6

인쇄인 성문화

ISBN 978-89-8242-563-9 93320
